



제 1 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 개관

1장은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아직 제도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있고, 동 사례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이라는 측면도 있기에 먼저 기술한다.

아울러, 지난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상 집계된 현황과 그 결과인 성과에 대하여도 간략히 정리하고 있다.

- ▣ 제1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개요
- ▣ 제2절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현황

1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 의의 및 목적

지식정보사회로의 진전과 함께 정부, 기업, 가정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정확한 통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정책을 수행하는 정부로서는 주요 정책의 도입·평가 시 이에 필요한 통계를 구비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제·개정을 통해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각 부처가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일차적으로는 각 부처가 이러한 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하지만, 동 제도의 이행확보를 위해 통계청과 각 부처간 검토, 협의 절차를 부과하고 있다.

동 절차 상 통계청은 제·개정되는 법령과 관련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 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각 부처에 의견을 제시한다. 각 부처는 통계청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제·개정 법령에 대한 평가 요청을 하고, 통계청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계청과 협의하여 관련 통계를 개발·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는 2007년 10월 25일 개정된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 및 제34조 (정책통계기반평가를 위한 자문)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취지는 일차적으로 통계와 정책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개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2 평가대상 기관 및 법령

1. 평가 대상기관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의 평가 대상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다. 다만, 대외비 등 이유로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은 제외한다.

2. 평가 대상법령

제·개정 시 통계청에 평가요청을 해야 하는 법령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제·개정 법률 및 시행령(대통령령)이다.

한편, 법령 전체의 내용이 통계가 필요 없거나 국가안보, 행정 등 평가가 부적절한 법령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매년 공지한다.

의원입법은 제외하되, 동 법률의 시행령 제·개정 시 함께 평가함으로써 소관기관의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3 주요 평가 체계 및 절차

1. 평가 체계

일차적으로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입법예고 시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통계청은 동 요청서를 토대로 평가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제도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통계 필요성 여부만 검토하는 예비평가와 통계의 필요성을 전제로 모든 사항을 검토하는 실질평가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1) 예비평가

예비평가는 제·개정 법령을 통하여 추진하는 정책이 통계가 필요한지 여부만 평가한다. 각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제·개정 법령의 내용이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입법예고 시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곧바로 실질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서 통계가 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를 요청토록 하고, 불필요한 경우는 실질평가 없이 동 제도상 평가절차를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평가 시에는 결과를 아래 4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① 실질평가 면제

해당 법령에 있는 정책과 제도는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만,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할 사항이 아닌 경우이다.

② 실질평가 대상

제·개정되는 법령을 통한 정책이 통계가 필요한 경우이다. 정책 소관 기관은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실질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입안 시 평가

법률 제·개정 내용만으로 정책의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시행령 입안 시 평가토록 하고 있다.

④ 통계지표 관리권고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 규정(법령 또는 훈령, 예규 등)에 의거하여 필요한 통계가 행정보고 절차를 통해 작성·구비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실질평가 절차가 불필요하다. 관련 통계지표를 지속 관리할 것만을 통보하고, 평가 절차를 종료한다.

2) 실질평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의 핵심 절차로서 필요한 통계지표의 구비여부 및 통계 개발·개선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평가결과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리하면, 통계 개발·개선 필요 또는 불필요, 통계지표 사용권고 등 3가지가 있다. 통계지표 사용권고는 각 부처가 제시한 통계보다 정책에 적합한 통계가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그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다.

평가결과를 행정적 처리 측면에서 정리하면 “개발·개선 권고”, “원안동의”, “사용권고”가 있다.

① 개발·개선 권고

정책에 필요한 통계가 없거나 미흡한 경우, 통계 개발·개선을 하게 된다. 특히, 통계 개발·개선이 필요하다는 통계청 검토 의견과 법령 소관부처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은 개발·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법령 소관기관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통계청의 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원안동의

법령소관 부처가 제시한 통계, 통계개발·개선계획에 대하여 통계청과 법령소관 부처간 이견이 없는 경우이다. 법령 소관부처 제시 의견에 대하여 통계청과 이견이 있더라도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된 경우도 원안동의로 처리한다.

원안동의를 내용상 통계 개발·개선을하기로 합의한 경우, 각 부처는 상세한 통계 개발·개선 계획을 통계청에 제시하고, 통계청은 이를 중기 국가통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관리한다.

③ 사용권고

“사용권고”는 다음 3가지 경우에 제시한다. 첫째, 법령소관기관이 제시한 통계지표보다 더 적합한 통계지표가 있는 경우이다. 둘째, 통계개발·개선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사대상, 조사사항, 작성시기, 공표주기 등에 대한 참고의견이 있는 경우이다. 셋째, 그 밖의 통계작성 및 이용에 관한 참고의견이 있는 경우이다.

2. 평가절차 및 방식

법령을 제·개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입법예고와 동시에 예비평가 또는 실질평가 요청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예비/실질평가를 요청할 때, 정책 소관기관의 담당부서는 해당기관 통계 책임관 또는 통계책임관 운영부서 담당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예비, 또는 실질평가를 요청할 경우는 예비/실질평가요청서 외에 법령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정책관련 참고자료(정책용역보고서, 관계기관 협의 시 설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평가 관련 주요 시기 및 시한

평가요청은 원칙적으로 입법예고와 동시에 한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제·개정 법령안은 관계부처 협의가 종료되고, 입안내용 확정과 동시에 평가를 요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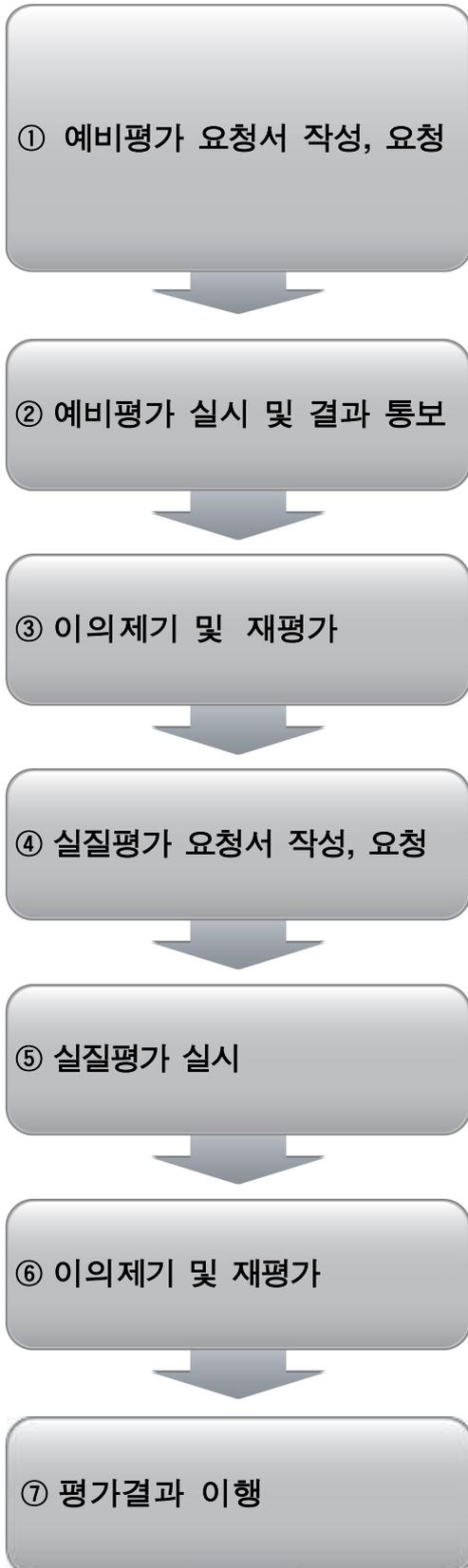
통계청은 각 평가에 대하여 예비평가는 7일, 실질평가는 30일 이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다.

3) 이의제기 및 처리

중앙행정기관은 예비평가나 실질평가의 결과에 대해 평가결과 통보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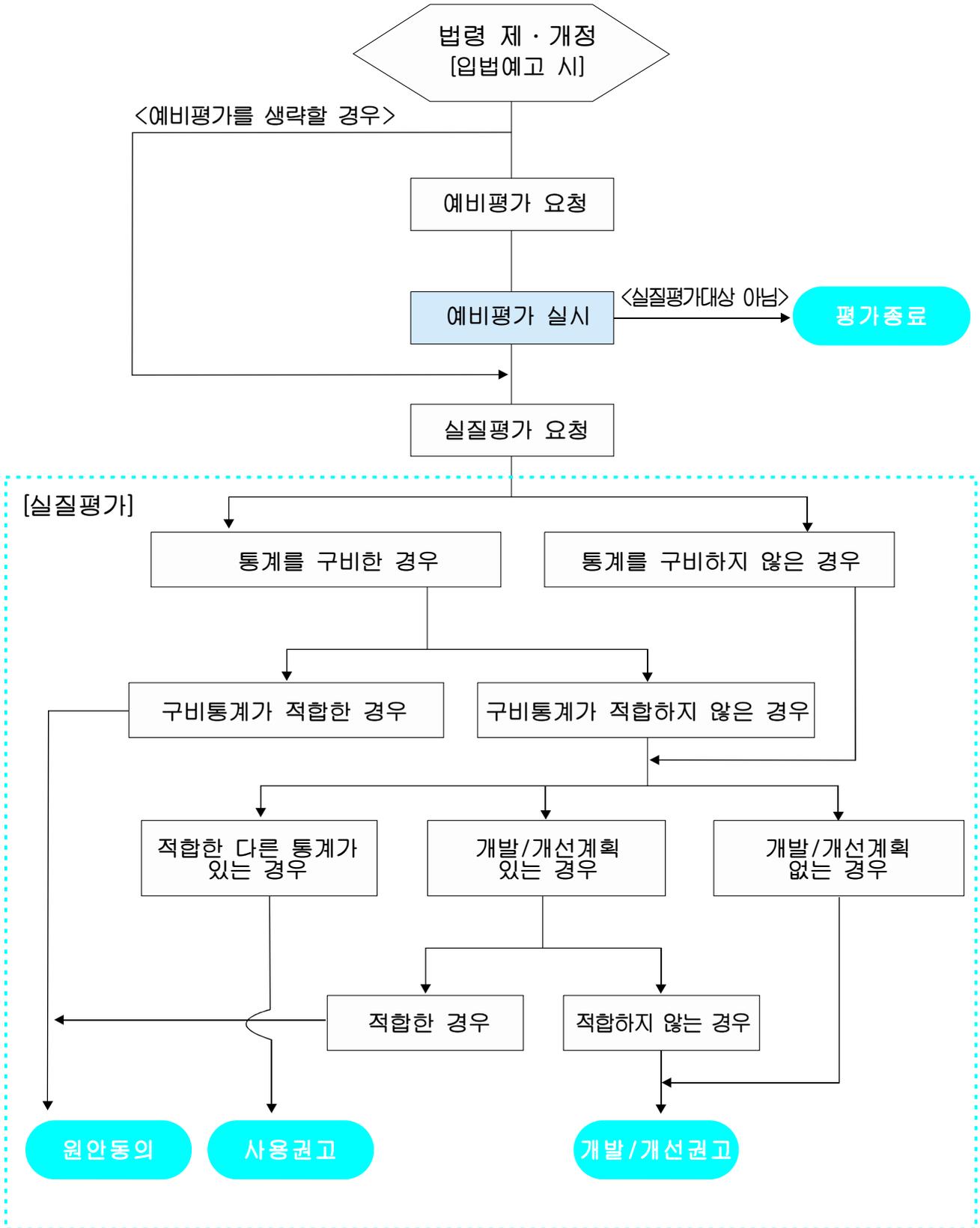


평가 절차 흐름도



- 입법 예고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 전문 및 제·개정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등
 - 각 부처 통계책임관 경유 제출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 예비평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제기기간: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평가기간: 이의제기 접수 후 7일 이내
- 제출기간: 예비평가 결과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계청과 부처간 협의를 통해서 보완
- 제기기간: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소관(관계)기관과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 통계위원회 상정·심의
-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 상정 시 통계청장의 평가 의견을 함께 제출
- '이행계획서' 제출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평가단계별 업무흐름도



1 평가 요청 현황

1. 개괄

2008년은 동 제도 시행원년으로 각 부처의 참여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활한 협조로 입법예고 법령의 97% 정도가 평가요청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되었다.



평가요청 총괄 ('08. 12. 31 현재)

(단위: 건, %)

입 법 예 고*	평 가 요 청		평 가 완 료
	요 청 건 수	요 청 륜	
1,170	1,131	96.7	1,116

* 입법예고건수는 요청건수에 미요청건수를 합한 것으로 실제 입법예고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총 요청 건수 1,131건은 법률 658건(58.2%) 시행령 473건(41.8%)이며, 제정안은 103건(법률 38, 시행령 65), 개정안 1,028건(법률 620, 시행령 408)이었다.



평가 대상법령 현황

(단위: 건, %)

요청건수 (비중)	법 륜		시 행 령	
	제정	개정	제정	개정
1,131 (100.0)	658 (58.2)	38 620	473 (41.8)	65 408

2. 분야별 평가요청 현황

입법예고 및 평가요청 건수는 문화/여성/보건분야가 206건(1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는 연말에 다수의 국세 관련 법령을 일괄 입법예고하면서 전체 요청률이 다소 저조하게 집계되었다.



분야별 평가요청 현황

(단위: 건, %)

분 야	입 법 예 고	요청 건수		요청률*	평 가 료
		요청 건수	구성비		
총 계	1,170	1,131	100.0	96.7	1,116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174	141	12.5	81.0	138
교육과학	91	91	8.0	100.0	88
일반행정/보훈	177	175	15.5	98.9	173
문화/여성/보건	210	206	18.2	98.0	205
농림수산식품	80	80	7.1	100.0	79
지식/방송	138	138	12.2	100.0	137
노동/환경	116	116	10.3	100.0	115
국토해양	184	184	16.3	100.0	181

* 요청건수*100/입법예고 건수

-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교육과학 분야 : 교육과학기술부
- 일반행정/보훈 분야 :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
- 문화/여성/보건 분야 : 문화체육관광부,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 농림수산식품 분야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 지식/방송 분야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방송통신위원회
- 노동/환경 분야 :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 국토해양 분야 :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3. 월별 평가요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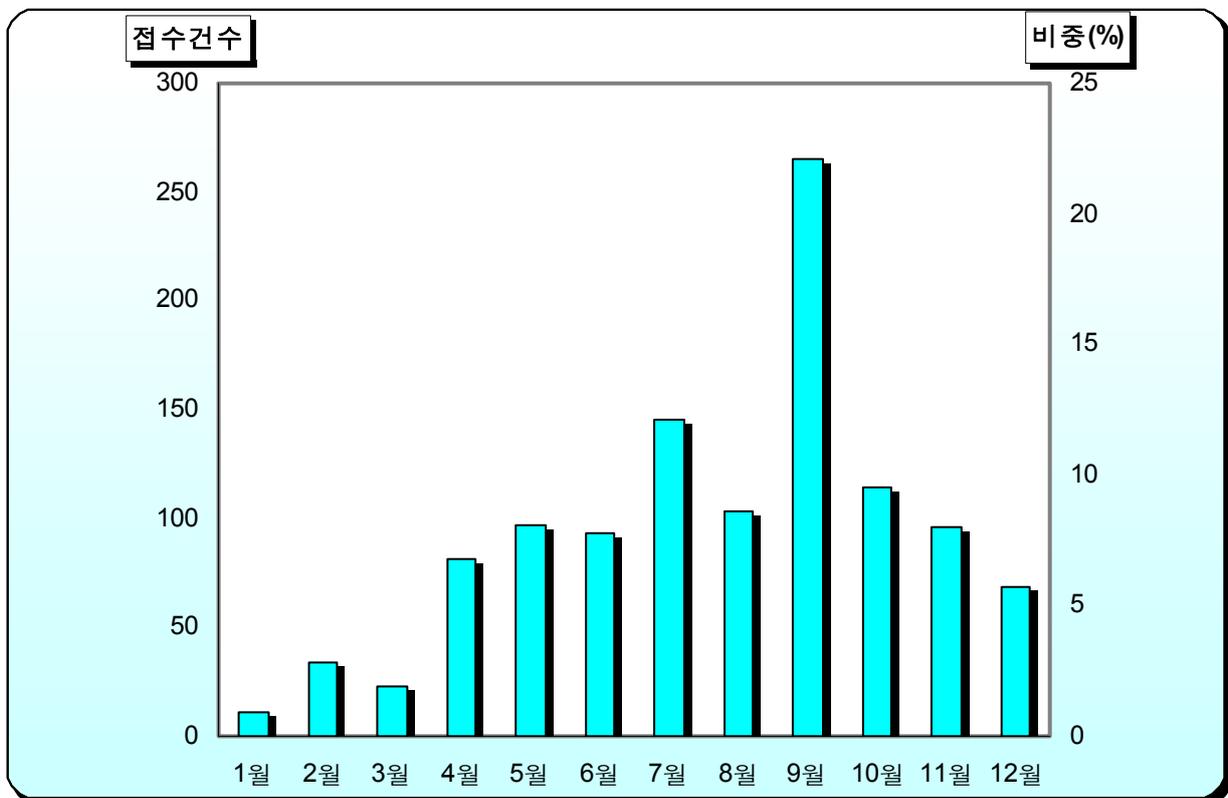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평가요청이 집중되어 전체 요청건수의 절반 이상(627건, 55.4%)을 차지하였다. 특히 9월에 전체의 23.4%인 265건의 평가요청을 접수하였는바, 정기국회를 앞두고 법령안 제·개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월별 평가요청 접수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접수건수	1,131	11	34	23	81	97	93	145	103	265	114	96	69
비중	100.0	1.0	3.0	2.0	7.2	8.6	8.2	12.8	9.1	23.4	10.1	8.5	6.1



4. 단계별 평가 요청 현황

총 1,131건 가운데 예비평가 88.3%(999건), 실질평가 11.7%(132건)가 요청되었다.

예비평가가 많았던 것은, 통계와 관련 없는 절차적 사안 등에 대한 개정이 많았던 이유도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실질평가에 대한 부담 회피 등을 위해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예비평가로 요청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단계별 평가 요청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요청 건수	1,131	999	132
비 중	100.0	88.3	11.7

분야별로는 노동/환경 분야, 농림수산물식품 분야와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실질평가 요청 비율이 높았다.



분야별 예비 및 실질 평가 요청 현황

(단위 : 건, %)

구분	분 야 별								
	기획재정/ 금융/공정 거래	교육 과학	일반 행정/ 보훈	문화/ 여성/ 보건	농림 수산물 식품	지식/ 방송	노동/ 환경	국토 해양	
합계	1,131	141	91	175	206	80	138	116	184
예비평가	999	118	88	160	174	65	125	92	177
실질평가 (비중)	132 (11.7)	23 (16.3)	3 (3.3)	15 (8.6)	32 (15.5)	15 (18.8)	13 (9.4)	24 (20.7)	7 (3.8)

2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 심사결과 현황

1. 총괄

2008년 총 1,131건의 평가요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1,116건을 평가 완료하였다.



심사현황 총괄 ('08. 12. 31 현재)

(단위: 건)

평가 요청	평가 완료	평가 중
1,131	1,116	15

2. 평가유형별 심사 결과 현황

평가 완료된 1,116건 가운데 예비평가만으로 종료한 것이 729건(65.3%)이고 실질평가를 실시한 것은 387건(34.7%)이었다.

예비평가의 경우 실질평가 면제가 569건(78.1%)으로 가장 많았고, 실질평가는 통계지표 관리권고가 252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평가유형별 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

평가 완료 (비중)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실질평가 대상	실질평가 면제	기타*	원안 동의 개발/개선	통계지표 관리권고**	사용 권고			
1,116 (100.0)	729 (65.3)	53	569	107	387 (34.7)	117	67	252	18

* 평가대상 제외법령(69건), 시행령 입안 시 평가(38건)

** 통계지표 관리권고는 실질평가 대상이지만 필요 통계지표가 모두 구비되어 있거나,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를 통하여 작성·구비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예비평가로 요청되었지만 실제로는 실질평가에 해당하므로 실질평가에 포함

3. 분야별 평가유형별 심사 결과 현황

분야별 실질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환경 분야 37.4%, 농림수산식품 분야 36.7%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유형별 심사 현황

(단위 : 건, %)

분야별	평가 완료 (비중)	예 비 평 가				실 질 평 가				
		실질평가대상	실질평가면제	기타	387 (34.7)	원안 동의		통계지표관리권고	사용권고	
						117	개발/개선 67			
총 계	1,116 (100.0)	729	53	569	107	387 (34.7)	117	67	252	18
기획재정/금융 /공정거래	138 (12.4)	85	7	63	15	53 (38.4)*	16	1	33	4
교육과학	88 (7.9)	60	3	33	24	28 (31.8)	5	5	23	-
일반행정/보훈	176 (15.8)	117	4	87	26	59 (33.5)	10	2	40	9
문화/여성/보건	198 (17.7)	129	21	99	9	69 (34.8)	30	29	39	-
농림수산식품	79 (7.1)	50	3	39	8	29 (36.7)	12	6	13	4
지식/방송	141 (12.6)	96	7	81	8	45 (31.9)	12	9	32	1
노동/환경	115 (10.3)	72	4	66	2	43 (37.4)	23	7	20	-
국토해양	181 (16.2)	120	4	101	15	61 (33.7)	9	8	52	-

* 분야별 실질평가 건수*100/ 분야별 평가 건수

4.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현황

2008년 중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통계를 개발·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령 기준으로 보았을 때 67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문화/여성/보건 분야가 29건(14.6%)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 통계 개발·개선 현황

(단위 : 건, %)

구분	분 야 별								
	기획재정/ 금융/공정 거래	교육 과학	일반 행정/ 보훈	문화/ 여성/ 보건	농림 수산물 식품	지식/ 방송	노동/ 환경	국토 해양	
평가 건수	1,116	138	88	176	198	79	141	115	181
개발·개선 건수	67	1	5	2	29	6	9	7	8
비 중	6.0	0.7	5.7	1.1	14.6	7.6	6.4	6.1	4.4

5. 분야별 평균 평가 소요기간

평가요청서 접수 일로부터 예비평가는 7일, 실질평가는 30일 이내에 완료 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평가에서 동 소요기간을 준수하였다.



분야별 평균 평가 소요기간

(단위 : 일)

구분	분 야 별								
	기획재정/ 금융/공정 거래	교육 과학	일반 행정/ 보훈	문화/ 여성/ 보건	농림 수산물 식품	지식/ 방송	노동/ 환경	국토 해양	
예비 평가	4.2	5.0	4.5	3.4	3.6	2.2	5.8	3.8	4.8
실질 평가	13.0	6.9	11.0	15.9	9.6	15.3	23.5	14.0	15.3

6.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



부처별 평가 종합 현황

(단위 : 건)

소관 부처	평가 요청	평가 완료	예비평가				실질평가				
			실질 대상	실질 면제	기타	원안	동의 개발/개선	통계지표 관리권고	사용 권고		
전 체	1,131	1,116	729	53	569	107	387	117	67	252	18
재정부	88	88	55	7	37	11	33	10	1	21	2
공정위	13	13	9	-	8	1	4	1	-	1	2
금융위	37	34	18	-	16	2	16	5	-	11	-
통계청	3	3	3	-	2	1	-	-	-	-	-
교과부	91	88	60	3	33	24	28	5	5	23	-
총리실	3	3	3	-	-	3	-	-	-	-	-
외교부	6	6	5	-	3	2	1	-	-	1	-
통일부	2	2	2	-	2	-	-	-	-	-	-
법무부	4	4	3	-	-	3	1	-	-	-	1
행안부	77	77	42	2	28	12	35	8	1	19	8
소방청	16	16	11	1	8	2	5	1	1	4	-
경찰청	8	7	4	-	4	-	3	-	-	3	-
보훈처	25	25	13	1	12	-	12	1	-	11	-
권익위	2	1	1	-	-	1	-	-	-	-	-
문화재청	6	6	4	-	1	3	2	-	-	2	-
법제처	29	29	29	-	29	-	-	-	-	-	-
문화부	42	42	30	3	21	6	12	5	4	7	-
여성부	6	6	3	2	1	-	3	2	2	1	-
복지부	151	150	96	16	77	3	54	23	23	31	-
농식품부	67	67	41	3	32	6	26	12	6	10	4
산림청	13	12	9	-	7	2	3	-	-	3	-
지경부	103	103	73	6	60	7	30	9	6	21	-
중기청	10	10	4	1	3	-	6	1	1	4	1
특허청	13	13	9	-	9	-	4	-	-	4	-
방통위	16	15	10	-	9	1	5	2	2	3	-
노동부	47	47	30	-	29	1	17	16	-	1	-
환경부	66	65	42	4	37	1	23	7	7	16	-
기상청	3	3	-	-	-	-	3	-	-	3	-
국토부	182	179	120	4	101	15	59	9	8	50	-
해경청	2	2	-	-	-	-	2	-	-	2	-



제 2 장

통계기반 정책관리 주요 평가 사례

2장은 그동안의 평가 사례 가운데, 향후 동 제도운영 과정에서 각 부처의 평가 요청서 작성 및 통계청의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각 사례의 평가요청서 및 평가결과서가 그 자체로 완결성이 높은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가능하고, 성의 있게 작성된 것들을 선별하였다.

또한, 각 부처 입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1. 분야별, 2. 평가유형별 2가지 체계로 정리하였으며,

각 사례들은 각 부처가 처음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하는 ① 평가 요청서, 통계청이 각 부처에 제시하는 ② 평가 결과 통보서, 및 통계청 내부 ③ 검토결과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절

분야별 주요 평가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를 운영하는 통계심사과는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사한 분야를 8개 분야로 묶어서 검토하고 있다.

동 절의 분야별 평가 사례는 아래 8개 분야별로 대표적인 평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2. 교육과학 분야
3. 일반행정/보훈 분야
4. 문화/여성/보건 분야
5. 농림수산식품 분야
6. 지식/방송 분야
7. 노동/환경 분야
8. 국토해양 분야

1

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 분야

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10호				
법령명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위탁자산 투자 운용			
소관기관	기관명	기획재정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국부운용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전부처	
		협의기간	2008.10.2.부터 2008.10.6.까지(5일간) 2008.11.11부터 2008.11.12까지(2일간)	
	입법예고	2008.11.18.부터 2008.12.7.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공사의 운용현황이나 월간수익률 등의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 하므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적용되는 법령임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 1 > 차입·채권의 발행 허용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정부·한은 등의 위탁자산 만으로는 재원확충 뿐 아니라 다양한 투자전략의 구사에도 한계가 있으며, 해외국부펀드와의 협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 정책내용

- 의의
 - 투자재원의 확대 및 투자역량의 강화
- 추진방향
 - 차입·채권 발행의 허용
- 세부내용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자본의 30배 범위 내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액, 조건, 상환방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하며, 정부는 공사의 차입금 또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 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투자재원의 다양화 및 해외전략산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투자공사의 투자역량 강화가 기대됨

< 정책 2 > 원화자산의 국내운용 허용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위탁자산이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토록 되어 있어 국제 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 및 합리성이 결여되어 개선이 필요함

□ 정책내용

- 의의
 - 원화자산 국내운용 허용하여 자율성 확대
-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토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

기대효과

- 자산운용 자율성의 확대 및 해외국부펀드와의 투자협력 강화가 기대됨

< 정책3 > 기타 개선 사항

1)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완화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여러 기관 군에서 경험을 갖춘 인사는 배제되는 불합리성이 내제되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

세부 정책내용

- 의의
 - 다양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추천
- 추진방향
 -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민간위원추천 가능
- 세부내용
 - 현행 동일 기관 내 10년 이상인 자를 민간위원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로 기존 요건에 상당하는 금융 또는 투자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로 자격 요건을 완화

기대효과

-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기대됨

2) 운영위원의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 조항 신설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운영위원회에 투자공사의 주요 정책에 관한 승인권은 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책내용

- 의의
 - 운영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책임을 부여
- 추진방향
 - 운영위원회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위원에 신중한 투자자의 원칙 및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하도록 신분보장 조항 신설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회 위원의 책임·의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운영위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투자자산 운용규모 및 수익률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할 계획 ○ 유용성 : 국부펀드 이해를 위한 정보로 활용 ○ 정보 출처 : 한국투자공사 연간보고서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 보고를 통해 작성 □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투자자산 운용규모 및 수익률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할 계획 ○ 유용성 : 국부펀드 이해를 위한 정보로 활용 ○ 정보 출처 : 한국투자공사 연간보고서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필요에 따라 개발
<p>통계개발/개선계획</p>	<p><개발/개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목적 : 차입·채권발행 및 위탁자산의 투자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영실적을 행정자료로 작성·공고 □ 조사(보고)사항 : 차입채권 발행 및 투자현황, 원화투자자산 운용 현황 □ 작성(보고)주기 : 연 1회 □ 추진일정 : 지표 마련되면 07년말 기준, 08년말 기준 운용현황 등을 작성할 계획임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국부운용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9 - 1136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정책(제도)명	위탁자산 투자 운용 정책	
소관기관/부서	기획재정부/국부운용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개발/개선합의]		
<p><input type="checkbox"/> 금번 개정에 포함된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차입·채권 발행 현황, 총자산(외화, 원화 구분) 운용규모 및 수익률 현황 등에 대한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며,</p> <p>○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로 투자공사의 운영 및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통계작성계획 또한 법률의 규정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판단됨</p>		
【필요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처
투자재원 조달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입·채권 발행 및 (자산별)투자현황 	통계개발계획 제출
위탁 자산 투자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화자산 운용 규모 및 수익률 현황 - 외화 자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연간보고서 (한국투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화자산 국내 투자 규모 및 수익률 현황 - 국내 자산별 구성비 및 수익률 	통계개발계획 제출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되었음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작성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Ⅳ.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

통 계 청 장

③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11.18 ~ 2008.12.08	
2008 - 1136			
법령명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산업은행법		
정책(제도)명	위탁자산 투자 운용 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정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투자공사의 운용 현황이나 월간수익률 등의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므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적용되는 법령임		
소관기관	기관명	기획재정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국부운용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및 주요 내용

○ 법령 목적

-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 법령 주요 내용

- 한국투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위탁받은 국가공공자산의 관리 및 운용
 - 자산의 운용 용도 및 운용 방식 등

□ 금번 개정 이유

- 자산의 운용용도의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채권발행을 허용하는 등 현행 한국투자공사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차입·채권발행의 허용(안 제1조, 제29조제1항 및 제29조2)

- 한국투자공사의 차입·채권발행 근거를 신설하여 투자재원 다양화

현 행	개 정
· 투자재원이 정부·한은 위탁자산으로 한정	· 위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자산 또는 차입 및 채권발행에 의해 조달한 자금의 관리 및 운용 · 자기자본의 30배 범위내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채권의 소멸시효 : 원금 5년, 이자 2년)

□ 원화자산 국내운용 허용(제31조③④ 삭제)

-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 운용대상을 국내 자산 운용까지 확대

현 행	개 정
·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	· 운용제한 규정 삭제

□ 기타 개정 사항

-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완화(안 제11조제1항)
 - 민간위원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로 추천 가능
- 운영위원의 책임·의무조항 및 신분보장 조항 신설(안 제13조)
 - 운영위원의 직무 수행시 신중한 투자자 원칙 및 신의성실 의무를 부여하여 책임성을 강화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투자재원의 다양화 및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투자공사의 투자운영 현황 및 성과 파악을 위해서는 차입·채권 발행 현황, 총자산(외화, 원화 구분) 운용규모 및 수익률 현황 등에 대한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통계지표 관련

- (소관부처 의견) 동 정책에 대한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며, 관련 통계지표를 제시

필요 지표	출처
• 자산운용 규모 및 수익률 현황(원화, 외화 구분)	한국투자공사

- (검토 의견)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로 투자공사의 자산 운용 현황 및 성과 파악이 가능
 - 다만, 차입·채권발행 및 위탁자산의 투자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비고
투자재원 조달현황 파악	• 차입·채권 발행 및 (자산별)투자현황	통계개발계획 제출
위탁 자산 투자 현황 파악	• 외화자산 운용 규모 및 수익률 현황 - 외화 자산별 구성비 및 수익률	연간보고서 (한국투자공사)
	• 원화자산 국내 투자 규모 및 수익률 현황 - 국내 자산별 구성비 및 수익률	통계개발계획 제출

* 법36조(공고)의 규정에 의해 총자산의 자산군별(유가증권, 예치금, 부동산 기타 자산) 투자 및 수익현황 등을 공고토록 하고 있음

□ 통계개발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행정보고를 통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작성할 계획임

【차입·채권 발행 현황 및 위탁자산 투자현황】

- 작성주기 : 연1회(한국투자공사 연간보고서 결과로 공표)
- 작성체계 : 한국투자공사의 자산운영실적 공고의무(법제36조)에 따라 투자공사에서 행정자료로 작성·공고
- 조사사항 : 차입·채권 발행 현황, 자산별 투자현황, 원화자산 국내투자 규모 및 수익률 현황
- 추진일정 : 개정법률 안 시행 후 07년말 기준, 08년말 기준으로 운영현황 등을 작성할 계획

- (검토 의견) 작성주기 및 작성체계는 법에 규정한 결산 및 공고의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위탁외화자산의 별도의 개발이 필요 없으나, 원화자산의 국내투자 현황, 채권발행 및 차입관련 지표는 동 개정법률 안 시행 후 첫 회계연도 결산 공고부터 작성 가능

6. 평가의견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 금번 개정에 포함된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는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로 투자공사의 운영 및 성과평가가 가능하며, 통계작성계획 또한 법률의 규정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채권발행·차입 및 위탁자산의 투자실적, 원화와 외화자산 투자실적을 구분하여 지표를 관리할 것을 권고함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1 (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 2008-10호					
법령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동의명령제도				
소관기관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업집단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경제부처를 위주로 한 전부처		
		협의기간	2008.4.4.부터 2008.4.14.까지(11일간)		
	입법예고	2008.4.15.부터 2008.5.6.까지(22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p>동 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통계지표의 폐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임</p> <p>통계자료는 공정위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정리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생산되고 있음</p>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1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경쟁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 일부 기업들의 타회사 출자가 제한되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측면

□ 정책내용

- (현행)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2조원 이상 회사는 타회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
- (변경) 정부 사전규제인 출총제를 폐지하고 공시 등 시장 자율감시로 전환

□ 기대효과

- 출총제 폐지를 통하여 기업규제 최소화 의지를 나타냄으로써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투자의욕 고취

< 정책2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들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자율·시장규율로 대체가능한 규제를 완화
- 기업집단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정책내용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200% 제한 및 비계열사 주식 5%이상 보유금지를 폐지
- 지주회사 전환시 유예기간 연장(최대 4년→최대 5년) 및 증손회사 소유제한 완화

□ 기대효과

- 기존 지주회사의 규제부담 완화 및 지주회사 전환 희망기업들이 보다 용이하게 지주회사로 전환 가능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3 > 동의명령제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속한 자율시정을 유도하여 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시정조치 등 강제적 수단으로는 곤란한 손해보상 등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도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심인 등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제출하여 동의명령을 신청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1개월 이상 이해관계인, 관계부처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동의명령불이행, 불완전·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경우 동의명령 취소 후 별도의 조사·심의 가능 ○ 동의명령 불이행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속한 자율시정 유도를 통한 조사부담 경감 ○ 손해보상 등 피해자 권리의 실질적 구제 도모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1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p> <p>□ 정책집행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현황, 출자총액기업집단 소유지배과리도·의결권승수 현황,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출자현황 등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등 파악에 활용 ○ 정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기 개발 ○ 개발/개선여부 - 해당 없음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정책2> 기업결합 신고회사 자산·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지주회사 수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지주회사 설립·전환 추이 및 실태 파악에 활용 ○ 정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기 개발·공개 <p><정책3> 동의명령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연도별 동의명령 집행 건수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운영실적 평가 등에 활용 ○ 정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별도 개발 불필요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해당 없음(기 개발된 통계자료 활용)</p>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1 평가요청서 접수-2 (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 2008-11 호					
법령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등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등				
소관기관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업집단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경제부처를 위주로 한 전부처		
		협의기간	2008.4.8.부터 2008.4.18.까지(11일간)		
	입법예고	2008.4.22.부터 2008.5.13.까지(23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p>동 법과 관련된 정책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며,</p> <p>통계자료는 공정위 내부 시스템에 의하여 수집·정리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생산되고 있음</p>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1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공정거래법상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이상)으로 지정하여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의결권제한 등 의무 부과

□ 정책내용

- 의의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적용대상을 확정하는 기능
- 추진방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산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 세부내용
 - '02년 설정된 자산 2조원의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
 -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폐지(법개정사항)

□ 기대효과

- 규제대상 대규모기업집단 축소

<정책2> 기업결합 신고회사 자산·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여 기업부담 완화

□ 정책내용

- 의의 : 기업결합과 관련된 기업부담 완화
- 세부내용
 - 현재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를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 부과
 - 신고의무과 부과되는 신고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결합 신고대상을 축소

□ 기대효과

-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건수는 전년에 비해 약 30%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1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p> <p><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상호출자기업집단의 변동추세 등 파악에 활용 ○ 정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기 개발 <p>< 정책2 > 기업결합 신고회사 자산·매출액 기준 상향 조정</p> <p><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기업결합 동향(매년 발표)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기업결합 관련 각종 통계를 수집·분석한 자료로서 신고기한, 신고기준 등 기업결합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기 개발·공개
--------------------------------------	---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해당 없음(기 개발된 통계자료 활용)</p>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8 - 99,206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 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정책(제도)명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결합규제완화, 동의명령제도		
소관기관/부서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과 등		
II. 종합 평가의견 : 사용권고			
<input type="checkbox"/> 기존 통계지표 및 귀 부처에서 제시한 통계 개발계획으로 동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가 모두 구비될 것으로 판단			
<input type="radio"/> 단, 동의명령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실적 개발계획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작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input type="checkbox"/> 추가지표 사용권고			
<input type="radio"/>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평가를 위해 <u>투자관련 통계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u>			
<input type="radio"/>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u>순환출자현황 지표의 관리 필요</u>			
【필요 통계지표 정리】			
정책(제도)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대규모기업 집단정책	경계력집중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위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 상위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 	시장구조조사 (승인통계/공정위)
	기업지배구조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별 계열사 현황 자본총액 및 출자총액현황 소유지배과외도·의결권승수현황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소속사간 채무보증현황 (특수관계인)내부지분 현황 	대규모기업집단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

정책(제도)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출중제 규제와 투자의 관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및 출자총액* 추이 * 출자총액 현황은 상기 “기업지배 구조개선” 항목의 지표로 파악 가능 	※ 투자관련 승인통계 - 설비투자현황 (한국은행, 국민계정) -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 (전경련) - 주요기업의설투자계획조사 (산업은행)
지주회사제도	지주회사에 대한 합리적인 소유구조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주회사 현황 (설립/전환 현황,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자본금 현황 등)* 	지주회사현황 (승인통계: 공정위)
기업결합제도	제도개선 및 다른 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건수 및 금액 (유형별, 주체별, 수단별, 업종별) 	기업결합동향 (승인통계: 공정위)
동의명령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의명령 집행현황(유형별) 불이행행위 조치 건수 	내부자료(공정위)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추가지표 사용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통계개선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통 계 청 장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법 률 : 2008. 04. 15 ~ 2008. 05. 06	
2008 - 96,206		시행령 : 2008. 04. 22 ~ 2008. 05. 13	
법 령 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금융지주회사법, 증권거래법, 외감법		
정책(제도)명	대규모기업집단정책, 지주회사 규제 완화 기업결합규제완화, 동의명령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동 법과 관련된 정책은 기업집단의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를 위해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함		
소관기관	기관명	공정거래위원회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경쟁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으로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법령 주요 내용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출자총액제한제도, 지주회사규제 등)
-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대가격유지행위 규제
-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기타 전담기구 및 조사 등에 대한 규정

□ 금번 개정 이유

-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직접 규제방식인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개정과 관련된 정책 개관

①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 기업집단중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자산합계가 2조원 이상인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의 대상이 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

구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대상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집단 * 전체 소속회사	· 자산총액 10조원이상 기업집단 * 자산 2조원 이상인 소속회사
제한행위	· 계열회사 상호간 출자행위 · 계열회사 상호간 금융여신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 좌동(상호출자금지) · 좌동(상호채무보증금지) · 좌동(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하는 행위 금지
의무	· 대규모 내부거래 시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좌동

② 지주회사제도

-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으로서 자회사의 주식가액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규정

○ 지주회사 행위제한

- 부채비율 제한 : 200% 이내
- 자회사 지분을 40%(예외 : 상장·공동출자법인 20%)미만 소유
- 비계열사를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 일반지주회사 :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금융지주회사 : 비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 소유
- 자회사의 타 계열회사 주식 소유

③ 기업결합(M&A) 규제 제도

-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결합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적인 기업 결합에 대해 시정조치 부과 등 규제

④ 동의명령제도

- 범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피심인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 명령 제도를 도입
- ※ 범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민·형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3. 개정된 주요 정책의 세부내용

< 요약 >

-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부 사전규제를 시장자율감시 기능으로 전환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 ◇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및 신고기준 상향 조정
- ◇ 동의명령제도 도입

□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완화

-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및 공시제도 도입

현 행	변 경	비 고
▶ 출자총액제한제도 · 순자산의 40%(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국내회사 주식 취득 금지 · 자산합계 10조원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이상인 회사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법 제10조 및 관련 조항
신설	▶ 공시제도 도입 · 대규모기업집단의 <u>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u> 등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법 제11조의 4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현 행	변 경	비 고
▶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지정기준 · 자산총액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 · 자산총액합계액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행령 제17조 1항

□ 지주회사 규제의 완화

현 행	변 경	비 고
▶ 지주회사 규제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 비계열회사 주식 5%초과 보유금지 · 지주회사 행위제한요건 미 충족시 유예기간을 최대4년(2년+2년) ·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소유 허용	▶ 지주회사 규제 완화 · 부채비율 상한 폐지 · 비계열사 주식 소유 한도 폐지 · 유예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 ·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 허용	법 제8조의 2

□ 기업결합제도 규제 완화

현 행	변 경	비 고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 대규모 회사(2조원 이상)는 기업결합시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 계약 체결 후 합병등기 등 기업결합 완료 전 언제든지 신고	법 제12조

▶ M&A 신고기준 · 신고회사 :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 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 200억원 이상인 회사	▶ M&A 신고기준 상향 조정 · 신고회사 : 2,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 상대회사 : 현행 유지	시행령 제17조
--	--	----------

□ 동의명령제도 도입

현행	변경	비고
신설	▶ 피심원과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및 시정방안 등을 결정 ▶ 사업자신청→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부처협약→위원회의 의결→시정방안 확정	법 51조의 2~4

□ 기타 사항

- 문서 송달 규정 개정(안 제2조의 3)
 - 공정거래법에 의해 송달되는 문서에 전자문서도 포함
- 공공부문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대상 용어변경(안 제19조의2①항)
 -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으로 변경

4. 소관부처 의견 및 필요 통계지표 검토

□ 대규모기업집단 제도 관련

- 소관부처 의견 및 검토

정책	소관부처의견	검토의견
출총제 폐지	· 출총제 폐지에 따른 관련 통계지표 폐지	· <u>대규모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관련 지표를 계속 작성해야함</u> ※ <u>순환출자현황에 대한 지표</u> 지속적 관리 필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지정	· <u>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지표</u> 작성 필요, 구비 - 상호출자금지 적용대상 기업집단 및 기업수를 파악	
공시제도	· 기업집단 현황 등의 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는 통계기반정책관리의 필요성이 낮음	· 동의. 단, 필요지표를 생산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출자총액 제한기업집단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경제력집중억제 및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통계지표는 필요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주요 사유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의욕 고취"이므로 "출자와 투자"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경제력집중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기업집단의 시장집중도 • 상위기업집단의 일반집중도 	시장구조조사 (승인통계/공정위)
기업지배구조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별 계열사 현황 • 자본총액 및 출자총액현황 • 소유지배괴뢰도·의결권승수현황 •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현황 • 소속사간 채무보증현황 • (특수관계인)내부지분 현황 	대규모기업집단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
출자총액 규제와 투자의 관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및 출자총액* 추이 	※ 투자관련 승인통계 - 설비투자현황(한국은행, 국민계정) - 기업시설투자동향조사(전경련) - 주요기업설비투자계획조사(산업은행)

* 출자총액 현황은 상기 "기업지배구조개선"항목의 지표로 파악 가능

□ 지주회사 규제완화

○ 소관부처 의견 및 검토

소관부처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설립·전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u>지주회사수</u>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수 뿐 아니라 관련 세부자료의 작성 필요

○ 필요 통계지표 검토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합리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주회사 현황 (설립/전환 현황, 자회사 및 손자회사 현황, 자본금 현황 등)* 	지주회사현황 ** (승인통계:공정위)

* 자본 및 자산규모, 지분율, 지주 및 부채비율 등을 포함

** 공정위의 온라인 입력시스템을 통해 취합 → 대규모기업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

□ 기업결합제도 규제 완화

○ 소관부처 의견 및 검토

소관부처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에 대한 자료는 내부시스템에 의해 수집·정리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생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개정사항인 <u>기업결합 신고기한 폐지(법)와 기업결합신고기준 변동(시행령)</u>은 통계를 기반할 필요가 없으나, • <u>기업결합제도는 다른 기업정책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u>

○ 필요 통계지표 검토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제도개선 및 다른 기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결합건수 및 금액 (유형별, 주체별, 수단별, 업종별) 	기업결합동향 (승인통계:공정위)

□ 동의명령제도 도입

○ 소관부처 의견 및 검토

소관부처의견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도입 후 운영상황에 관한 실적통계를 관리할 계획 - 연도별 동의명령 집행 횟수 등 ※ 별도의 통계개발은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미비점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는 집행실적 등에 관한 지표의 관리 필요

○ 필요 통계지표 검토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명령 집행현황(유형별) • 불이행행위 조치 건수 	내부자료(공정위)

※ 법률 시행 이후 필요한 지표작성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기타 사항은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평가의견 : 사용권고

○ 기존 통계지표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통계 개발계획으로 동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필요한 통계가 모두 구비될 것으로 판단

- 동의명령제도 시행에 따른 집행실적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작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

○ **[사용 권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의 성과 평가를 위해 투자관련 통계지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함

- 아울러,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후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순환출자현황" 지표의 관리 필요

기타 참고 의견

○ 소유지배 괴리도·의결권승수 지표 작성 시 "소유지분율"에 지배주주의 직접소유와 함께 소속회사를 통한 간접소유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자문결과, 현재의 직접소유만 포함한 지표는 기업집단 소유 구조의 투명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2

교육과학 분야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113호					
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2008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추진계획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법령 내용 중 일부는 통계지표의 필요성 있음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금번 개정 내용은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협의기간	2008. 7. 9.부터 2008. 7. 18.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8. 1.부터 2008. 8. 21.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887호, 2008.3.14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책내용

- 의의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도입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추진방향
 -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규정
- 세부내용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
 - 전담부서의 구성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

□ 기대효과

-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 유도
-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의 개선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 안전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449			
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법령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p><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p><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신설, 안 제4조~안 제6조) ·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안 제8조, 안 제9조) · 전담부서의 구성 등(안 제7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13조) · 비밀의 범위 구체적 명시(안 제18조)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금번 개정 내용은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실질평가 “대상”</p> <p>- 동 법령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 동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하여 아래 제시한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p>		
	<p>필요 판단</p>	<p>관련 통계(지표)</p>	<p>구비여부(출처)</p>
	<p>- 학교폭력 현황과악</p>	<p>-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가해·피해) 현황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p>	<p>미구비 구비(행정자료) " 구비 (청소년폭력예방재단)</p>
	<p>- 학교폭력 예방 실적 과악</p>	<p>-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p>	<p>구비(행정자료) " "</p>
	<p>-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질평가(미구비 통계지표에 대한 개발/개선계획 포함)를 요청하시기 바람</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08. 01 ~ 2008. 08. 21.	
2008 - 449			
법령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책(제도)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금번 개정 내용은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이유

□ 법령 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정책의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정의 :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법 제 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법 제6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법 제9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법 제14조)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법 제15조)

□ 개정 이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신설, 안 제4조~안 제6조)
-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규정
-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7인 이내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안 제8조, 안 제9조)

- (현행)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이 담당
- (변경) 자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 전담부서의 구성 등(안 제7조)

- (현행) 장학관 1인,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중·고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 (변경) 기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13조)

- 교육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

□ 비밀의 범위(안 제18조)

- 학교폭력 가 피해학생의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동 법령 전부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 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부서,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절차적인 내용이나,

- 법령전체에 포함된 정책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것으로 동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필요

5.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관련 통계(지표)	구비여부(출처)
- 학교폭력 현황 파악	-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가해·피해) 현황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미구비 구비(행정자료) " 구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예방 실적 파악	-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	구비(행정자료) " "

6. 평가의견 : 실질평가 대상

- 동 법령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정책으로 이의 집행·평가를 위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질평가(미구비 통계지표에 대한 개발/개선계획 포함)를 요청하시기 바람

4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13호				
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인력수급통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학생생활지도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대상기관		
	협 의	협의기간	2008. 7. 9부터 2008. 7. 18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 8. 1부터 2008. 8. 21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법령안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 등 관련 통계자료는 행정자료로 작성·관리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미구비 통계자료(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로 인해 통계청의 통계기반 정책 관리 예비 평가결과, 실질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등 학교 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전반에 관한 생활지도 통계를 보완 하기 위하여, NEIS(교육정보시스템)와 연계된 생활지도 통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887호, 2008.3.14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정책내용

- 의의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 도입근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추진방향 :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규정
- 세부내용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신설, 안 제4조~안 제6조)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규정
 -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7인 이내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안 제8조, 안 제9조)
 - 현행,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이 담당하던 것을 자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
 - 전담부서의 구성 등(안 제7조)
 - 현행, 장학관 1인,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중·고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을 둘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13조)
 - 교육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의 범위(안 제18조)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 확산 유도 ○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의 개선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대처 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 및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①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구비 여부 : 미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까지 신체상해, 협박, 따돌림 등 대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구비하였으나, 통계취합자료 분류(폭력정의)의 다양성과 취합과정(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의 복잡성 등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07년 자료는 미구비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정의의 다양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현황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 유형에 따른 정책적 접근 가능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발생현황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등 학교폭력 관련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06.11, 국정감사)과 함께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제정으로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현황'이 공시 항목으로 포함되는 등 정책환경이 변함에 따라 '07년 12월부터 외부기관(KERIS)에 의뢰하여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생활지도 관련 통계시스템을 개발중임

- NEIS와 연계한 학생생활지도(학교폭력 발생 현황, 전문상담교사 상담활동 현황 등) 통계 시스템을 '08년 9월말까지 구축 완료하고, '09년 2월까지 시범운영 및 교원연수(매뉴얼 연수) 등을 통해 '09년 3월부터 단위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입력·관리하여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개발/개선계획' 참조

○ 통계 지표 : ② 연도별 가·피해자 수

○ 구비 여부 : 구비

- 연도별·시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수를 행정자료로 기 파악

○ 유용성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파악을 통해 학교폭력 발생 추이 등을 정책에 반영

○ 정보 출처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행정자료)

○ 개발·개선 여부

- '09년부터 NEIS 연계 생활지도 통계 시스템으로 관련 통계 자료 확보 가능

○ 통계 지표 : ③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조치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

- 연도별·시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심의 조치 처분 및 피해학생 보호 조치 현황을 행정자료로 기 파악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에 대한 심의 조치 현황 파악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 시 활용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행정자료)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NEIS 연계 생활지도 통계 시스템으로 관련 통계 자료 확보 가능 ○ 통계 지표 : ④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 구비 여부 :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까지 시도교육청의 표본조사 통계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하였으나, '07년부터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단체(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를 교과부 대책 수립 시 주로 활용함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피해 추이, 가해학생의 경험률 등을 파악하여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연도별 학교폭력 실태조사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관련 실태조사는 신뢰성·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민간단체 또는 타부처(복지부 등) 실태자료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예정 ○ 통계 지표 : ⑤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부터 상담실 설치 현황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행정자료로 기 파악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실 설치 현황, 전문상담교사 배치
--	--

현황 등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 출처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행정자료)

○ 개발·개선 여부

-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등은 행정자료로 지속적으로 파악

○ 통계 지표 : ⑥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구비 여부 : 구비

- '05년부터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을 행정자료로 기 파악

○ 유용성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개인상담, 집단상담 등)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보 출처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행정자료)

○ 개발·개선 여부

-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등은 행정자료로 지속적으로 파악

○ 통계 지표 : ⑦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 구비 여부 : 구비

- '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현황을 행정자료로 기 파악

○ 유용성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법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사안 발생 중심에서 학생 인권 및 인간존중교육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시도별

	<p>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 수립의 핵심자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교육청 취합자료(행정자료)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현황은 행정자료로 지속적으로 파악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개발/개선 계획 :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 건수는 학교폭력 발생의 유형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고, 유형별 발생 빈도 및 변화 추이는 학교폭력 발생 유형에 적합한 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학교→지역교육청→시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발생 유형별 발생 건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의 정의에 따른 발생 유형별 발생 건수 - 기타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IS와 연계한 생활지도 통계 시스템 구축('08년 9월말 구축 완료 예정) → NEIS 구축 후 '08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관리

매뉴얼 등에 대한 교원연수를 통해 학교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보완 및 시스템 갱신

→ '09년 3월부터 단위학교에서 NEIS 시스템으로 관련 현황 통계자료 입력 및 DB화

<붙임 1> 학교폭력 발생 현황 주요 내용

- ① 학교폭력사건개요(사건발생 장소, 사건접수 경위, 사건유형, 피해정도 등)
- ② 가해학생 현황(가해자 수, 재학학교명, 학년, 성별, 가해자의 특성 등)
- ③ 피해학생 현황(피해자 수, 재학학교명, 학년, 성별, 피해자의 특성 등)
- ④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 현황(가해학생 처분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등)

<붙임 2> 생활지도 통계 관련 NEIS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 '07. 12. 17 : 생활지도 통계 관련 NEIS 연계 시스템 구축 기본결재
- '08. 4. 11 : KERIS 담당자 등 개발자와 1차 협의회
- '08. 5. 7 : KERIS 담당자 등 개발자와 2차 협의회
- '08. 6. 18 : KERIS 담당자 등 개발자와 3차 협의회
- '08. 6. 30 : 시·도 업무 담당자 회의 및 시스템 1차 시연회
- '08. 8월말 : 시·도 업무 담당자 회의 및 시스템 2차 시연회 예정
- '08. 9월말 : 동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08. 10~'09. 2 : 동 시스템 시범 운영 및 교원연수 실시 예정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생활지도팀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5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8-498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정책(제도)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소관기관/부서	교육과학기술부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개발/개선 합의)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input type="radio"/>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필요 판단	관련 통계(지표)	구비여부(출처)
- 학교폭력 현황 파악	-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가해·피해) 현황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구비예정 구비(행정자료) " 구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예방 실적 파악	-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	구비(행정자료) " "
III.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행정보고)
	■ 통계지표가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있음 (NEIS시스템을 통해 작성)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해당 없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 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 없음

IV.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

통 계 청 장

⑥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08. 01 ~ 2008. 08. 21.	
2008 - 498			
법령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정책(제도)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등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전반에 관한 생활지도 통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NEIS(교육정보시스템)와 연계된 생활지도 통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학생건강안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이유

법령 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함

정책의 주요내용

- 학교폭력 정의 :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법 제 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법 제6조)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시행(법 제9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
- 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법 제14조)
-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법 제15조)

□ 개정 이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 지역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신설, 안 제4조~안 제6조)
- 학교폭력 문제를 학생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시·도의 시장 또는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규정
- 지역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7인 이내의 관련 업무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 중심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자치위원회의 구성, 회의운영 등(안 제8조, 안 제9조)

- (현행)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이 담당
- (변경) 자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전담부서의 구성 등(안 제7조)

- (현행) 장학관 1인,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중·고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 (변경) 기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도록 함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등(안 제13조)

- 교육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

비밀의 범위(안 제18조)

-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인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동 법령 전부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 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부서, 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절차적인 내용이나,

- 법령전체에 포함된 정책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것으로 동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는 통계기반 정책관리 필요

5.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관련 통계(지표)	구비여부(출처)
- 학교폭력 현황 파악	- 연도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가해·피해) 현황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미구비 구비(행정자료) " 구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학교폭력 예방 실적 파악	-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	구비(행정자료) " "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통계지표 관련

- (소관부처 의견) 교육과학기술부는 예비평가에서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였음

통계청 제시 통계지표	교육과학기술부 의견
- 연도별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원안동의
- 시도별 자치위원회 심의(가해·피해) 현황	"
-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률	"
- 시도별 상담실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
-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상담실적 현황	"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실적	"

- (검토 의견) 동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모두 제시한 것으로 판단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NEIS시스템을 통해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을 작성할 계획임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 개선/개발 계획

- 보고 목적
 - 학교폭력 발생의 유형 다양성 파악, 유형별 발생빈도 및 변화 추이 등 학교폭력 발생유형에 적합한 대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고체계
 - 단위학교 → 지역교육청 → 시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보고 사항
 -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건수
 - NEIS와 연계한 생활지도 통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구비
 - ※ 생활지도 통계시스템 주요 내용
 - ① 학교폭력사건개요(사건발생 장소, 사건접수 경위, 사건유형, 피해정도 등)
 - ② 가해학생 현황(가해자 수, 재학학교명, 학년, 성별, 가해자의 특성 등)
 - ③ 피해학생 현황(피해자 수, 재학학교명, 학년, 성별, 피해자의 특성 등)
 - ④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리 현황(가해학생 처분사항, 피해학생 조치사항 등)
- 작성 주기
 - 6개월
- 추진 일정
 - NEIS와 연계한 생활지도 통계시스템 구축
 - '08. 9월 : 동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 '09. 3월 : 학교폭력관련 현황 통계자료 입력 및 DB화

- (검토 의견) 동 개발계획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 추진 일정,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교과부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개선 계획은 NEIS시스템을 통해서 필요한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평가의견 : 원안동의 (개발/개선 합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나.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88호					
법령명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 관련 위원회(국가우주위원회, 우주사고조사위원회) 정비 - 우주물체 예비등록 관련규정 합리화 -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근거 신설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법령 중 일부는 통계기반 필요성 있음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금번 개정내용은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인력수급통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우주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협의기간	2008. 6. 5.부터 2008. 6. 16.까지(12일간)		
	입법예고	2008. 6. 17.부터 2008. 7. 7.까지(21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우주 관련 위원회 정비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법정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의 정비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 ○ 도입근거 : 정부조직개편(08.2) 및 정부의 법정위원회 정비 계획(08.1) ○ 추진방향 :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위원회 직급 조정, 운영 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 폐지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정부위원 직급을 관계부처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 운영실적 및 실효성이 낮은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우주사고 발생시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 해당우주 사고에 대한 조사 실시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우주위원회 구성을 현실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활성화 촉진 ○ 우주사고 발생시 해당 우주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단 구성·운영으로 보다 심도 있는 우주사고 조사 가능 <p>< 우주물체 예비등록 관련규정 합리화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물체 예비등록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 수요 발생시 신속한 반영 곤란(전경련 규제개혁보고서)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전경련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 우주개발 관련 기관의 불필요한 시간적 기회비용 요소 제거 ○ 도입근거 : 정부의 규제개혁(폐지) 방침 ○ 추진방향 : 우주물체 예비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개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세부내용 : 우주물체 예비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발사계획서 세부사항을 법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물체의 예비등록 시의 발사계획서 세부사항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됨으로써 기술발전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 가능 <p><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근거 신설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 근거법령인 기술개발촉진법*의 폐지가 예정됨에 따라 우주개발사업 추진 관련 조항을 우주개발진흥법에 이관하여 신설 필요 <p>* 정부 직제 개편으로 舊과학기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소관 이관 되었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등에 관련 조항 이관 후 폐지 예정</p>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정부의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근거를 우주개발진흥법에 명확히 규정 ○ 도입근거 : 우주개발사업 추진 근거법령(기술개발촉진법) 폐지(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방향 : 우주개발사업 추진(출연) 근거 신설 ○ 세부내용 : 정부의 우주개발사업 추진근거, 사업 참여가능 기관, 사업추진 자원 등에 대한 규정 마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다소 모호*했던 우주개발사업 추진근거가 우주개발진흥법에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우주개발사업 추진 가능 <p>* 우주개발사업을 우주개발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아닌, 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p>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교육과학기술부	우주정책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314			
법령명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등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우주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우주개발 진흥정책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개정이유 】</p> <p><input type="checkbox"/> 우주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우주사고 조사 및 우주물체 예비등록 관련규정의 합리성 제고</p> <p><input type="checkbox"/>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과태료 부과 등 각 부처유사 법령 법제처 통합), 기술개발촉진법 폐지(지식경제부에 이관되었으나 산업개발촉진법과 중복)등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 정비</p> <p>【 제도의 주요 내용 】</p> <p><input type="checkbox"/>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은 교과부장관으로 동일하고 7개 부처* 정부위원 자격 변동 *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 (현행) 장관 → (변경) 차관 ○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법과 시행령에 분산규정 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통합규정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input type="checkbox"/>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사업 실시 기관이나 단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재단,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 우주개발사업 실시 재원마련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출연금,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 * 현재는 정부 출연금(예산)이 대부분 ○ 우주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교과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변경) 교과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 금번 개정내용은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사료됨</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통계지표 관리권고”</p> <p><input type="checkbox"/> 금번 개정과 관련된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 우주개발사업 현황(우주분야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등), 우주개발사업 지원실적의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다만, 동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있어, <u>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u></p> <p>※ 자세한 사항은 예비평가 검토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람</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7.9. ~ 2008.7.29.	
2008 - 314			
법령명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술개발촉진법 등		
정책(제도)명	우주개발진흥 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금번 개정내용은 실질평가 면제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우주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의 목적

-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법령주요내용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 해당 기관·단체의 우주개발사업 실시 유도, 재원 마련 규정
-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및 허가의 취소
- 우주사고단의 구성·운영, 위성정보의 활용, 우주개발사업 지원
-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등

□ 금번 개정이유

- 우주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우주사고조사 및 우주물체 예비등록 관련규정의 합리성 제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과태료 부과 등 각 부처유사 법령 법제처 통합), 기술개발촉진법 폐지(지식경제부에 이관되었으나 산업개발촉진법과 중복) 등에 대응하여 관련 규정 정비

3.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 조정

- 위원장은 교과부장관으로 동일하고 7개 부처* 정부위원 자격변동

* 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 지경부, 국토부, 행안부

- (현행) 장관 → (변경) 차관

-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이 법과 시행령에 분산규정되었던 것을 시행령에 통합규정

□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규정

- 우주개발사업 실시 기관이나 단체 규정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재단, 일반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연구개발 전담부서 등
- 우주개발사업 실시 재원마련 규정
 - 정부의 출연금, 정부외의 출연금, 사업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금 등 ⇒ 현재는 정부 출연금(예산)이 대부분
- 우주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의 변경
 - (현행) 교과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변경) 교과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우주사고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관련

- 우주개발사업 실시 기관·단체 규정과 이들 기관·단체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 통계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 조정, 우주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의 변경 관련

-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규정, 우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의 변경관련 정책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통계기반이 필요 없다고 판단됨

5. 필요 통계지표 검토

우주개발사업 실시 기관·단체 규정 관련

- 우주개발사업을 실제로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우주사업관련 실적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우주개발사업 실시 현황의 통계지표가 필요

□ 우주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관련

- 우주개발사업을 위한 재원과 지원한 실적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서는 지원실적의 통계지표가 필요

【필요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 고
우주개발사업 현황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사업 현황 - 우주분야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산업 실태조사 - 법적근거 : 우주개발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 주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개발사업 지원 상황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주개발사업 지원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 내부 행정자료 - e 나라지표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평가의견 : 통계지표 관리권고

- 금번 개정 내용은 우주개발사업의 기관이나 단체를 규정하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지원을 위해 재원마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 집행과 성과 평가를 위하여 통계를 기반 한 정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정책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있고, 추가적인 실질 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

3

일반행정/보훈 분야

-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 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123호					
법령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등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기본적인 통계 지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취득하는 통계 정보로서 동 법령을 통한 “통계기반 정책 관리”의 필요성은 낮음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동 개정안은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법률의 성격상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일반적 원칙·책무를 규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개별법을 통해 추진되므로 동 개정안에 별도의 통계 지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됨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보화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기간	2008. 8. 4.부터 2008. 8. 14.까지 (10일간)		
	입법예고	2008. 8. 18.부터 2008. 9. 7.까지 (20 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보화를 범정부적 관점에서 일관성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기관, 중앙,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국가정보화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도입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제2장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정보통신산업,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역기능 방지 등 국가정보화 전 영역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계획 수립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자체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지식정보사회위원회(대통령 소속)의 심의를 거쳐 확정, 각 기관별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적 관점에서 국가정보화를 일관성있고 계획적으로 추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에 기여 <p><공공정보화 등 추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공공·산업·민간 등 사회 각 영역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지식정보사회 구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제3장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각 분야별 정보화 원칙 수립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 규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p><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및 안정성·신뢰성 보장></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정보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정보화 역기능에 대처할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및 정보이용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 ○ 도입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제5·6장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등은 정보이용 측면의 건전성, 안전성을 위해 각종 시책 마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자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 - 정부는 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	---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고 신뢰받는 지식정보사회의 정착 및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p><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 조성하고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할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사회 환경 마련과 정보의 소통 기반 마련 ○ 도입근거 :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안 제7·8장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정보통신산업, 물리적·사회적 인프라, 역기능 방지 등 국가정보화 전 영역을 포괄하는 범정부적 계획 수립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을 추진 -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을 구축·운영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정보통신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지식정보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행정안전부	정보화총괄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 - 861			
법령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보화총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등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법의 제명 변경 (정보화촉진기본법 → 지식정보사회기본법) <input type="checkbox"/>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안 제2장) <input type="checkbox"/>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안 제3장) <input type="checkbox"/> 지식자원의 관리 및 활용 (안 제5장) <input type="checkbox"/>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안 제5장) <input type="checkbox"/>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안 제6장)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안 제7장) <input type="checkbox"/>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안 제8장)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기본적인 통계 지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취득하는 통계 정보로서 동 법령을 통한 “통계기반 정책 관리”의 필요성은 낮음		
통계청 평가의견	평가의견 : 실질평가 대상 <input type="checkbox"/>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 및 대응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발생 현황 및 지진가속도계 현황 등과 같은 필요지표를 구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질평가를 요청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붙임2 예비평가 검토결과 참조 바람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08.18 ~ 2008.09.08	
2008 - 861			
법령명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정책(제도)명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추진체계 등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기본적인 통계 지표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취득하는 통계 정보로서 동 법령을 통한 “통계기반 정책 관리“의 필요성은 낮음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정보화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의 목적

-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법령 개요

법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 격차법		지식정보 자원관리법	⇒ (가칭) 지식정보사회기본법
범위	전부	+	기본원칙 추진체계 (CIO협의회)	+	전부	+	전부	

□ 법령의 주요내용

-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 지식자원의 관리 및 활용
-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안전성·신뢰성 보장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고도화

□ 금번 법령 개정의 이유

- 기존 국가 주도의 정보화 촉진이 아닌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3.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법의 제명 변경

- 정보화촉진기본법 → 지식정보사회기본법

□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안 제2장)

○ 기본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

○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식정보사회시행계획 수립·시행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안 제3장)

-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 규정

□ 지식자원의 관리 및 활용 (안 제5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 있는 학술·문화·과학기술·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안 제5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 강구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수립·추진

□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안 제6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서비스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안 제7장)

-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 추진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안 제8장)

-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 기반 구축·운영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에 관한 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정보화관련 지표가 필요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에 대한 정책을 집행·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황 지표가 필요

□ 기타 개정사항은 정책의 집행·평가에 통계지표의 필요성은 낮아 보임

【필요 통계지표 예시】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공공정보화 수준 판단	공공정보화 지표	
전자정부 수준 판단	UN전자정부지수 순위 - 전자정부 준비지수 - 전자정부 참여지수	UN경제사회국 e-나라지표(행안부)
지역 정보화 수준 판단	지역정보화 지표	
산업 정보화 수준 판단	정보화 통계(사업체 대상)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인터넷 중독 현황 판단	인터넷 중독 실태	인터넷중독실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현황 판단	• 정보격차 현황 • 전체국민대비 취약계층 인터넷 이용률 격차 추이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평가의견 : 실질평가 대상

- 실질평가 대상금번 개정 내용 중 공공정보화 등 정책과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에는 상기 필요통계지표(예시)등 관련 지표를 구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실질평가를 요청하도록 조치

4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23호					
법령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보화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등 12개 부처		
		협의기간	2008.8.4.부터 2008.8.14.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8.18.부터 2008.9.7.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는 기사용중인 통계지표의 발전·보안으로 충분함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정책1>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국가정보화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공공 등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 필요

□ 정책내용

- 공공기관(중앙 및 지자체 포함)은 소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보화를 분야별로 추진
- 중앙 및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의 정보화를 추진
- 정부는 산업기반의 고도화와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

□ 기대효과

-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를 균형있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정책2>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지나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국민의 장기적 손상을 예방하고, 정보화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추진

□ 정책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 공공기관(중앙 및 지자체 포함)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웹 접근성 보장, 정보격차해소 관련 기술·개발의 보급 및 관련 제품의 지원 등 필요한 시책 추진

□ 기대효과

- 정보화의 부작용 방지를 통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안전성·신뢰성 제고에 기여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통계지표 1> 국가정보화 관련 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정보화 수준을 측정할 지수는 구비되어 있으나, 행정·경제·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 측정 지수는 미구비 ○ 유 용 성 : 국가정보화의 객관적 수준 측정 및 향후 개선 방향 도출 ○ 정보출처 : 국가정보화지수(NIA), 디지털기회지수(ITU), 전자정부준비지수(UN)등 각국의 공신력 있는 기관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지표 2> 인터넷 중독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계층별 인터넷 중독 현황의 진단 및 대책 마련 ○ 정보출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개발/개선 계획> : 국가정보화 분야별 지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 목적 : 행정,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별 정보화 수준 진단 및 향후 정책 방향 수립 ○ 조사대상(보고체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 행정안전부 ○ 조사(보고)사항 : 분야별 정보화 수준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2009. 3월

<p>작성자</p>	<p>기관명 행정안전부</p>	<p>부서명 정보화총괄과</p>	<p>직급 ○○</p>	<p>성명 ○○○</p>	<p>전화번호 -</p>
------------	----------------------	-----------------------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5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9 - 1011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소관기관/부서	행정안전부/정보화총괄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p><input type="checkbox"/> 소관부처가 제시한 2개 통계지표(국가정보화 관련 지수, 인터넷 중독율)와 1개 지표(국가정보화 분야별 지수 개발)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이견 없음</p> <p>○ 추가적으로 정보이용현황 등 관련 지표를 사용권고 함</p>		
【필요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출 처
국가정보화 현황의 파악	· 국가정보화지수	* 행안부 (지표제시)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 국가정보화 분야별 정보화지수 (행정, 경제, 문화 등)	* 통계지표 개발 필요(부처제시)
정보이용 관련현황	· 정보이용 현황(국민생활부문) · " (사업체) · 정보화 격차현황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화통계 조사,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_행안부)
	· 인터넷 중독률	* 행안부 (지표제시)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_행안부)
정보보호 안전성·신뢰성 판단	· 개인정보 침해사고현황 · 인터넷 침해사고 현황 · 스팸 수신량 조사 현황 · 개인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승인통계)
정보통신산업 현황	· 국내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국가승인통계)
광대역 통합정보 통신망(BCN)현황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가입자 현황 ·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추진현황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통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부분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미흡(추가지표 사용권고)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 당 없 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작성 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Ⅳ. 기타 참고사항		
<p>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 .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장</p>		

⑥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08. 18 ~ 2008. 09. 08	
2008-1011			
법령명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진흥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 등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등 분야별 정보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통계 지표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 중독 방지 및 정보격차 해소는 기사용중인 통계 지표의 발전·보안으로 충분함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보화총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의 목적

- 지식과 정보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 금번 개정 이유

- '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 환경의 변화 및 전세계적인 국가정보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 기존 국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의 가치 창출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법의 제명 변경

- 정보화촉진기본법 → 지식정보사회기본법

□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체계 (안 제2장)

○ 기본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지식정보사회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식정보사회위원회의 심의 거쳐 확정

○ 시행계획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식정보사회시행계획 수립·시행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안 제3장)

-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산업정보화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보화 추진 원칙 규정

□ 지식자원의 관리 및 활용 (안 제5장)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자원*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 있는 학술·문화·과학기술·행정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

□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안 제5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시책 강구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접근성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 수립·추진

□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안 제6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건전한 정보통신윤리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및 지속가능한 정보통신기기·서비스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안 제7장)

-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신기술의 지원 등 추진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안 제8장)

- 정부는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광대역통합정보통신* 기반 구축·운영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 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정책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 정보화 현황의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정보화지수 및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별 정보화 지수 관련 통계지표가 필요

-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정책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정보이용과 관련된 현황의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정보이용현황, 정보화 격차현황, 인터넷 중독현황 등 통계지표가 필요

-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정책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및 안전성·신뢰성보장 관련 현황의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침해사고 현황, 개인정보 침해사고현황, 스팸 수신량 조사 현황, 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 등의 통계지표가 필요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정책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산업현황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정보통신산업현황, IT경기수준 및 기업경영판단 등의 통계지표가 필요

-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정책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광대역 통합정보통신망현황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가입자현황, 통신망 구축현황 등 통계지표가 필요

- 그 외 사항은 통계기반 불필요

□ 통계지표 구비 여부

- 동 법령 개정 관련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필요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국가정보화 현황의 파악	• 국가정보화지수 (전자정부, 지역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통신부문 등)	* 행안부 (지표제시)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 국가정보화 분야별 정보화지수 (행정, 경제, 문화 등)	* 통계지표 개발 필요(부처제시)
정보이용 관련현황	• 정보이용 현황(사업체)	정보화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_행안부) 국가정보화백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
	• " (국민생활부문)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_행안부)
	• 정보화 격차현황	* 행안부 (지표제시) 인터넷중독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_행안부)
정보보호 안전성·신뢰성 판단	• 개인정보 침해사고현황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국가승인통계)
	• 인터넷 침해사고 현황	"
	• 스팸 수신량 조사 현황	"
	• 개인인터넷이용자 정보보호실태	"
정보통신산업 현황	• 국내 정보통신산업 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국가승인통계)
	• 정보통신산업 기업경기 실사지수	"
광대역 통합정보 통신망 (BCN) 현황	•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가입자 현황 •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추진현황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통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5. 소관부처 요청서 내용 검토

□ 부처 의견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관련 지수, 인터넷 중독을 등의 지표 필요성과 기 구비 여부를 제시하고 국가정보화 분야별 지수는 향후개발 계획을 제시함

- 지표제시 2건 : 국가정보화지수, 인터넷 중독률
- 향후 개발개선 계획 : 국가정보화 분야별 지수 개발

< 국가정보화 분야별 지수 개발 계획 >

- 조사(보고) 목적 : 행정,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별 정보화 수준 진단 및 향후 정책 방향 수립
- 조사대상(보고체계) : 한국정보사회진흥원(NIA) → 행정안전부
- 조사(보고)사항 : 분야별 정보화 수준
- 작성(보고)주기 : 매년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009. 3월

□ 검토 의견

- 행정안전부의 제시 2개 통계지표와 1가지표의 개발 계획에 대하여 이견 없음
- 추가적으로 정보이용현황 등 상기 제시지표는 사용권고 함

6. 평가의견 : “ 원안동의 ”

□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 및 통계개발 계획에 동의

- 다만, 관련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이용현황 등 상기제시 지표의 사용을 권고함

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03호					
법령명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	지진재해대책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지진방재종합대책				
소관기관	기관명	소방방재청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재난상황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35개 부·처·청		
		협의기간	2008. 6.25부터 2008. 7. 8까지(14일간)		
	입법예고	2008. 7.24부터 2008. 8.13까지(21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지진재해에 관하여 통계기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임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 > 지진방재종합대책</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 1.17 일본(고베)에서 규모 7.2의 지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 '95. 1.27 관계부처·전문가 회의 개최, 범정부차원의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 '95.12. 6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방재대책 등 법제화 ○ 이후 매년 내진설계 기준·대상 확대 등 지진방재종합대책 수정·보완 ○ '08. 3.28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지속적 지진방재종합대책 수립·추진중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내진성능 목표설정 및 법 제정 등 각종 제도 정비로 지진재해에 강한 국가건설 ○ 지진/지진해일 관측 및 예·경보시스템 개선으로 초기대응태세 완비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구축 및 교육·훈련 강화 등 신속대응으로 피해경감 및 확산방지 ○ 내진설계기준강화 및 지진위험도 작성 등 지진재해경감기반 구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해관련 예방, 대응, 내진대책 등 지진방재종합대책의 각 과제별 추진사항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진 발생시 피해 최소화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통계지표 1 > 지진재해 발생현황 (명칭 변경 : 우리나라 지진발생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붙임 1)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기상청 지진연보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 통계지표 2 > 지진해일 발생현황

(명칭 변경 : 우리나라 지진해일 발생현황)

- 구비여부 : 구비(붙임 2)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기상청 지진연보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 통계지표 3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현황

(명칭 변경 : 우리나라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현황)

- 구비여부 : 구비(붙임 3)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소방방재청 주요통계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 통계지표 4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명칭 변경 : 우리나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 구비여부 : 구비(붙임 4)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기상청 기상연보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 통계지표 5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현황

- 구비여부 : 미구비
- ※ 통계지표 4와 같은 성격으로 통계지표 5는 삭제함이 타당함.

< 통계지표 6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현황

- 구비여부 : 미구비
- ※ 통계지표 1·2와 동일한 내용으로 통계지표 6은 삭제함이 타당함.

	<p>< 통계지표 7 > 지진가속도계 현황 (명칭 변경 : 우리나라 지진가속도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미구비 ※ 현재 미작성되어 있으며,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예정일 '09. 3.29일 이후 지진가속도계 현황이 작성될 것으로 판단됨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소방방재청 자체 조사결과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 통계지표 8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현황(대상별) (명칭 변경 : 우리나라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미구비 ※ 현재 미작성되어 있으며,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예정일 '09. 3.29일 이후에도 작성하는 시간등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유용성 : 데이터 관리 ○ 정보출처 : 소방방재청 및 지자체 자체관리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개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지진가속도계 현황 등 미구비 통계지표는 차후 법령 시행에 따라 행정통계로 작성 예정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p>작성자</p>	<p>소방방재청</p>	<p>기후변화 대응과</p>	<p>○○</p>	<p>○○○</p>	<p>-</p>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9 - 562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정책(제도)명	지진방재종합대책	
소관기관/부서	소방방재청/기후변화대응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p><input type="checkbox"/> 귀 청에서 당초 제시한 통계지표와 추가필요지표의 통계개발·개선 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p> <p>○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현황’ 통계지표의 구체적인 개발/개선계획을 토대로, 이행여부 점검</p>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지표	비고(출처)
지진재해 발생 및 피해정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해 발생현황 • 지진해일 발생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현황 	기상청 지진센터 지진연보(기상청) 소방방재청 주요통계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현황 (관측실적, 통보현황) 	기상청 기상연보
지진가속도계 활용현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가속도계설치현황 (설치대상시설, 설치현황, 계측현황) 	실적자료 (개발예정)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침수현황(대상지역별, 침수정도, 연도별) 	실적자료 (개발예정)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보강대책 대상 시설현황 (중요도 구분, 대상시설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향후 개발/개선 필요 (전문가자문의견)
<p>* 우리청 검토의견에 대하여 중간협의 공문을 통해 소방방재청과 동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 추가 제시한 통계지표의 구체적인 개발/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작성</p>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통계개발/개선 필요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작성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Ⅳ. 기타 참고사항		
<p>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 .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장</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562	입법예고기간	2008. 7.24. ~ 2008. 8.13.	
법령명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지진재해대책법		
정책(제도)명	지진방재종합대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지진재해에 관하여 통계기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임		
소관기관	기관명	소방방재청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기후변화대응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법령 목적

- 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과 지진해일의 관측·예방·대비 및 대응, 내진대책과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법령 주요내용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
- 예방과 대비
- 내진대책

- 지진재해 대응
-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 제정이유

-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지진해일 관측, 내진대책 및 지진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공포('08. 3. 28, 법률 제9001호)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조치사항 지정(안 제2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별표1)
- ⇒ (기대효과) 지진재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지진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기준 (안 제4조)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를 설치하는 장소 및 성능과 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지진해일관측 장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
- ⇒ (기대효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설치장소, 성능 및 규격을 정함으로써 관측자료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진가속도 계측*대상시설의 지정(안 제5조)

- 내진설계대상시설중 지진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지진가속도를 계측하도록 하고, 가속도계의 설치위치 등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지진가속도계를 주요시설물에 설치하여 계측함으로써 전국적인 진도분포도 작성 및 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제정에 활용

* 지진가속도계측은 지진가속도계를 이용하여 각종 구조물과 기기 등(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시설물이 지진으로 인한 외부적인 힘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감지하는 행위를 말함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안 제6조)

- 통보대상 지진 및 지진해일
 - 한반도 영역에서 발생한 규모 2.0이상의 지진 및 국내에서 감지된 국외발생 지진 중 유감 지진
 - 한반도의 주변해역 등에서 규모 7.0이상의 해저지진으로 인하여 해일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 통보시기
 - 한반도 영역에서 관측된 지진 등과 국내에서 감지된 국외 발생 지진 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통보
- 통보방법
 - 관측된 자료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통보
⇒ (기대효과) 지진 등의 관측정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신속 통보하도록 통보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진 초기대응 등에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저감

*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됨(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등(안 제9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토록 하고, 작성·설치장소·표시방법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 (기대효과) 지진해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지진해일시 신속히 주민을 대피토록 하여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

□ 내진보강대책 수립대상시설 및 방법 등(안 제11조)

-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상 시설과 방법 등을 정함

⇒ (기대효과)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 구성·운영(안 제12조 내지 제13조)

- 중앙 및 국외 지진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기대효과) 향후 우리나라의 지진방재정책 수립에 기여

□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 등(안 제14조)

-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기술개발 및 연구를 추진하여야 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별표2)하고,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

⇒ (기대효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의 통보와 관련하여 재해 발생 및 피해정도 판단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을 위하여 관련 현황자료 필요
 - ⇒ 이를 위하여는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현황과 피해현황,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관측장비현황, 관측실적, 통보실적 등 현황관리를 위한 통계지표 필요

- 지진가속도 계측대상시설의 지정에 관련한 현황자료 필요
 - ⇒ 이를 위하여는 지진가속도계현황관련 설치대상시설, 설치현황, 계측 현황 등 관련 통계지표 필요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의 작성·활용 및 유지관리 위한 현황자료 필요
 - ⇒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작성을 위하여는 해안 침수관련 현황 (대상지역별) 등 관련 통계지표 필요

- 지진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현황자료 필요
 - ⇒ 이를 위하여는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대상 시설현황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 필요

- 지진관측기관간 신속한 업무협약과 자료공동활용을 위한 현황자료 필요

⇒ 지진관측기관협의회 대상기관 및 각기관별 활용 관측소현황을 파악하기위하여 지진관측기관협의회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통계지표 구비여부

- 상술한 통계지표는 구비하였거나, 동 정책 추진실적으로 구비가 가능하며, '내진보강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대상시설현황'과 지진관측기관협의회 '관련 통계지표는 향후 개발/개선 필요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지표	비고(출처)
지진재해 발생 및 피해정도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재해 발생현황 • 지진해일 발생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피해현황 	기상청 지진센터 지진연보(기상청) 소방방재청 주요통계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관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장비 현황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현황 (관측실적, 통보현황) 	기상청 기상연보
지진가속도계 활용현황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가속도계설치현황 (설치대상시설, 설치현황, 계측현황) 	실적자료 (개발예정)
해안침수예상도 및 침수흔적도 작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침수현황(대상지역별, 침수정도, 연도별) 	실적자료 (개발예정)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보강대책 대상 시설현황 (중요도 구분, 대상시설별,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향후 개발//개선 필요 (전문가자문의견)
관측기관간 업무협약과 자료공동활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기관협의회 현황 (대상기관별, 기관별 관측소현황 등) 	향후 개발//개선 필요 (전문가자문의견)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중간협의 공문을 통해 2건의 추가 통계지표의 개발/개선 필요성을 제시, 이에 소방방재청은 1건 (반영 개발/개선), 나머지 1건(미반영:사유제시) 의견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타당성을 검토함

□ 소관기관과 협의내역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8.27.
- 동 정책관련 전문가 자문 : 2008. 9.4. ~ 9. 17.
 - 인천대학교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 ○○○
- 실질평가 결과에 대한 중간 협의 의견 통보 : 2008. 9.22.
-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지표에 대한 부처의견 접수 : 2008. 9.29.
 - (통계지표 관련)통계청 제시 2건 통계지표에 대해

추가 필요 통계지표	주요 조사사항	협의 결과(의견회신)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현황	대상시설현황 (관계중앙행정기관)	(반영) ○ 개발/개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목적 : 시설물에 대한 내진실태 파악 및 보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며, 내진보강을 추진함으로써 지진방재에 철저를 기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조사대상(보고체계) : 관계중앙행정기관 - 조사(보고)사항 : 내진적용 시설물 현황 및 적용현황 파악 - 작성(보고)주기 : 5년 - 추진일정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일 (예정 '09. 3.27)이후 추진

관측기관협의회 현황	대상기관현황, 기관별 관측소 현황 등	(미반영) ○ 미반영사유 - 대상기관은 지진재해대책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 당초 제시한 통계지표 4번에 기관명 과 관측소 현황 등 관측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음.(중복)
---------------	-------------------------	--

□ 통계지표 관련

- 소방방재청은 지진방재종합대책 정책의 집행 및 성과평가에 필요한 지진 및 지진재해 발생, 피해현황 등 4종의 통계지표를 제시
- 이에 상기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당초 소방방재청이 제시한 통계지표 외에 동 정책의 집행단계의 ①“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현황” ②“관측기관협의회 현황” 통계지표 추가 제시

⇒ 부처 협의를 통해 상기 지표 중 ① 반영 (개발/개선) ②미반영 (사유제시: 지표 중복 타당성 인정) 동의 하기로 합의하였음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평가의견 :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

- 소방방재청에서 기 제시한 통계지표와 추가필요지표 “내진보강 대책 대상시설현황”의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여성/보건 분야

-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44호					
법령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제도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대상 종목 폐지와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 법령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통계기반 정책관리를 할 사항이 아님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동 법령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와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음				
소관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보통계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의	대상기관	법제처 등 38개 기관		
		협의기간	2008. 6 .26.부터 2008. 7. 7.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7. 14.부터 2008. 8. 5.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제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정착 시키기 위함</p>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 도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추진방향 : 체육진흥투표권 운동종목의 제한 폐지 및 고정 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을 기존의 6개종목외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투표 적중자가 없을 경우 이월횟수와 환급금 교부방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권 발행대상 6개 종목에 대한 특혜시비 해소와 비인기종목의 투표권 발행이 가능하여 종목간의 균형발전 도모 - 고객들의 과도한 사행심 경감에 기여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408			
법령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제도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관련법령 개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학교와 직장 체육의 진흥, 체육지도자의 양성, 선수 등의 보호·육성, 여가 체육의 육성,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p>< 개정된 주요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안 제29조, 안 제40조제2항4호) -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안 제35조 제1항 제1호 하단)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주최단체의 매년도 지정신청(안 제14조제1항, 제3항)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동 법령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와 고정 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음</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통계지표 관리권고</p> <p>○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지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p> <p>- 다만, 상기 지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함</p> <p>*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예비평가 검토결과」 참조</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7. 14 ~ 2008. 8. 5	
2008 - 408			
법령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정책(제도)명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동 법령개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와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통계에 기반한 정책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음		
소관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체육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

법령의 주요내용

- 체육 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체육의 날과 체육 주간, 학교와 직장 체육의 진흥, 체육지도자의 양성, 선수 등의 보호·육성, 여가 체육의 육성, 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체육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공포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체계를 전면 재구성
 -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사업의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하고 고정환급률식 상품의 환급금 이월횟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규정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3. 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 제한 폐지(안 제29조, 안 제 40조 제2항 4호)
 - (현행) 투표권 발행대상 운동종목이 6개 종목으로 제한
 - (개정) 발행대상 운동종목은 기존의 6개 종목 외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
 - 6개 종목에 대한 특혜 시비 해소와 비인기종목의 투표권 발행이 가능하여 종목간의 균형발전 도모
-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이월 제한(안 제35조제1항제1호 하단)

- (현행) 고정환급률식 상품 중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에 당해 등위에 계속 이월
- (개정) 고객들의 과도한 사행심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표 적중자가 없을 경우 이월횟수와 환급금 교부방법을 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규정

- 현행 대상운동경기 :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씨름
- 연간발행회수 : 1,000회 이하
- 단위 투표금액 : 100원~1,000원
- 구매한도 : 매회차별로 1인당 10만원
- 환급률
 - 고정환급률식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50%
 - 고정배당률식 :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금액의 50% ~ 70%

- 단위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
 -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권

$$\text{등위별환급금} = (\text{환급금 총액} \times \text{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 \times 1/\text{등위별 적중단위 체육진흥투표권수}$$
 -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권

$$\text{단위체육진흥투표권환급금} = \text{단위투표금액} \times \text{단위 적중 투표항목의 환급배당률}$$

투표권의 종류



□ 수익금 용도

	고정환급률 (TOTO)	고정배당률 (PROTO)
환급률	50%	50~70%
수익금	30.638%	15~30.638%
위탁운영비	19.362%	19.362% 이하

□ 운영구조



※ 환급방법

- ◆ (고정환급률식)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 (고정배당률식)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 투표항목당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

□ 기타사항

-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함축·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 경기주최단체의 매년도 지정신청(안 제14조제1항, 제3항)

- 경기주최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도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주최단체로의 지정기간을 부여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정을 취소
 - 투표권 발행대상 종목 확대에 따른 신속적인 경기주최단체 지정이 가능하고 경기주최단체의 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경기주최단체 지정신청 관련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경기주최단체 지정 현황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표	• 경기주최단체 지정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 관련

- 고정환급률식 상품 환급금의 이월 제한을 통하여 환급금 교부금액과 발행대상 운동종목별 수익금(매출) 현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수익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필요지표	• 발행대상 운동종목별 수익(매출)현황 • 환급방법에 따른 환급금 교부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통계지표 관리권고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수익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상기 지표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함

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4호				
법령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소관기관	기관명	여성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인력개발기획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감사원, 행안부, 통계청 등 56개 기관	
		협의기간	2008. 8. 13.부터 2008. 8. 23.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8. 28.부터 2008. 9. 17.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실질평가 대상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취업실태 및 욕구 등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취업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욕구에 부합하는 취업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 도입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추진방향 :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연구용역 추진) ○ 세부내용(조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및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등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 수립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 경력단절여성의 현황 및 실태 ○ 구비여부 : 일부구비, 미구비 통계는 개발 계획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효율적 정책수립에 활용 ○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여성부, 개발예정)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 활용 - 개발이 필요한 통계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

	<p>□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과 취업률 제고 여부 파악 등에 활용 <p>※ 통계지표, 구비여부, 정보출처, 작성방식 등은 정책집행과 동일</p>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개발계획>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p> <p>□ 조사(보고)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 취업실태 및 욕구 등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취업 촉진 정책 수립에 활용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의 인지도와, 실질적 취업률 제고에 기여 여부 등 정책의 효과성 파악 <p>□ 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30~49세 여성 중 비경제활동 여성인구의 약 0.5%에 대해 표본조사 - '07년 말 기준 실태조사 대상 약 16천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td> <td></td> <td></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단위:천명</td> </tr> <tr> <th>구분</th> <th>총인구 (a=b+c)</th> <th>경활인구(b)</th> <th>비경활인구(c)</th> <th>실태조사 대상 (c*0.5%)</th> </tr> <tr> <td>30~49세 여성</td> <td>8,176</td> <td>4,994</td> <td>3,184</td> <td>16</td> </tr> </table> <p>※ 자료출처 : 2007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p> <p>□ 조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 등 <p>※ 연령대별 여성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 등의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활용</p> <p>□ 작성(보고)주기 : 3년</p> <p>□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에 실태조사 실시 계획(연구용역 추진) -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단위:천명	구분	총인구 (a=b+c)	경활인구(b)	비경활인구(c)	실태조사 대상 (c*0.5%)	30~49세 여성	8,176	4,994	3,184	16
				단위:천명												
구분	총인구 (a=b+c)	경활인구(b)	비경활인구(c)	실태조사 대상 (c*0.5%)												
30~49세 여성	8,176	4,994	3,184	16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2>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운영</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육아 부담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ONE-STOP 여성종합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구직상담 및 취업정보, 취업 및 복지 지원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도입근거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등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을 센터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도에 50개소를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12년 100개소) - 기존 교육훈련 기관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여 취업상담, 직업 교육, 인턴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 - 지원센터의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 지원센터의 종사자 자격, 운영기준 등 - 지원센터의 인력,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관리 -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현황 관리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인력 현황 ○ 구비여부 : 향후 구비예정(행정보고)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 지역별 지정 현황 및 신규 지정 필요성 파악 등의 정책참고 자료로 활용 ○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및 노동부의 관련 행정자료, 센터별 보고 자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면 행정자료로 관리할 예정 <p>□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별 취업상담현황, 직업교육훈련 현황, 취업지원 현황, 취업알선 현황 - 센터의 실적 평가 결과 ○ 구비여부 : 향후 구비예정(행정보고)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활용 ○ 정보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부 및 노동부, 지자체의 관련 행정자료, 센터별 보고 자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부터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면 행정자료로 관리할 예정
--------------------------------------	--

통계개선/ 개발계획	<p><개발계획>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파악</p>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 관리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p><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p><input type="checkbox"/> 조사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인력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상담현황, 직업교육훈련 현황, 취업알선 현황, 취업지원 실적 등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실적평가 결과 <p><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반기별, 연도별</p> <p><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도에 50개소의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설치 예정 ○ 반기별로 센터의 현황을 분석·관리 ※ 조사 보고체계 : 지원센터 → 시·도 → 여성부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여성부	인력개발기획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 관리번호	2008 - 859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 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기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 인력개발기획과	
정책(제도)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개발/개선합의]」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절한 통계가 모두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대별 여성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 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등)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실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환경 및 이용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효과에 대한 인지도 	개발계획 제출 (여성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현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인력 현황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취업상담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취업지원 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실적평가 결과 	개발계획 제출 (여성부)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통계개선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가능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 않는가?	해당없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통 계 청 장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859	입법예고기간	2008. 8. 28 ~ 2008. 9. 17	
법령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정책(제도)명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실질평가 대상		
소관기관	기관명	여성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인력개발기획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 법령 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 및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법령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지원, 유망직종 선정·지원, 인턴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

□ 금번 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제정(2008. 12. 6, 시행)
- 동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 절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과 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계획(시행령 안 제2조 및 제3조)

-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동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는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여성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시행령 안 제4조)

- 경력단절여여성 등의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
- 직업교육훈련 등 취업을 지원
- 취업 후 경력단절방지 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고, 노동부와 공동 추진하는 부처간 협력모델 제시('12년까지 100개소 지정 예정)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행령 안 제5·6조)

- (대상기관)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한 시설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립된 여성교육훈련기관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지정심의)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관계전문가 등을 포함한 지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
- (운영보고) 지원센터의 장은 여성부장관과 노동부장관에게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제출, 운영현황과 실적은 반기별로 제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시행규칙 안 제2조)

- 조사주기 : 3년
- 조사사항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에 관한 사항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실태 및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등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관련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성과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인력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상담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지원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실적평가 결과 	행정자료로 구비 필요 (여성부)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실태조사 관련

-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여성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환경 및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효과에 대한 인지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여성부)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소관기관과의 협의내역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9. 5 (실질평가 면제로 요청)
- 예비평가결과 통보 : 2008. 9. 16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9. 29
-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에 대한 여성부 의견

통계청 제시지표	여성부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별 여성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동의(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효과에 대한 인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 제출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지정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인력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상담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직업교육훈련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지원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실적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계획 제출 (여성부)

□ 통계지표 관련 검토의견

- (소관부처 의견) 여성부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상기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음
- (검토 의견) 제시한 통계지표를 구비하면, 동 정책에 필요한 통계는 모두 갖출 것으로 판단됨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표본조사 및 행정정보를 통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개발할 계획임

통계개발 세부 계획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 조사대상(보고체계)
 - 출산,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30~49세 여성 중 비경제활동 여성인구의 약 0.5%에 대해 표본조사
 - 2007년말 기준 실태조사 대상 약 16천명

단위:천명

구분	총인구 (a=b+c)	경제활동인구		실태조사 대상 (c*0.5%)
		경활인구(b)	비경활인구(c)	
30~49세 여성	8,176	4,994	3,184	16

※ 자료출처 : 2007년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 ◆ 조사사항
 - 경력단절여성현황(경력단절여성 비율 등)
 - 경력단절여성 등의 특성(학력, 경력단절 사유·기간)
 - 경력단절여성 등의 교육훈련 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실태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인지도 등

※ 연령대별 여성 취업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인구 등의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를 활용

- ◆ 작성주기 : 3년
- ◆ 추진일정
 - '10년도부터 3년을 조사주기로 실태조사 실시 계획(연구용역 추진)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 ◆ 조사대상(보고체계) :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시·도 → 여성부
- ◆ 조사사항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인력 현황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 취업상담현황, 직업교육훈련 현황, 취업알선 현황, 취업지원 실적 등
 -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실적평가 결과
- ◆ 작성주기 : 반기 또는 1년
- ◆ 추진일정
 - '09년도에 50개소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설치 예정
 - 반기별로 센터의 현황을 분석·관리

- (검토 의견) 동 개발계획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 추진일정,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상기 통계지표는 조사통계 개발계획 및 행정정보고를 통해서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원안동의 (개발/개선 합의)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절한 통계가 모두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통계청(통계협력과, 고용통계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추진하시기 바람

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329호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법령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소관기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책통계담당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국민연금급여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재정부, 행안부, 국방부, 교육부 등		
		협의기간	2008. 8. 29부터 2008. 9. 8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9. 22부터 2008. 10. 12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 연계 제도 도입시 '연금 간 이동자', '연계대상자 현황', '연계 연금액'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함 이러한 통계지표는 각 연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작성·관리될 예정임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부재로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므로, 연금제도 간 가입기간 연계를 통해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정책내용

○ 의의

-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 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으로 연금수급권이 보장되고, 직업이동에 따른 노후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생활보장 가능

○ 도입근거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제정)

○ 추진방향 :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각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도 연계를 통한 최소가입기간의 충족이 가능하도록 함

○ 세부내용

-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의 가입기간만 합산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함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하고,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연계신청을 하여야 함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이 각각 20년 미만이지만 이 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를 연계대상으로 함
- 연계급여의 급여수준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 해당제도에서 정하는 지급률 적용함
- 연금 수급연령은 60세로 통일하되 국민연금에 맞춰 상향 조정하며 법률제정 이후 연금 간 이동자들부터 연계제도를 적용함

□ 기대효과

- 직업 간 이동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 및 평가</p> <p>◎ 통계 지표 : ①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개발예정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신청자 추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연계신청에 따른 미지급 보험료와 연금 간 이동자 현황파악을 통하여 공적 연금 간 연계 정책에 활용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 연계신청자 추이 등 <p>◎ 통계 지표 : ②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개발예정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수급자 현황과 연금액을 파악하여 연계제도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급여 수급권자 현황, 연계연금별 급여실적 등 <p>◎ 통계 지표 : ③ 연계에 따른 기금·재정수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개발예정 ○ 유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제도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연금제도 개선 등 정책수립 시 활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 개발·개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시행 초기 미지급 급여액, 각 연금기금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 등
통계개선/ 개발계획	<p><개발/개선 계획 1 :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를 파악하여 연금 간 연계제도의 기초자료 활용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공단→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별정우체국연합회→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간 이동자 조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국민연금 - 국민연금→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국민연금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 ○ 연계신청자 조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 퇴직시 연계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우체국 퇴직 시 연계신청자 - 국민연금 자격 상실(60세)시 연계 신청자 <p><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3월) <p><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계속된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 ※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 되는 정보로서, 가입자 현황 및 탈퇴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 작성 예정 <p><개발/개선 계획 2 :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실적></p>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연금 수급자 현황 파악 및 급여종류별 실적 분석을 통하여 연계정책에 활용 <p><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공단→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별정우체국연합회→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실적 조사 사항 - 연금제도별 연계연금 수급자 추이 - 연계급여별 수급자 및 금액 현황 * 연계급여 종류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

작성(보고)주기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3월)

추진일정

-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계속된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

※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 되는 정보로서, 수급자 현황 및 연금지급액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 작성 예정

<개발/개선 계획 3 : 연계에 따른 기금·재정수지>

조사(보고)목적

- 연계에 따른 추가 연금지급이나 일시금 미지급금액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연금제도별 재정수지나 기금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정책결정에 활용하고, 재정 건전화 등 관련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공단→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별정우체국연합회→우정사업본부→지식경제부

조사(보고)사항

- 각 연금제도별 재정수지 현황 조사 사항

- 국민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공무원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군인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별정우체국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p><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월 7~8월)</p> <p><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p> <p>○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계속된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p> <p>※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되는 정보로서, 연금지급액 및 반납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 작성 예정</p>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급여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8 - 786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정책(제도)명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소관기관/부서	보건복지가족부 / 국민연금급여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p><input type="checkbox"/> 새로이 도입되는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 제시된 통계지표가 필요하며,</p> <p>○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절한 통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p>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재정현황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현황 군인연금 재정현황 별정우체국연금 재정현황 공적연금간 이동현황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통계연보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홈페이지 행정자료로 기구비 (보건복지가족부)
연계연금 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인구추계 합계출산율 노인부양비 소비자물가상승률 실질경제성장율 실질임금(상승률) 	인구추계 (통계청) 출생통계 (통계청) 인구추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국민소득 (한국은행) 매월노동통계 (노동부)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 연계연금 수급자현황 연계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연계에 따른 기금·재정수지현황 	개발계획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통계개선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가능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해당없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Ⅳ. 기타 참고사항		
<p>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장</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9. 22 ~ 2008. 10. 13	
2008 - 786			
법령명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계법령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정책(제도)명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시 '연금 간 이동자', '연계대상자 현황', '연계연금액'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고, 이러한 통계지표는 각 연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작성·관리될 예정임		
소관기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국민연금급여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 법령 목적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간의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법령의 주요내용

- 연계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 연계대상 기간, 연계급여의 종류, 연계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사항
- 연계노령연금액과 연계퇴직연금액에 관한 사항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금번 제정이유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도 가입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직역연금* 간에는 연계가 가능하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연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

* 직역연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3. 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 연계

-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간의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금을 지급
 -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 수령

□ 연계 적용대상 (안 제3조)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가 희망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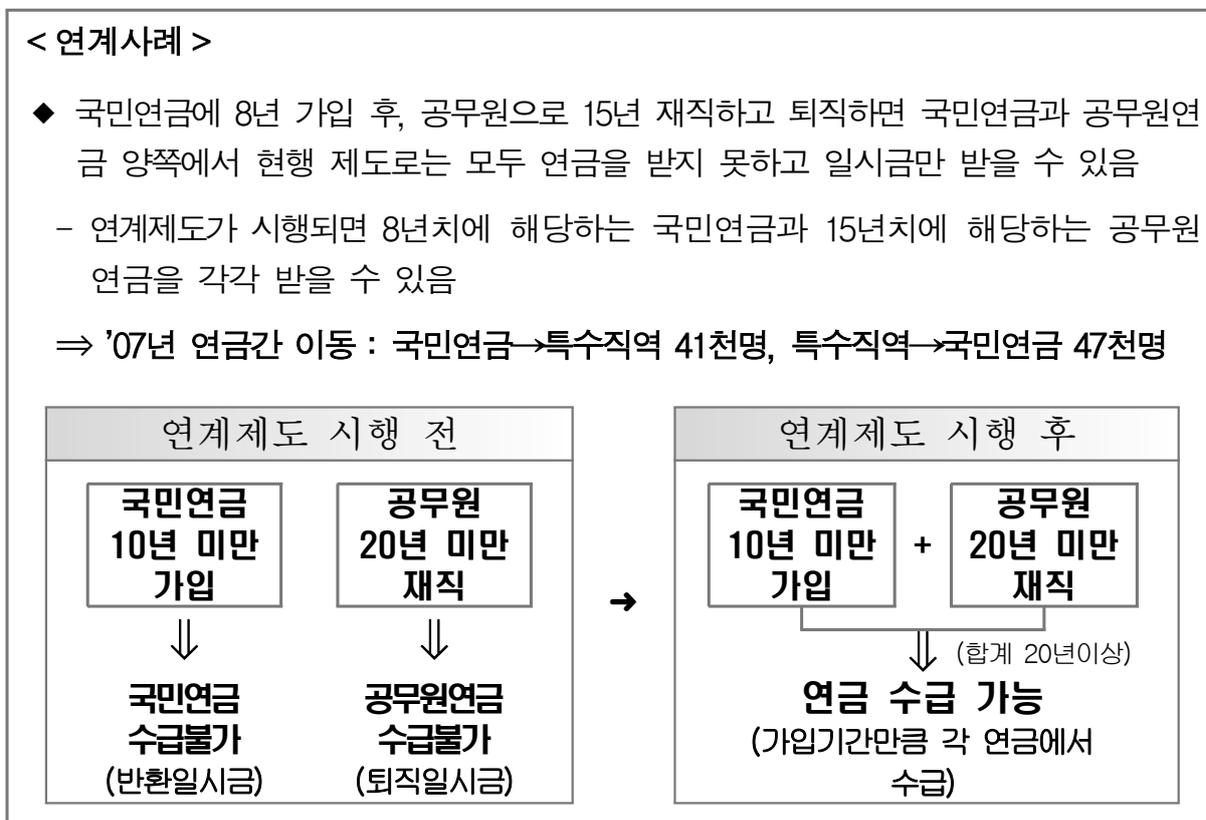
□ 연계대상 기간 (안 제4조)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각 직역연금 재직기간을 합산

- 가입기간과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연금법에 따른 가입기간 또는 재직기간은 연계대상 기간에서 제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소급통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재직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합산에 의하여 인정된 재직기간이 타 직역 연금에서 인정하는 재직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연계급여 종류 (안 제5조)

- 연계급여 종류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의 신청 (안 제6조)

- 60세의 도달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각 직역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격취득 후 2년 이내에 가능)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안 제7조)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은 60세부터 지급하되,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의 지급연령이 60세보다 높은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함

□ 연계노령연금액 및 연계퇴직연금액 (안 제8조 및 9조)

- 연계연금의 급여지급 수준은 각 연금법이 정하는 지급률을 적용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도입

-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각 연금의 재정현황,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 연계연금 수급자 및 급여실적, 연계에 따른 기금·재정수지 통계를 관리할 필요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공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재정현황 • 공무원연금 재정현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재정현황 • 군인연금 재정현황 • 별정우체국연금 재정현황 • 공적연금간 이동현황 	국민연금통계연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통계연보 (국방부) 별정우체국연합회 홈페이지 행정자료로 기구비(보건복지가족부)
연계연금 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래인구추계 • 합계출산율 • 노인부양비 • 소비자물가상승률 • 실질경제성장율 • 실질임금(상승률) 	인구추계 (통계청) 출생통계 (통계청) 인구추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통계청) 국민소득 (한국은행) 매월노동통계 (노동부)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의 효율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 • 연계연금 수급자현황 • 연계연금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 연계에 따른 기금·재정수지현황 	개발계획 제출 (보건복지가족부)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통계지표 관련

- (소관부처 의견)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 도입에 따라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음
- (검토 의견) 통계청에서 제시한 연계연금 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통계지표를 추가하며, 동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모두 구비된 것으로 판단됨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기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기 통계지표는 행정정보고를 통하여 신규로 통계를 개발할 계획임

통계개발 세부계획

□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 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군인연금 : 국방부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합회 → 우정사업본부 → 지식경제부

◆ 조사사항

- 연금 간 이동자 현황
 - 국민연금 →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연금
 -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연금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 → 국민연금
 -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
 - 별정우체국 →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연금
- 연계신청자 현황
 - 직역(공무원 · 사립학교교직원 · 군인) 퇴직시 연계신청자
 - 별정우체국 퇴직시 연계신청자

- 국민연금 자격 상실(60세)시 연계 신청자
- ◆ 작성주기 : 1년 (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3월)
- ◆ 추진일정
 -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지속된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
 - ※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 되는 정보로서 가입자 현황 및 탈퇴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 작성 예정

□ 연계연금 수급자현황 및 급여종류별 지급실적

-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군인연금 : 국방부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합회 → 우정사업본부 → 지식경제부
- ◆ 작성주기 : 1년 (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3월)
- ◆ 추진일정
 -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계속된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
 - ※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 되는 정보로서 수급자 현황 및 연금지급액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작성 예정

□ 연계에 따른 연금제도별 재정수지현황

-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공무원연금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행정안전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기술부
 - 군인연금 : 국방부
 -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별정우체국연합회 → 우정사업본부 → 지식경제부
- ◆ 조사사항
 - 각 연금제도별 재정수지 현황 조사 사항
 - 국민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공무원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군인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별정우체국연금 총수입, 총지출, 기금

- ◆ 작성주기 : 1년 (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7~8월)
- ◆ 추진일정
 - 각 연금관리기관 전산망 구축 (6개월 정도 전산개발기간 필요) → update (지속적 자료 축적) → 국가승인통계 절차
 - ※ 국민연금공단 및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업무수행 과정에서 획득하는 정보로서 연금 지급액 및 반납금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매월 말 통계 작성 예정

- (검토 의견) 동 개발계획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 추진일정,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는 행정보고를 통해서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평가의견 및 조치 계획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 금번 새로이 도입되는 공적연금 간 연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상기 제시된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절한 통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5

농림수산식품 분야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279호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통계기반 정책관리 필요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등 통계가 필요하나, ○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까지 시행해오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명문화,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하는 정책이 아님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법무부등 관계부처 및 시·도 등(35개)		
		협의기간	2008.9.30 부터 2008.10.10까지(11일간)		
	입법예고	2008.10.14.부터 2008.11.7.까지(25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1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을 제고 등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 유도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하였음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임대사업 지원·육성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됨. <p>< 정책2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를 일원화 시켜 제조업체의 편의를 도모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에 의한 “검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의 성능, 안전성 등에 관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와 “검정” 을 “검정”으로 일원화 <p>※ 제조업체가 희망할 경우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하여 시험의뢰함(시제품 1개 모델에 대해서만 시험 실시)</p>
-------------------------------------	---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시험평가 제도 일원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조업체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3 > 실효성이 부족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노령화 등 농기계 사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당초)

-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확인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
-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개조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조사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 (변경)

-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장치를 임의개조·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화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크게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 - 956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법령 개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 법령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의 임대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연구 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p><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안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안 제9조 및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와 “검정”을 “검정”으로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안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장치를 임의개조·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수 있도록 함 ○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 하고,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안 제11조)
<p style="text-align: center;">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등 부분적인 통계가 필요하나, - 농기계 보유량 조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통계로 지정,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행정조사하고 있음(승인번호 : 일반통계 11,410 '75. 7.29) ○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까지 시행해오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명문화,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하는 정책이 아님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평가의견</p>	<p>□ 통계기반정책관리 “ 실질평가 대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령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업기계화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u>농기계보유현황, 농기계임대사업현황, 농기계안전사고발생현황</u> 등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동 문서 접수 후 <u>10일 이내 실질평가 요청</u> ※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2(예비평가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람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956	입법예고기간	2008. 10. 14. ~ 11. 7.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등 통계가 필요하나, ◦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까지 시행해오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명문화,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하는 정책이 아님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의 목적

-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 법령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임대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연구 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확대 되는 등 농업여건 변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기계범위 확대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하여 임대사업 활성화
- 농업기계시험·평가 제도를 검정제도로 일원화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안 제8조)

-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
- (변경)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 및 이용률 제고 유도

- 시장·군수가 국고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임대농기계를 수입한 후, 농가에게 임대(대부분 1일 단위로 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은 '03년 시범사업을 거쳐 '04년부터 추진
- 사업 주관기관 변경 : ('03년) 지역농협 → ('04년 이후) 시·군
- 사업단가
- ('03년~'05년) 2.5억원/개소 → ('06년) 3억원 → ('07년) 5억원
- 국고지원을 : ('03년~'04년) 30% → ('05년 이후) 50%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안 제9조 및 제10조)

- (현행)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동 법령에 의한 “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에 의한 “검정”으로 이원화
- (변경) “검사”와 “검정”을 “검정”으로 일원화

□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안 제12조)

구분	현행	변경
안전장치부착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하여 11개의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안전장치 <u>부착 확인 의무화</u>
확인제도	정부지원 농업기계 중심으로만 안전장치 확인 * 현금으로 판매하는 저가·저품질 외국산 농업기계는 확인이 어려움	<u>유통중인 농업기계 대상으로</u>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

□ 기타사항

-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 하고,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안 제11조)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 관련
 -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보유현황', '농기계임대사업 현황' 등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 관련
 - 우량 농기계의 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성능, 안전성 등에 관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하여 '농기계 검사·검정 실적' 등 통계지표를 관리 할 필요
-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 관련
 -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실적' 등 통계지표를 관리 할 필요
- 다만, 아래정책은 정책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용어 정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지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 용어 정의 추가 관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 관련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 관련

5. 평가의견 : '실질평가 대상'

- 동 법령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 등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질평가 요청

4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279호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명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법무부등 관계부처 및 시·도 등(35개)		
		협의기간	2008.9.30 부터 2008.10.10까지(11일간)		
	입법예고	2008.10.14.부터 2008.11.7.까지(25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개정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이번 개정내용은 현재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의 명문화,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 안전장치 부착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농기계 보유현황, 임대사업 현황, 농기계 검사·검정 실적, 안전사고 발생현황은 통계를 기반할 필요가 있으나 통계가 기 구비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개발·개선은 불필요함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정책1> 농업기계 임대사업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농업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 제고등을 통한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함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
- 추진방향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 세부내용
(당초)
-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 하였음
(변경)
- 농업기계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지원 및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임대사업의 지원·육성으로 임대사업 활성화가 기대됨

<정책2>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를 일원화 시켜 제조업체의 편의를 도모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9조
- 세부내용
(당초)
-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농림부령)에 의한 “검정”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의 성능, 안전성 등에 관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검사”와 “검정” 을 “검정”으로 일원화 <p>※ 제조업체가 희망할 경우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하여 시험의뢰함(시제품 1개 모델에 대해서만 시험 실시)</p>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평가 제도 일원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조업체의 불편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 정책3 >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제도</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 등 농기계 사용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계로 인한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 ○ 세부내용 (당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확인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 -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개조한 경우 시장·군수 등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나, 조사제도가 없어 실효성이 미흡함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통중인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 개조·변경 여부를 조사하고, 안전장치를 임의개조·변경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치 부착확인 의무화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크게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통계지표 1> 농업기계 보유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주요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보급율 파악 ○ 정보출처 : 지방자치단체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통계로 지정(승인번호 : 일반통계 11410, '75.7.29) 되어 있으며, 지자체가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행정조사 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집계 분석·관리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개발은 불필요 - 조사방법 : 읍·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p><통계지표 2> 농업기계 임대사업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임대사업 시행 시·군 내역, 사업비 지원실적, 임대농기계 구입실적, 임대사업 추진실적 등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 ○ 정보출처 : 지방자치단체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매년 농식품부에서 작성 시달하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식품부 훈령)에 의거 임대사업 시행 시·군에서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가 집계 분석·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개발은 불필요 - 조사방법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시기 : 연 2회(반기별) <p><통계지표 3> 농업기계 검사·검정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농업기계 검사·검정실적을 파악 ○ 정보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
--------------------------------------	--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농업기계 검사·검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매월 검사·검정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년 “농업기계 시험평가 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개발은 불필요</p> <p><통계지표 4>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실적</p> <p>○ 구비여부 : 구비</p> <p>○ 유 용 성 :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장치 부착 농기계 등 파악</p> <p>○ 정보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협중앙회</p> <p>○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 검사·검정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안전사고 발생현황을 정기적(3년 주기) 으로 조사·분석하고 있으며 - 농협중앙회에서 “농기계 종합공제” 제도를 운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음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해당 없음”</p>				
<p>작성자</p>	<p>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p>	<p>부서명 농생명산업팀</p>	<p>직급 ○○</p>	<p>성명 ○○○</p>	<p>전화번호 -</p>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5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 관리번호 2008 - 956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 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 개정안
소관기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농생명산업팀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검사 및 검정제도, 농기계안전장치 부착제도)

II. 종합 평가의견 : “사용권고”

-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지표에 동의
 ○ 다만, ‘농가 호당 경지면적’, ‘농작업 기계화율’ 등 아래 통계지표를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하도록 사용권고함
- 동 제도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구비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발/개선은 불필요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농기계 규모화 및 농기계 임대 수요 기초 현황 파악	• 농기계보유현황	기종별 보유대수 등	농기계보유상황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기계보유농가 및 대수	영농형태별, 전·겸 업별, 연령별, 농사 경력별농가수 등	농업총조사 (통계청)
	• 농가호당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등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 경과년수별 농기계보유현황	경과년수별 보유 대수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및 지원· 육성	• 농기계임대사업현황	대상농기구수, 임대 농가수, 이용실적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농작업기계화율	주요농작업별 기계 화 면적 등	농림수산식품부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기계별 평균 이용면적 및 작업일수	기종별·규격별 평균작업일수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 성과 평가	• 농업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 집약도 등	농림수산식품부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 (대농구비)	대농구 감가상각비, 대농구임차료 등	농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 농가부채현황(용도별:농업용)	농업용사용부채 등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우량 농기계의 보급	• 농기계 검사·검정실적	연도별 기종별 합격 불합격 건수 등	농업기계시험평가연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실적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실적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일부 지표 추가 제시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정보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정보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통계개선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해당없음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해당없음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해당없음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 않는가?	해당없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통 계 청 장

⑥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956	입법예고기간	2008. 10.14. ~ 11. 7.	
법령명	농업기계화촉진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책(제도)명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농기계안전장치 부착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기계 보유현황조사 등 부분적인 통계가 필요하나, - 농기계 보유량 조사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통계로 지정,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행정조사하고 있음(승인번호 : 일반통계 11,410 '75. 7.29) ○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종전까지 시행해오던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명문화, 농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의 일원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하는 정책이 아님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농생명산업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의 목적

-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에 이바지

□ 법령주요내용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임대 및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연구 개발 및 검사에 관한 사항 등
-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확대 되는 등 농업여건 변화 추세에 맞추어 농업기계범위 확대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하여 임대사업 활성화
- 농업기계시험·평가 제도를 검정제도로 일원화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안 제8조)

- (현행)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다소 미흡
- (변경) 농업기계 공동이용 조항에 임대사업을 명문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및 인력확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농업기계 임대사업

- 사업목적

-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농가 중심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 구입비 부담 경감 및 이용률 제고 유도
- 시장·군수가 국고 및 지방비를 활용하여 임대농기계를 수입한 후, 농가에게 임대(대부분 1일 단위로 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은 '03년 시범사업을 거쳐 '04년부터 추진
- 사업 주관기관 변경 : ('03년) 지역농협 → ('04년 이후) 시·군
- 사업단가
 - ('03년~'05년) 2.5억원/개소 → ('06년) 3억원 → ('07년) 5억원
 - 국고지원을 : ('03년~'04년) 30% → ('05년 이후) 50%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안 제9조 및 제10조)**

- (현행) 농업기계에 대한 시험평가는 동 법령에 의한 “검사”와 「농촌진흥청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에 의한 “검정”으로 이원화
- (변경) “검사”와 “검정”을 “검정”으로 일원화

□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안 제12조)**

구분	현행	변경
안전장치부착	트랙터 등 9개 기종에 대하여 11개의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안전장치 부착 확인 의무화
확인제도	정부지원 농업기계 중심으로만 안전장치 확인 * 현금으로 판매하는 저가·저품질 외국산 농업기계는 확인이 어려움	유통중인 농업기계 대상으로 안전장치 부착 및 임의개조·변경 여부 조사

□ **기타사항**

- 용어의 정의 추가(안 제2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안 제5조 제6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을 구체화 하고, 사후봉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기술인력 기준을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아닌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완화(안 제11조)

4. 필요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농업기계 임대사업 명문화, 활성화 촉진근거 마련 관련

-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육성 및 향후 농기계 임대 수요 예측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농기계 규모화 및 농기계 임대 수요 기초 현황 파악	• 농기계보유현황	기종별 보유대수 등	농기계보유상황보고 (농림수산식품부)
	• 농기계보유농가 및 대수	영농형태별, 전·겸 업별, 연령별, 농사 경력별농가수 등	농업총조사 (통계청)
	• 농가호당 경지면적	호당 경지면적 등	경지면적조사 (통계청)
	• 경과년수별 농기계보유현황	경과년수별 보유 대수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체계적인 농기계 임대 사업 추진 및 지원· 육성	• 농기계임대사업현황	대상농기구수, 임대 농가수, 이용실적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 농작업기계화율	주요농작업별 기계 화 면적 등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기계별 평균 이용면적 및 작업일수	기종별·규격별 평균작업일수 등	행정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 임대 사업 성과 평가	• 농업생산성	노동생산성, 노동 집약도 등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 (대농구비)	대농구 감가상각비, 대농구임차료 등	농산물생산비조사 (통계청)
	• 농가부채현황(용도별:농업용)	농업용사용부채 등	농가경제조사 (통계청)

□ 농업기계 검사 및 검정제도 일원화 관련

- 우량 농기계의 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계 성능, 안전성 등
에 관한 품질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 할 필요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우량 농기계의 보급	• 농기계 검사·검정실적	연도별, 기종별 합격/불합격 건수 등	농업기계시험평가연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실효성이 미흡한 안전장치 부착제도 강화 관련**

- 농업기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 할 필요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농업인의 피해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실적 	계약건수, 사고건수 등	행정자료 (농협중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실적 	기종별 부착 건수 등	행정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다만, 아래정책은 정책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용어 정의 추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지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 용어 정의 추가 관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조정 및 시행계획수립 조항 삭제 관련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내용 구체화 관련

□ **통계지표 구비여부**

- 상술한 통계지표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상 '통계지표'는 국가승인통계는 물론,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작성 집계하여 신뢰성을 갖춘 내부 행정자료를 포함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소관기관과의 협의내역**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10.23. (실질평가 면제로 요청)
- 예비평가결과 통보 : 2008. 10. 24.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10. 27.
- 통계지표에 대한 협의(e-mail, 담당서기관) : 2008. 11. 3. ~ 11. 4.

□ 통계지표 관련

- (소관부처 의견) 농림수산식품부는 ①농업기계보유현황, ②농기계 임대사업현황, ③농기계 검사·검정 실적, ④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⑤농기계 종합공제 가입실적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을 제시
- (검토 의견)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지표의 필요성에 동의 하며,
 - 다만, 동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아래의 통계지표를 추가 관리할 필요

추가 관리할 통계지표	구비여부	출처
• 농기계보유농가 및 대수	기구비	• 농업총조사
• 농가 호당 경지면적	"	• 농업총조사
• 경과년수별 농기계보유 현황	"	• 행정자료
• 농작업 기계화율	"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농기계별 평균 이용면적 및 작업일수	"	• 행정자료
• 농업생산성	"	•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농산물생산비조사 결과(대농구비)	"	• 농산물생산비조사
• 농가부채현황(용도별:농업용)	"	• 농가경제조사
•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실적	"	• 행정자료

6.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 평가결과 : “사용권고”

-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지표에 동의
 - 다만, ‘농가 호당 경지면적’, ‘농작업 기계화율’ 등 상기 통계지표를 동 제도의 원활한 추진에 활용하도록 사용권고함
- 동 제도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구비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개발/개선은 불필요

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제2008-40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	식품산업진흥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식품산업 육성·진흥 정책 (전문인력 양성정책, 교류협력증진 장려정책, 식품명인 지정 제도, 전통식품 식문화세계화정책, 식품산업 표준인증제도 등)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식품산업정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식품산업정책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		
		협의기간	2008.4.9.부터 2008.4.19.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4.21.부터 2008.5.10.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공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 개발/개선이 필요함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1>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p> <p>□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식품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11조 ○ 추진방향 : 양성기관 지정 기준, 지정절차·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분야, 지원 가능한 경비 등 제시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식품관련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식품관련 법인·학원 등 - 교육훈련 분야 : 식품 제조·가공·조리기술, 품질·영양·위생관리,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응 훈련 등 - 경비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시설비, 조사·연구비, 국내외 연수비 등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전문능력 배양시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p><정책2>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설립 제도</p> <p>□ 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설립으로 식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추진방향 : 사업자단체 설립에 관한 사항, 사업자단체 실시 가능 사업 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조건 등 - 사업자단체의 실시 사업 : 경쟁력 제고 및 회원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식품·농업간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등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분별한 설립인가 신청 예방, 사업자단체 회원간의 효율적인 발전 도모 <p><정책3> 교류협력증진 장려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소비지·산지 협력체계 구축 □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추진방향 : 교류협력사업 대상, 지원대상 등 제시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협력사업 대상 : 식품사업자와 농업 생산자간의 계약생산·공급사업, 원료·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세미나·협의회 등 홍보사업 등 - 교류협력사업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등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p><정책4> 식품명인지정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우리 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4~22조 ○ 추진방향 : 식품명인 지정대상·자격, 지정절차·해제, 명인식품의 표시 등 제시
--	---

○ 세부내용

- 명인 지정 분야 : 전통식품, 일반식품 등
- 명인의 자격 : 당해 식품 분야에 20년이상 종사 등
- 명인 지정시 평가사항 :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및 우수성, 기능보유자의 활동상황 등
- 명인식품의 표시, 활동상황 보고 등
- 경비지원 : 시설 및 원료 구매자금,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연구·교육, 복원·전수시설, 도서발간 등

□ 기대효과

- 우수식품을 계승·발전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수준 향상

<정책5> 산지가공산업 육성 정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산지가공산업 육성으로 농산물 가공품 및 가공업자의 발전을 도모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 추진방향 : 산지가공산업 지원 사항, 사업계획서 승인에 관한 사항 등 제시
-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연구개발·교육, 홍보사업, 공동판매망 개발,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 사업서계획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도모

<정책6> 전통식품·식문화 세계화 정책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7~18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 추진방향 : 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지원대상자, 지원사업 등 제시
- 세부내용
 - 지원대상자 : 관계법인·단체,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식품명인 등
 - 지원대상사업 : 교육·연구·홍보사업, 해외에 음식점·식품판매점·체험관 설치 사업,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 참가사업 등

□ 기대효과

- 전통식품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 해외진출 도모

<정책7> 우수식품인증 제도

□ 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

□ 정책내용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0~24조, 동법 시행령 제27~36조
- 추진방향 :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등에 대해 품질인증 품목 및 기준,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등 제시
- 세부내용
 - 국제규격화, 대상품목(전통성, 대중성, 시장경쟁력 등)
 -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방법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정기심사, 표시 등
 - 우수식품인증기관 : 상설전담조직, 인증심사원 및 검사장비 보유, 인증심사원 자격 등

□ 기대효과

- 식품의 표준화, 전문기관에서의 인증으로 우수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식품품질 및 식생활 향상에 기여

	<p><정책8>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 정책</p> <p>□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 확대로 생산자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 증진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9~40조 ○ 추진방향 : 우수식재료 대상,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 대상, 지원사업 등 제시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식재료 : 품질인증 농산물, 우수농산물, 지리적표시·친환경인증 농산물 등 - 지원대상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식품 제조·유통업체, 농산물 전처리·가공업체 등 - 지원사업 : 우수식재료 구매·제공, 공급체계 구축 등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식재료 공급 및 소비 활성화로 식품품질 및 식생활 향상에 기여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통계지표1> 식품제조업·식품도소매업·외식업의 사업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식품산업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식품산업 육성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정보출처 : KOSIS(제조업통계, 도소매업통계 등)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 <p>* 정책(제도)별 통계지표 활용처</p> <p><정책1> 전문인력양성 : 식품분야 및 영세업체 종사자수 <정책4> 식품명인지정 : 전통식품 등 제조업체 종사자수</p>

<정책6> 전통식품 식문화 세계화 정책 : 전통식품 제조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통계지표2> 농산물 생산량, 농식품 수출입 현황

- 구비여부 : 구비
- 유 용 성 : 농식품 국내 생산량 및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유통량 등 수급 현황 파악
- 정보출처 : KOSIS(작물·가축·임산물·어업생산통계 등)
KATI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시스템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

*** 정책(제도)별 통계지표 활용처**

<정책5> 산지가공산업육성 : 농산물 생산량, 신선·가공식품 수출입 현황

<정책6> 전통식품 식문화 세계화 정책 : 농식품 수출 현황

<통계지표3> 전문기관 양성인력 현황, 식품명인 현황, 우수식품인증 현황

- 구비여부 : 미구비
- 유 용 성 : 정책의 수요, 성과, 활용정도 등 파악
- 정보출처 : 실적 보고자료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정책(제도) 시행 이후 실적자료로 집계

*** 관련 정책(제도)**

<정책1> 전문인력양성, <정책2> 식품산업사업자단체설립,
<정책4> 식품명인지정, <정책7> 우수식품인증

<통계지표4>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 구비여부 : 미구비
- 유 용 성 : 국산·수입산 농산물의 구입량, 구입액 등을 파악하여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현황 분석
- 정보출처 : -

	<p>○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식품산업현황조사 실시계획</p> <p>* 관련 정책(제도)</p> <p><정책2> 식품산업사업자단체설립, <정책5> 산지가공산업육성</p> <p><통계지표5> 산지 농산물 계약거래 실태 현황</p> <p>○ 구비여부 : 미구비</p> <p>○ 유 용 성 : 산지 계약거래 규모 및 금액 등을 파악하여 소비지·산지 협력관계 파악</p> <p>○ 정보출처 : -</p> <p>○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식품산업현황조사 실시계획</p> <p>* 관련 정책(제도) : <정책3> 교류협력증진장려</p> <p><통계지표6> 우수식품 소비실태</p> <p>○ 구비여부 : 미구비</p> <p>○ 유 용 성 : 품질인증 농산물 등 우수식품 구입현황 등을 파악하여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 및 식생활 개선에 활용</p> <p>○ 정보출처 : -</p> <p>○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식품산업현황조사 실시계획</p> <p>* 관련 정책(제도)</p> <p><정책7> 우수식품인증 <정책8> 우수식재료사용촉진</p>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개선 계획> 식품산업 통계조사</p> <p>○ 조사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여러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식품산업 관련 통계 수집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food- chain 파악, 농업과 식품의 연계 현황 분석 <p>○ 조사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식약청, 한국은행 등 통계 중 식품관련 부분 - 식품제조업체, 식품도소매업체, 외식업체, 가구(표본조사) <p>○ 조사사항</p> <p>(식품산업 관련 통계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농식품 생산량 및 수출입 현황 - 가구당 식품 소비량, 식품 공급량 - 농식품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 해외 식품산업관련 통계 등 <p>* 관련 정책(제도)</p> <p><정책1> 전문인력양성, <정책4> 식품명인지정, <정책5> 산지가공산업육성, <정책6> 전통식품·식문화세계화 (표본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수입산별 구입량, 구입액 -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액 - 산지계약거래 여부, 거래규모, 거래액 - 해외진출 여부, 진출국가, 사업장규모 - 품질인증 등 우수식품 소비량, 의식수준 등 <p>* 관련 정책(제도)</p> <p><정책2> 사업자단체설립, <정책3> 교류협력증진, <정책5> 산지가공산업육성, <정책6> 전통식품·식문화세계화, <정책7> 우수식품인증, <정책8> 우수식재료사용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주기 : 연1회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수립 : '08. 4월 - 용역업체 선정 : '08. 5월 - 자료수집, 표본설계·조사·집계 : '08. 12월 <p>※ 식품산업현황조사 중 표본조사 부분은 시험조사 단계 · '08년 조사결과는 미공표 계획이나, 향후 통계청 승인을 받아 활용할 예정</p> <p>※ <붙임> 식품산업통계조사 추진계획 참고</p>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붙임>

2008 식품산업통계조사 추진계획

1. 추진목적

-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가공을 통해 최종 소비까지 이어지는 'food-chain'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국내외 식품산업 동향 및 농업과 식품산업 간 상호 연계 현황 분석
 - '07년 식품산업현황조사에 이은 자료 축적 및 미비점 보완
- ※ 추진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황

- 현재 식품과 관련된 통계는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있음
 - 통계청 제조업통계조사(식품제조업), 도소매업통계조사(음식점업) 등
 - 식약청 식품제조가공업체생산실적, 식품위생업소실적 등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소비자동향 중 식품부분 일부
 - 농림부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현황, 채소·과실류 가공현황조사 등
 - 그 외 각종 협회와 단체 등에서 비승인 통계자료 생산
- 유통공사·한식연을 주축으로 '07년 식품산업현황조사 실시
 - 기존 작성되고 있는 통계 중 식품관련 부분 발체·수집
- * 「식품통계」: 식품·외식산업 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생산액, 가구당 식품소비지출, 식품기업 경영지표, 식품 수출입, 식품자급률 등

- 통계청 및 한은 통계의 원시자료와 각종 협회·단체의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식품산업 동향 심층 분석
 - * 「식품산업동향」: 소득수준별 식품소비지출, 식품·외식산업의 투입·산출 구조, 패밀리레스토랑·패스트푸드·할인점·백화점 등 매출 현황
- 기존 통계의 미비 및 보완사항에 대해 신규 표본조사 추진
 - *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도소매), 외식업체의 구매·생산·판매 및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조사

3. 문제점

- 식품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통계 생산 및 관리시스템 미흡
 - 각 통계별 목적과 방법이 다양하여 연관성이 부족하고, 자료간 불일치로 신뢰성에 한계
 - 'food-chain' 과정상 일부가 누락되는 등 농업과의 연계 파악이 어려워 식품산업 육성정책 참고자료 활용에 제한
- '07년 식품산업현황 표본조사 실시 결과 보완점 노출
 - 조사기준이 되는 모집단을 대한상공회의소, 음식점중앙회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설계
 - 통계청 제조업·도소매업통계조사 기업체 리스트를 활용해야 전국을 대표하는 보다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음
 - 조사품목이 방대(농산물 62개, 가공식품 296개)하고 조사표가 복잡하여 응답자의 거부감 유발
 - 수입산 식재료에 대해 응답이 미온적이거나 무응답인 경우 다소 발생

4. 추진계획 및 일정

< 기본 방향 >

- ◇ 「2008 식품통계」, 「2008 식품산업동향」 발간
 - 기존 조사항목은 지속 자료 축적, 기타 해외사례 등 보완
- ◇ 「2008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표본조사)」 추진
 - 식품제조·유통·외식업체('07) 및 가계부문('08 신규)의 식재료 조달 및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조사
- ◇ 식품정보 DB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추진
 - 자료관리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식품정보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식품통계」 및 「식품산업동향」 발간

- 각종 식품산업 관련 통계자료 수집
 - 제조업·도소매업통계조사, 산업생산통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업 경영분석, 무역통계, 식품수급표, 각종 협회자료 취합 등
- 산업연관표, 가계조사 등 원시자료 가공 분석
-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식품산업 통계 비교 등 해외사례 보완

□ 「식품산업 분야별 현황조사(표본조사)」 추진

- 분야별 조사내용
 - 식품제조업체 : 품목별 원산지별 구매현황, 매출액, 종사자수, 출하처별 판매 비중 등
 - 식품도소매업체 : 품목별 구매·출하현황, 배송실태, 계약거래 등
 - 외식업체 : 식재료 구입현황, 해외진출현황, CK 설치·운영 실태 등

- 도시가계('08 신규) : 품목별 구입실태, 친환경농산물 구입현황, 외식 부문 소비자 선호도 등

○ 과학적인 표본설계 및 표본대상의 응답률 제고 방안 필요

- 통계청(통계협력과, 전산개발과)과 모집단 확보에 대한 협의 중
 - '제조업통계조사' 중 음식료품 제조업체
 - '도소매업통계조사' 중 음식료품 도소매업체 및 음식점업체
 - '가계조사'의 표본가구 목록 요청
- 기업체 및 가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강구
 - 조사품목 축소 또는 그룹화 등으로 조사표 단순화
 - 조사취지 설득 및 수집된 자료를 통계집계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특히, 외식업체 수입산 사용 관련 항목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사업단) 주관(농안기금 위탁사업비, 200백만원)

- 용역기간 : '08. 4월 ~ 12월 (9개월)
- 경쟁입찰방식으로 전문 리서치기관 선정
 - 관계전문가 5인 이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예산범위 내 제안서 종합평가(제안서 80% + 가격 20%) 결과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식품정보 DB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 용역 추진

- DB 구축 분야 및 서비스 방법, 시스템 활용 부분 등 DB 구축을 위한 사전준비 및 분석 작업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시달 : 4월
-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 4 ~ 5월 (입찰공고 4월)
- 통계 수집 및 가공 : 4 ~ 9월
- 표본설계 및 조사 : 5 ~ 10월
- DB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 : 5 ~ 10월
- 결과정리 및 최종결과물 발간 : 10 ~ 12월

< 월별 추진계획 >

	4	5	6	7	8	9	10	11	12
○ 기본계획 수립·시달	■								
○ 용역발주 및 업체선정	■	■							
○ 통계 수집·가공	■	■	■	■	■	■			
○ 표본설계		■							
○ 표본조사			■	■	■	■	■		
○ DB 구축을 위한 조사설계		■	■	■	■	■	■		
○ 결과정리							■	■	
○ 최종결과물 발간								■	■

2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8 - 136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정책(제도)명	식품산업육성·진흥 정책		
소관기관/부서	농림수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팀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개발/개선합의]			
<input type="checkbox"/> 귀 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해외한식당 현황 통계지표 작성 시 연구사업을 통한 DB자료 구축과 함께 세계 각국의 한인회 공조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추후 한식세계화 정책과 관련한 통계지표의 구체적인 개발/개선계획을 접수, 이행여부 점검 계획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
식품산업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식품제조업·식품도소매업·외식업의 사업체 현황	-식품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농산물 수급현황 파악	• 농산물 생산량 현황	-식량작물 과실류, 채소류, 수산물 등 생산량	작물통계 가축통계 어업생산통계
농식품 수급현황 파악	• 농식품 수출입 현황	-농식품별 수출입량액 등	수출입통계
전문인력 현황 파악	• 식품산업 전문기관 인력 양성 현황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양성인력 수	실적자료(개발예정)
식품명인 수요파악	• 식품명인 현황	-분야별 식품명인 수	실적자료(개발예정)
우수식품지원현황 파악	• 우수식품인증 현황	-우수식품 인증 건수	실적자료(개발예정)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현황 분석	•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현황	-국산 수입별 구입량 금액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액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소비지와 산지의 협력관계 파악	• 산지농산물 계약거래 실태 현황	-식자재구입실태 -산지계약거래여부 -거래규모, 거래액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우수식재료 사용 현황 파악	• 우수식품 소비실태 현황	-품질인증 등 우수식품 소비량 -식품에 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사항 -외식업체 식재료 이용실태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세계화 추진 및 성과 평가	• 한식당 해외 현황	-해외 한식당 종류별 및 규모별 진출 현황	해외한식당실태조사 등* (개발예정)
	•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현황	-해외진출 외식업체 수	
	• 인증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인증한식당 수 -인증한식당 매출액	

* 우리청 검토의견에 대하여 중간협의 공문을 통해 농림수산물부와 동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 추가 제시한 통계지표의 개발/개선계획 제출('08. 6. 9.)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통계개발/개선 필요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통계개선 / 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 당 없 음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통 계 청 장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4.21. ~ 2008. 5.10.	
2008 - 136			
법령명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정책(제도)명	식품산업육성·진흥 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식품산업의 진흥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식품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에 관한 통계 개발/개선이 필요함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식품산업정책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법령의 목적

-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관련 법체계(농산물가공육성법과의 관계)

식품산업진흥법	농산물가공육성법
- 식품명인지정(보완)	- 동법 제6조(전통식품산업의 육성 등), 시행령 제14조~16조, 시행규칙 제12조~17조
- 산지가공산업 육성(보완)	- 동법 제5조(산지가공산업의 육성 등),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4조~8조
- 전통식품·식문화 세계화(보완)	- 동법 시행령 제17조(전통외식산업의 지원 등)
- 우수식품인증(보완)	- 동법 제13조(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 시행령 제22~30조, 시행규칙 제31조~48조
-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신설) -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신설) - 교류협력증진 장려(신설) -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신설)	-

□ 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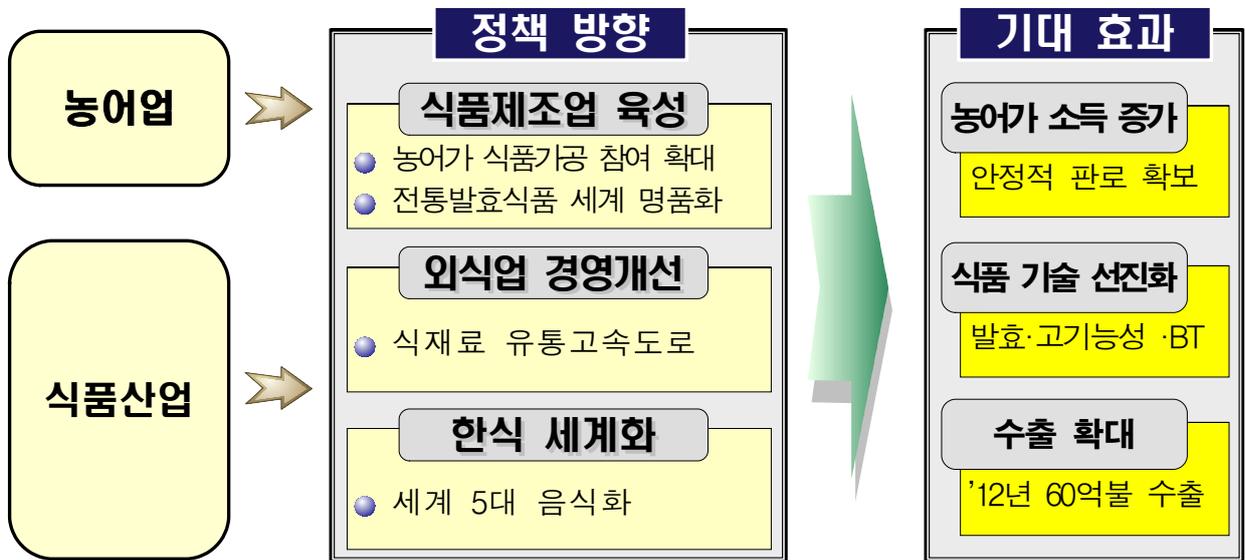
○ 「식품산업진흥법」 제정('07.12월 제정, '08. 6월 시행)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

⇒ 시행령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식품산업육성정책 추진체계 및 효과



□ 세부정책별 주요 내용

정책 1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 신설

○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양성기관에 대해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전문인력 양성기관 : 식품관련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식품 관련 법인·학원 등
- 교육훈련 분야 : 식품 제조·가공·조리기술, 품질·영양·위생 관리, 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하는 외국인에 대한 적응 훈련 등
- 경비 지원 :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시설비, 조사·연구비, 국내외 연수비 등

<기대효과>

- 식품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모으고 전문능력 배양시켜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정책 2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 : 신설

○ 식품과 농업간의 연계 강화

-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 전국적인 조직으로서의 조건 등
- 사업자단체의 실시 사업 : 경쟁력 제고 및 회원 상호간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 식품·농업 간 연계강화를 위한 사업 등

<기대효과>

- 무분별한 설립인가 신청 예방, 사업자단체 회원 간의 효율적인 발전 도모

정책 3 교류협력증진 장려 : 신설

○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가 식재료의 계약생산·계약공급 등 교류협력사업 장려

- 교류협력사업 대상 : 식품사업자와 농업 생산자간의 계약생산·공급사업, 원료·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세미나·협의회 등 홍보사업 등
- 교류협력사업 지원대상 : 식품사업자,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공공기관 등

<기대효과>

- 식품산업의 원활한 원료공급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 4 식품명인지정 : 보완

○ 우수한 우리식품을 계승·발전할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

- 명인 지정 분야 : 전통식품, 일반식품 등

- 명인의 자격 : 당해 식품 분야에 20년이상 종사 등
- 명인 지정 시 평가사항 : 제조·가공·조리의 전통성 및 우수성, 기능보유자의 활동상황 등
- 명인식품의 표시, 활동상황 보고 등
- 경비지원 : 시설 및 원료 구매자금,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연구·교육, 복원·전수시설, 도서발간 등

<기대효과>

- 우수식품을 계승·발전하고, 소비자의 식생활 수준 향상

정책 5 산지 가공 산업 육성 : 보완

-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등 장려
 - 지원대상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연구개발·교육, 홍보사업, 공동판매망 개발,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농산물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도모

정책 6 전통식품·식문화 세계화 : 보완

- 전통식품 세계화, 한식당 해외진출 및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자 : 관계법인·단체, 해외진출을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 식품명인 등
 - 지원대상사업 : 교육·연구·홍보사업, 해외에 음식점·식품판매점·체험관 설치 사업, 국내외 식품박람회 등 참가사업 등

<기대효과>

- 전통식품 우수성을 전 세계 홍보, 해외진출 도모

정책 7 우수식품인증 : 보완

- 식품산업의 표준화 촉진, 우수식품인증기관 지정
 - 국제규격화, 대상품목(전통성, 대중성, 시장경쟁력 등)
 -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품질인증 절차, 품질인증 표시방법
 - 유기가공식품 인증 : 인증 유효기간, 정기심사, 표시 등
 - 우수식품인증기관 : 상설전담조직, 인증심사원 및 검사장비 보유, 인증심사원 자격 등

<기대효과>

- 식품의 표준화, 전문기관에서의 인증으로 우수식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식품품질 및 식생활 향상에 기여

정책 8 우수식재료 사용 촉진 : 신설

- 품질인증 농산물, 우수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 우수식재료 : 품질인증 농산물, 우수농산물, 지리적표시·친환경인증 농산물 등
 - 지원대상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식품 제조·유통업체, 농산물 전처리·가공업체 등
 - 지원사업 : 우수식재료 구매·제공, 공급체계 구축 등

<기대효과>

- 우수 식재료 공급 및 소비 활성화로 식품품질 및 식생활 향상에 기여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식품관련 산업에 대한 업종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식품도매업·외식업 등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식품산업 규모관련 통계지표가 필요

- 국내 농산물 유통량 등 수급현황 파악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량, 농식품 수출입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식품산업 관련 업종별 및 직무별 현황 등 식품산업 인력구조를 전반적으로 파악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식품산업 전문기관 인력 양성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고품질 식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증 농산물의 식재료의 관리 및 우수식재료 사용 현황 파악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식품명인현황, 우수식품인증현황, 우수식품 소비 실태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현황 분석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현황, 산지 농산물 계약거래 실태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한식(韓食) 세계화 정책 방향 및 목표설정,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한 현황 등 파악 필요
 - 이를 위해서는 한식당 해외 현황,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현황, 인증 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통계지표가 필요

□ 통계지표 구비 여부

- 상술한 통계지표는 구비하였거나, 동 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출될 수 있는 지표는 동 정책 추진실적으로 구비가능하며, '한식당해의 현황',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현황', '인증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통계지표는 향후 관련조사의 개발/개선 필요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
식품산업의 규모와 현황 파악	• 식품제조업 · 식품도소매업 · 외식업의 사업체 현황	-식품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종사자수 등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통계조사
농산물 수급현황 파악	• 농산물 생산량 현황	-식용작물, 과실류, 채소류, 수산물 등 생산량	작물통계 가축통계 어업생산통계
농식품 수급현황 파악	• 농식품 수출입 현황	-농식품별 수출입량액 등	수출입통계
전문인력 현황 파악	• 식품산업 전문기관 인력 양성 현황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양성인력 수	실적자료(개발예정)
식품명인 수요 파악	• 식품명인 현황	-분야별 식품명인 수	실적자료(개발예정)
우수식품지원현황 파악	• 우수식품인증현황	-우수식품 인증 건수	실적자료(개발예정)
농업과 식품산업간 연계 현황 분석	•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현황	-국산 수입산별 구입량 금액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액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소비지와 산지의 협력관계 파악	• 산지농산물 계약거래 실태 현황	-식자재구입실태 -산지계약거래여부 -거래규모, 거래액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우수식재료 사용 현황 파악	• 우수식품 소비실태 현황	-품질인증 등 우수식품 소비량 -식품에 관한 의식 수준에 관한 사항 -외식업체 식재료 이용실태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예정)
세계화 추진 및 성과 평가	• 한식당 해외 현황	-해외 한식당 종류별 및 규모별 진출 현황	해외한식당실태조사 등* (개발예정)
	•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현황	-해외진출 외식업체 수	
	• 인증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인증한식당 수 -인증한식당 매출액	

* 우리청 검토의견에 대하여 중간협의 공문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동 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 추가 제시한 통계지표의 개발/개선계획 제출('08. 6. 9.)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중간협의 공문을 통해 추가 통계지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 부터 동 통계지표 구비를 위한 “개발/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

□ 통계지표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규모 관련 지표 및 농산물 생산량, 농식품 수출입현황, 한식당 해외현황, 국내외식기업의 해외 진출현황 등 국내외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 필요성을 제시

※ 당초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한 통계지표 외에 ①한식당 해외 현황, ②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③인증 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통계지표 추가를 제시

⇒ 부처 협의를 통해 동 지표들을 작성기로 합의하였음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식품산업통계조사 관련 : 실질평가요청 시 제출

- (소관부처 의견)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통계조사를 개발/개선할 계획

식품산업통계조사 개발/개선 상세 계획

◆ 조사대상

- 통계청, 식약청, 한국은행 등 통계 중 식품관련 부분
- 식품제조업체, 식품도소매업체, 외식업체, 가구(표본조사)

◆ 조사사항

(식품산업 관련 통계 수집)

- 식품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 농식품 생산량 및 수출입 현황
- 가구당 식품 소비량, 식품 공급량

- 농식품 생산자·소비자 물가지수
- 해외 식품산업관련 통계 등

(표본조사)

- 국산·수입산별 구입량, 구입액
- 판매처별 판매량, 판매액
- 산지계약거래 여부, 거래규모, 거래액
- 해외진출 여부, 진출국가, 사업장규모
- 품질인증 등 우수식품 소비량, 의식수준 등

◆ 작성주기 : 매년

- 2007년 처음 작성 검토 중(2008년 자체 실시 후 국가승인통계 협의 예정)

◆ 추진일정

- 통계수집 및 가공 → 자료조사 → DB 구축 → 국가승인 통계여부 협의

- (검토 의견) 동 개발/개선 계획의 신뢰성, 조사사항, 조사주기,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한식세계화 정책 관련 : 부처협의로 추가제출('08. 6. 9.)

- (소관부처 의견)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청 추가 제시 통계지표 필요성에 동의하여 한식세계화 관련 통계지표를 개발/개선할 계획(붙임 참조)

한식세계화 정책 관련 통계 개발/개선 상세 계획

◆ 해외한식당 실태조사(해외한식당현황)

- '07년 일본 내 한식당실태조사(완료)
- '08년 미국, 중국 내 한식당 실태조사
 - 한식당실태조사 및 DB구축
 - 경영주 인터뷰 등
- '09년 EU, 동남아 내 한식당 실태조사
 - '09년 EU, 동남아 내 한식당 수 파악 등
- '12년 한식당 실태조사 정비(일본, 중국, 미국, EU, 동남아)
- '13년 한식당 실태조사 정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동유럽, 남미)

- '14년 이후
- 한식당수 변경사항 매년 갱신

◆ 해외진출 국내 외식업체수

- 조사기관 및 주기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연1회 조사(연말 예정)
- 조사방법 : 한국외식연합을 바탕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료를 취합·보완

◆ 인증 한식당 현황 : 실적자료 활용

- '08년 해외 인증 한식당 모델 연구
- '09년 인증제 실시 후 실적자료 집계·활용
- 인증 한식당의 개소 수 및 매출액 파악

- (검토 의견) 동 개발/개선 계획의 신뢰성,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6. 평가의견 :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와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외한식당 현황 통계지표 작성 시 연구사업을 통한 DB자료구축과 함께 세계 각국의 한인회 공조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추후 한식세계화 정책과 관련한 통계지표의 구체적인 개발/개선 계획을 접수, 이행여부 점검 계획

<붙임>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에 대한 협의 의견(통계청)에 따른
한식세계화 관련 통계지표 개발/개선 계획(안)

1. 통계청 협의 의견(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농식품부 선정 통계지표 : 원안승인

- 식품산업 전문기관 인력 양성 현황, 식품명인, 우수식품 현황, 국산 농산물 이용실태 현황, 산지 계약거래 현황 등

추가로 필요한 통계지표(한식 세계화 추진 및 성과평가 관련)

- ① 해외 한식당 현황 : 해외 한식당 종류별 규모별 진출 현황
- ② 국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 해외진출 외식업체수
- ③ 인증 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 인증 한식당 수, 매출액

2. 한식 세계화 지표 개발/개선 계획(안)

1 | 해외 한식당 현황 :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

'07년 일본 내 한식당 실태조사(완료)

- 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외식정보)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조사결과
 - 일본 내 한식당 DB 구축 : 4,421개소
 -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긴키, 추부, 추코쿠, 시코쿠, 규슈 지역 5,164개소 조사
 - DB 구축내용 : 업소명, 주소, 연락처, 대표자 국적, 식당유형, 주요메뉴, 좌석수, 종사원, 영업시간, 주차장여부 등
 - 한식당 자료 수집 방법 : 일본 외식산업 관련 각종 문헌자료, 인터넷 검색,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일본 내 한식당 및 유통관련 기업 관련자, 경영주 면담 등
 - 경영주 인터뷰 : 207개소
 - 경영주 면담내용 : 메뉴 특징, 주요타깃고객, 한식메뉴 표준 레시피 제공에 대한 의견, 교육 필요성 인식 정도, 한국산 원재료 사용 여부 등

'08년 이후는 계획(안)으로 예산 등 여건에 따라 조사시기, 조사국가 등 변경 가능

□ '08년 미국, 중국 내 한식당 실태조사

- 소요예산(안) : 300백만원
- 조사내용(안)
 - 한식당 실태조사 및 DB 구축 : 미국(1,500개소), 중국(2,000개소)
 - 경영주 인터뷰 : 미국(150개소), 중국(150개소)
 - LA 80, 뉴욕 70, 북경 50, 상해 50, 청도 50 이상
 - 일본('07자료 활용), 미국, 중국 진출 가이드북 발간

※ 한식당 실태조사 기초 단계로 일본, 미국, 중국의 한식당수 파악

* 한식당 자료 수집 방법

- '07년 일본 실태조사 방법 토대로 외식산업 관련 자료 검색, 한식당 유통 관련 기업 관련자, 대사관, 한인회 등 다각도로 활용할 계획

□ '09년 EU, 동남아 내 한식당 실태조사

- 소요예산(안) : 400백만원(식품·외식 정보분석 제공 사업)
- 조사내용(안)
 - EU 및 동남아 내 한식당 수 파악
 - EU 및 동남아 내 주요 한식당 실태조사 및 DB 구축
 - 경영주 인터뷰(주요 도시 위주)
 - EU, 동남아 진출 가이드북 발간

※ '10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식품·외식 정보분석 제공 사업 400백만원)

※ '11년 러시아, 동유럽, 남미(식품·외식 정보분석 제공 사업 400백만원)

□ '12년 한식당 실태조사 정비(일본, 중국, 미국, EU, 동남아)

- 소요예산(안) : 400백만원(식품·외식 정보분석 제공 사업)
- 조사내용(안)
 - 일본, 중국, 미국, EU, 동남아 내 한식당 수 파악(변경여부 확인)

- 각국별로 인터뷰를 실시한 업소 중 일부(30~50% 정도 추출) 업소 재면담(그동안의 변화, 나아진 점, 악화된 점 등 파악)

※ '13년 한식당 실태조사 정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러시아, 동유럽, 남미)

□ '14년 이후 : 그동안의 조사채널을 이용, 한식당수 변경사항 매년 갱신

2 | 해외 진출 국내 외식업체수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조사

□ 조사계획(안)

- 조사기관 및 주기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연1회 조사(연말 예정)
- 조사방법 : 한국외식연감을 바탕으로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료를 취합·보완

※ 한국외식연감

- 발행기관 및 주기 : 한국외식정보(주), 1년('06년, '07년판 존재)
- 외식산업 세계화 전략 부분에 해외 진출 외식업체 수록
 - 월간식당, 식품외식경제신문 등 기사 작성을 위해 각 외식업체 출입기자 등이 업체 수시 방문
- 해외진출 국내 외식업체수 현황 : ('06) 54개, ('07) 57개 브랜드 진출
 - BBQ, 투다리, 우래옥, 서라벌, 미스터피자, 용수산, 한스비빔밥, 김가네 김밥, 홍초불닭, 놀부항아리갈비 등

3 | 인증 한식당 현황 : 실적자료 활용

□ '08년 해외 인증 한식당 모델 연구

- 공모를 통해 연구기관을 선정 후 한식당 인증 모델을 개발할 계획('08.12)

□ '09년 인증제 실시 후 실적자료 집계·활용

- '09년 이후 단계적으로 해외 한식당 인증 실시 계획
 - 인증 한식당의 개소수 및 매출액을 파악

6

지식/방송 분야

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다. 전기통신산업법 일부개정안

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149호					
법령명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중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산업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로봇제품 품질인증, 로봇펀드, 로봇랜드 등 진흥사업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로봇산업은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37302호)를 갖추고 있으며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08.3.28 공포)에 통계조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제정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는바, 관련 펀드나 로봇랜드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구비 필요				
소관기관	기관명	지식경제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창의혁신담당관실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로봇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교과부, 재정부, 금융위 등		
		협의기간	2008. 5.23.부터 2008. 6.2.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7. 1.부터 2008. 7.21.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행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로봇산업의 육성정책은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추진됨에 따라 조정매카니즘과 중복투자방지 등이 부족하였던 바, 조정 및 연계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로봇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합리성 및 공익성 확보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5조 내지 제6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 -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통보한 작성 지침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행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경제부장관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소관부처 부문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계획 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시 공고 등(시행령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별 실행계획 수립, 지식경제부장관 작성지침통보·연도별실행계획공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등(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시행 관련 사업에의 출연·용자 행정적 지원 가능 공공기관 등 (시행령 제4조)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기초기반기술이 부족한 우리 로봇산업육성에 있어 범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일원화된 시스템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됨에 따라 로봇선도국에 진입할 토대를 마련하게 됨 <p>< 정책 2. 로봇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로봇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체계 확립 및 산업통계를 확보함으로써, 로봇산업육성 정책의 근거를 마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융합산업인 로봇산업은 미래산업으로 기술혁신과 신규투자가 유망한 신사업이나 명확한 분류체계와 통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봇산업 분류체계 및 통계확보가 필수임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산업분류체계 확립 및 통계확보를 통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상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있어 정밀성과 적시성 확보
-------------------------------------	---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도입근거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7조
- 추진방향
 - 통계작성에 관한 기본법인 「통계법」을 준용하여 지능형로봇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과 산업통계 확보를 위해 매년 지능형로봇산업전반에 걸친 실태조사 실시
- 세부내용
 -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 대상 등(시행령 제5조)
 - 조사사항 등 조사 세부 사항 시행규칙에 위임
 - 조사사항 : 로봇 생산·출하 및 재고, 수입·출입, 로봇 기업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및 경기변동, 산업 설비투자 등(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조사방법 : 타계식, 자계식 및 전자방식(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조사주기 : 매년 실시(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지능형로봇통계협의회 구성(시행규칙 제2조제4항)
 - 통계조사 주관기관의 업무 :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 구축, 간행물 발간, 지능형로봇통계협의회 운영, 보고통계의 종합 및 조사통계의 종합 등(시행규칙 제2조제5항)

□ 기대효과

- 매년 조사실시로 인한 통계의 연속성과 신뢰성 확보
- 로봇법령에 규정됨으로써 응답률 제고를 통한 통계수치의 신뢰성 확보
- 특수목적통계 확보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봇산업정책의 수립 가능

< 정책 3. 품질인증 및 품질보장사업 실시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목적
 - 로봇제품의 상용화에 있어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보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로봇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제품은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안정성, 신뢰성을 위한 인증제도는 물론 품질보증보험 등의 보증제도 불비로 안전 사고의 위험과 분쟁의 소지 존재 - 로봇의 자체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인증제도, 로봇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발생시 보장사업등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과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로봇의 품질, 안전 및 신뢰성 인증제도를 도입,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이용하게 함과 아울러 소비자 및 공급자 모두 이익이 되는 품질보장 사업을 실시하여 로봇보급 촉진에 기여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9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6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S/W, H/W에 대한 품질, 안전 및 성능인증 기준 마련, 이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 임의인증으로 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등 보급·활성화 시책 동시 마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제품의 공공구매를 통한 보급 확산(시행령 제6조)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신청절차, 지정취사유 등 (시행령 제7조) - 품질인증의 대상·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 제8조) - 인증의 신청 절차(시행령 제9조) - 인증제품 생산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시행령 제10조) - 인증표시사항 및 처분기준 등(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2조)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보증사업의 담보범위, 운영자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회계분리 및 책임·비상위험 준비금 적립 등(시행령 제13조) - 품질분쟁조정기관의 업무분장(시행령 제14조) - 품질 인증사업에의 자금지원(시행령 제15조) - 품질인증업무 일부 위임 및 위탁(시행령 제33조)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증제도 및 품질보증보험형태의 품질보증사업 도입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이용할 수 있음 ○ 인증을 거친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품질보증사업을 통해 로봇제품 보급 촉진 <p>< 정책 4. 로봇윤리현장의 보급·확산 추진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부정적 발전방향을 예방하고 기술이 윤리적 방향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인류평화와 로봇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이 획득한 정보의 보안, 로봇의 오용이나,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해 로봇개발자, 로봇제조자, 로봇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이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서 로봇윤리현장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정 절차 및 보급확산 조치에 대해 규정하여 윤리현장 제정의 실질적인 근거를 뒷받침함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18조 ○ 추진방향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경부장관이 현장의 보급·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범국가적으로 현장 보급에 힘을 쓸 것을 규정 - 현장 제정시, 관련부처 뿐 아니라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보편적인 현장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에 포함될 사항(시행령 제16조제1항) - 지식경제부장관의 현장 보급·확산 의무(시행령 제16조제2항) - 제정시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제정 후 공표할 것 등 제정절차 규정(시행령 제16조제3항)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로봇 출현이 예상되는 바, 인간이 지켜야할 윤리적 가치를 인식함으로써 부정적 효과를 미리 방지함 <p>< 정책 5. 지능형로봇투자회사></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펀드를 통해 로봇산업육성사업에 수요자인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함과 아울러 '로봇펀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선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정부 R&D지원외에 로봇수요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간 참여의 '로봇펀드'의 도입이 필요함 <p>□ 정책내용</p>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참여의 로봇펀드 운영으로 로봇수요자 요구사항 파악 및 잠재 수요자 확보 및 정부 및 로봇기업의 R&D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 가능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21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조성 및 운영을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펀드 투자대상사업, 투자회사운영·투자자금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 - 불확실성이 큰 로봇펀드에 대해 투자위험보증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로봇펀드 활성화 도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사업 구체화 (시행령 제17조) - 금융위의 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전 협의 의무 등(시행령 제18조) - 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시행령 제19조) - 자산운영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시행령 제20조)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기관, 자금운용 등(시행령 제21조) - 투자위험보증기관의 업무방법서 작성·제출 의무 등(시행령 제22조) -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시 지능형로봇연구개발에의 투자 의무 등(시행령 제23조) - 투자회사의 자금차입비율(시행령 제24조)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사업 전문투자회사 참여로 기술개발부터 제품 판매까지의 전주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새로운 투자 대상의 적극적 발굴로 인해 로봇산업의 영역이 확대됨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 6. 로봇랜드의 조성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으로 시장형성 초기단계라는 로봇산업의 특성상 선제적 시장창출여부에 따라 리딩 국가가 결정되는바, 대규모 수요창출 공간인 로봇랜드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을 목표로 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 로봇산업은 시장형성 초기 단계로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로봇 제품의 체험·전시를 통해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신상품을 홍보·판매 할 수 있고 기술 개발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타진 등 가능한 복합문화공간(로봇랜드)가 필요함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랜드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선정, 조성실행계획 수립·승인, 로봇랜드 운영 등의 절차 마련 필요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30조 내지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을 주제로 하는 상설전시관, 로봇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로봇놀이시설 등 로봇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 로봇랜드 조성계획 수립 유도 - 로봇랜드 조성에 있어 조성지역 및 주변지역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랜드 조성사업 추진·관리·운영 등 제반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랜드 신청자격 및 조성계획의 주요내용(시행령 제25조) - 로봇랜드 법정시설, 조성실행계획의 주요내용·서류 및 계획변경시 통보사항 등(시행령 제26조) -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대상(시행령 제27조) - 로봇랜드 준공확인, 준공확인 관보 공고, 사용신고서 포함 사항 등(시행령 제28조) - 로봇랜드의 조성·관리·운영 수탁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위탁시 지경부장관에 통보의무(시행령 제29조)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테마파크조성을 통해 로봇제품의 상시 전시 및 체험기회 제공, 인지도 및 구매력 증대를 통해 대규모 수요창출 ○ 로봇기술과 레저문화의 융합을 통한 관광레저문화 허브 구축과 신산업 서비스창출, 고부가가치 산업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p>< 정책 7.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점별 전문연구원을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기관별 산재된 로봇관련 연구역량이 집중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로봇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함 ○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출연연구기관별, 대기업별 국내 로봇 연구 역량의 분산으로 인한 자원낭비 및 연구의 비효율성이 높으므로 국내의 로봇관련 연구 역량을 거점별로 집중화하고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스템 필요
-------------------------------------	--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거점별 전문연구원의 지정을 통해 다양한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로봇연구 인력의 집중 및 규모화 달성 및 국제적 기술강국 도약 토대 마련 ○ 도입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제42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관련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와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거점별 연구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의 지정 - 전문연구원이 로봇분야 원천기술, 핵심기술, 응용기술 개발 및 산업계 기술이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구원 운영을 유도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제외 전문연구원(시행령 제30조) - 전문연구원 지정시 평가기준(시행령 제31조제1항) - 전문연구원 지정시 공고사항(시행령 제31조제2항) - 지정된 전문연구원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의무(시행령 제31조제3항)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내 일부사업으로 산재되어 운영되던 로봇 연구개발 사업 및 관련 인력이 거점별 전문연구원으로 집중화되어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됨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지식경제부	로봇팀	○○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349			
법령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 중재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소관기관	기관명	지식경제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로봇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로봇펀드제도, 로봇랜드 조성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목 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p><input type="checkbox"/> 제정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 로봇 개발 등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통계 작성대상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 품질인증 및 품질보장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 품질인증 대상 및 인증기준, 인증의 신청절차,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대상사업의 구체화,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투자위험 보증사업의 운영, 자산운용 방법 등 ○ 로봇랜드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절차,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준공확인 절차, 로봇랜드의 관리 등 ○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제정(내용) ○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법령의 제정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는바, 관련 로봇펀드나 로봇 랜드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구비 필요</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실질평가 대상</p> <p>○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법령에 포함된 정책 중 <u>로봇산업실태조사, 품질보증사업, 로봇펀드 제도, 로봇랜드 조성정책</u> 등은 통계를 기반으로 관리할 사 항이라고 판단됨</p> <p>-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지표의 구비여부 또는 지표의 개발/ 개선 계획에 대한 <u>실질평가 요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람</u></p> <p>- 다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봇산업통계 및 실태조사는 기 작성되고 있는 <u>‘로봇산업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실질평가 절차는 불필요</u></p> <p>(요청기간 : <u>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u>)</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평가 검토결과] 참조</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07. 01 ~ 2008. 07. 21	
2008 - 349			
법령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국가표준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 · 로봇제품 품질인증제도, 로봇펀드제도, 로봇랜드 조성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법령의 제정으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는바, 관련 펀드나 로봇랜드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구비 필요		
소관기관	기관명	지식경제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로봇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목적 및 제정 사유

□ 법령 목적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

□ 금번 제정이유

◆ 지능형 로봇산업을 미래 국가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범국가적 계획 수립, 로봇수요창출 및 투자촉진 등을 위한 로봇품질인증, 로봇투자회사 설립 및 로봇랜드 등의 정책을 규정하는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이 제정(법률 제9014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지능형 로봇 개발 등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 로봇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
- 각 부처간 연계강화와 시너지제고를 위해서는 로봇산업의 주관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추진

○ 기본계획(지식경제부장관) 및 실행계획(소관기관)의 수립·시행

○ 자금 지원

-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안 제4조)은 사업수행자 등에게 출연·융자 및 행정적 지원

□ 로봇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 로봇산업에 대한 산업분류체계 확립 및 산업통계의 확보(법 제7조)

○ 통계 작성대상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 작성대상 범위 : 로봇산업
- 실태조사대상 :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조사사항, 조사방법, 조사주기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

- 조사사항 : 로봇 생산·출하 및 재고, 수입·출입, 로봇기업 재무구조의 변화, 시장동향 및 경기변동, 산업 설비투자 등(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조사방법 : 타계식, 자계식 및 전자방식(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조사주기 : 매년 실시(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지식경제부에 지능형로봇통계협의회 구성(시행규칙 제2조제4항 : 통계작성 담당자 및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

□ 품질인증 및 품질보장사업 실시

○ 품질인증제도

- 다양한 로봇제품이 상용화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신뢰성, 안전성 등을 확인 할 수 없음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국가인증제도 마련이 필요
- 특히, 서비스로봇의 경우는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신체 접촉에 의한 사고 발생 개연성이 큰바 안전성, 신뢰성 인증 제도가 필수적 임
- 로봇 S/W, H/W에 대한 품질·안전 및 성능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품질 인증제도 운영

○ 품질인증제도는 안전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는 있는 제도이나 기술적인 인증제도만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

- 산업의 특성상 로봇기술은 융복합기술로 이루어진 제품이며,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며 상호작용함이 이루어지는 바,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 필요

-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인증제품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안 제6조 : 정부나 지자체 등)에 대하여 인증제품 구매 요청
-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지정기준, 지정시 고시사항,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7조)
- 품질인증 대상(제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반자율 또는 완전 자율로 인간 및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및 인증기준(안 제8조)
- 인증의 신청절차(안 제9조), 인증로봇제품 생산자의 공장 등의 출입·검사 사유(안 제10조), 인증표시사항(안 제11조)
- 인증 표시의 제거, 인증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안 제12조)
- 품질보장사업의 담보범위(안 제13조) : 해당 로봇제품의 가액이내 등
 - 품질보장사업자는 운영자금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회계분리,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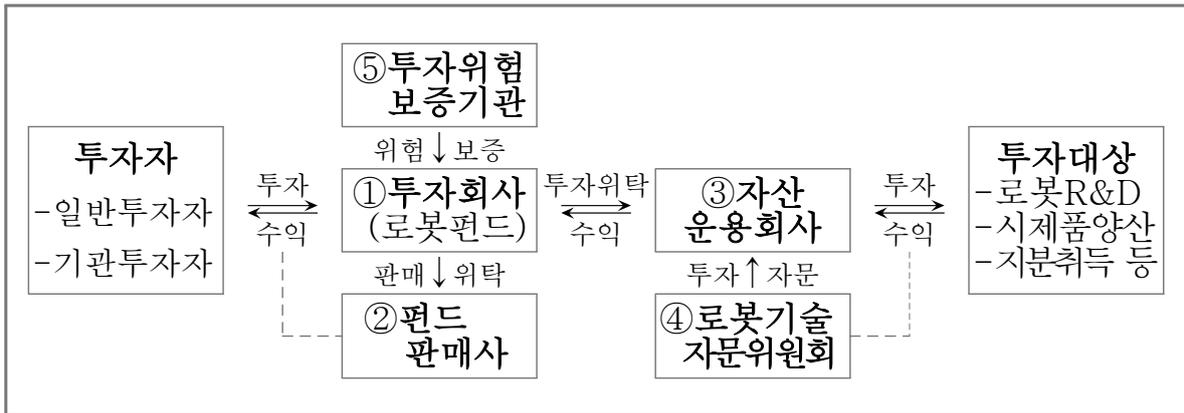
- 품질보증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안 제14조), 품질 인증사업에의 자금지원(안 제15조)

□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운영**

로봇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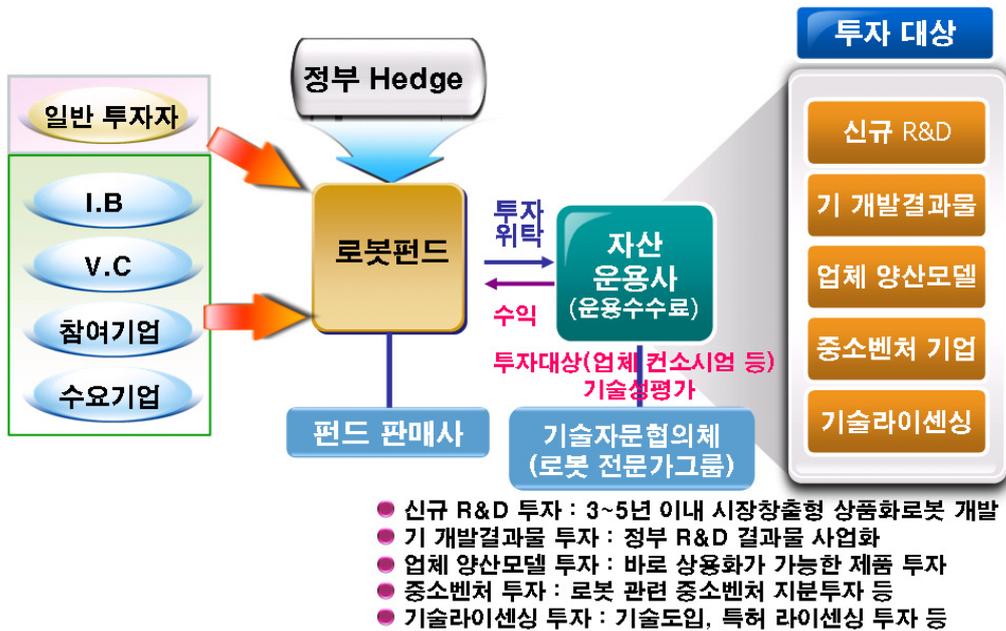
- 로봇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딩국가로 도약키 위해서는 로봇수요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로봇펀드』 제도 도입이 필요(신탁형이 아닌 회사형으로 추진)
 - 국가 로봇 R&D·상품화 사업에 민간의 투자참여제도 마련을 통해 최종 수요자의 사전투자 유도
 - 로봇 수요자 요구사항 파악 및 미래 잠재 수요자 확보를 통한 **R&D 결과의 직접적인 사업화**
 - * 펀드 투자자가 향후 로봇 구매자가 되는 구조(시장이 기술을 견인)
- 펀드 조성·운용을 위해 지능형로봇투자회사를 설립
 - 로봇사업화계획에 따른 펀드총액을 결정하고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 모집
 - 지능형로봇투자회사는 조성된 자금을 R&D, 사업화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배당
 - 법률적으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로 설정**
 -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
- 정부는 투자위험 보증사업 운용기관을 지정하고 보증사업을 위한 기초자산 지원(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지급보증 추진)
 - 일정수준 원금 보장을 위해 로봇투자회사는 기보·신보 등에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손실 위험부담을 경감
 - R&D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능성, 고위험성 등 리스크 완화 및 시중 펀드(증권, 부동산, 실물 등) 수준의 수익구조 마련

【 로봇펀드 발행모델 】



- ① 투자회사 : 펀드 조성·운영을 위한 법적인 실체(Paper Company)
- ② 펀드판매사 : 펀드조성을 위한 투자자 모집(증권회사)
- ③ 자산운용회사 : 투자회사로부터 펀드운용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④ 로봇기술자문위원회 : 투자대상 선정을 위한 자문기능
- ⑤ 투자위험보증기관 : 일반투자자 원금보장을 위한 보증사업(기·신보)

< 로봇펀드 운용예시 >



○ 투자대상사업의 구체화(안 제17조)

- 지능형 로봇 제품·부품의 기획, 연구개발, 생산·유통·판매 등

○ 금융위원회는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등록 신청 내용에 대해

지식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안 제18조)

-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지식경제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안 제19조)
-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투자대상사업의 기술·경제 타당성 분석 및 운영 등)
- 투자위험보증사업의 운영(안 제21조)
 - 지능형 로봇투자회사는 투자위험보증기관(장관 고시 요건에 적합한 보험 또는 공제기능을 하는 기관)과 투자위험보증 계약 체결 의무
 - 투자위험보증계정의 운용방법 명시
- 투자위험보증기관은 업무방법서*,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용계획 및 실적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안 제22조)
 - * 업무방법서 : 보증방법, 보증기간, 보증자금 운용배수 등의 필요사항을 기재
- 자산운용 방법(안 제23조), 자금차입 등의 비율(안 제24조 :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내)

□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랜드

- (개요) 로봇을 주제로하는 일종의 **테마파크**로서 상설전시관, 로봇 체험관, 전용경기장, 유통·판매장, 로봇놀이기구를 주요기능으로 하는 **로봇에 전문화된 복합문화공간**
 - 상업적 성격(각종 놀이시설, 판매시설 등)과 공익적 성격(로봇 경기장, 교육·전시시설, 체험관 등)의 공존
- (필요성) 대규모 선제적 수요창출의 공간 제공을 통해 **로봇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발판 마련**
 - 새로운 소비패턴 및 레저문화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 로봇랜드 조성지역 지정절차(안 제25조)
-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안 제26조)
-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인 공익시설 명시(안 제27조 :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로봇교육시설 등)
- 준공확인 절차(안 제28조)
- 로봇랜드의 관리(안 제29조)
 - 사업시행자는 필요시 로봇랜드 조성·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조성·관리·운영을 위탁

□ 지능형 로봇윤리현장의 제정

- (필요성) 로봇이 획득한 정보의 보안, 로봇의 오용이나, 남용의 방지 등을 위해 로봇개발자·제조자·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윤리규정 필요
- 지능형 로봇윤리현장 내용
 -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로봇을 개발·제조·사용시 지켜야 할 윤리적 가치 등
 - 지식경제부장관은 현장 보급·확산 의무, 제정시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수렴, 제정후 공표할 것 등 제정절차 규정

□ 지능형 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 * 기업·대학 및 연구소 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로봇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의 거점 기능 담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제외 기관(안 제30조)
 - *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함
 - 대학,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

○ 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안 제31조)

- 지정시 고려사항(제1항), 지정후 공고시 포함사항(제2항), 사업 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보고

□ 기타, 수수료(안 제32조), 위임 및 위탁(안 제33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안 제24조) 규정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로봇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실시 관련

-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 정책을 위하여는 관련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로봇산업실태조사'를 통하여 산업 일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통계 명칭	조사항목	출 처
로봇산업실태조사	기업현황, 품목별(생산·출하) 실적 및 전망, 연구개발 현황, 인력현황 등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승인통계(제37302호, 승인일자 : '06.9.6)

□ 로봇펀드 운용 관련

- 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해 로봇수요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로봇펀드 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로봇펀드의 운용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

□ 로봇랜드 조성 정책 관련

- 대규모 선제적 수요창출의 공간 제공 및 지역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로봇랜드 조성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로봇랜드의 조성현황이나, 로봇랜드의 실질적인 이용상황(이용개수, 관람료 등의

수익 등) 등에 대한 파악이 필요

- 품질인증 및 품질보증사업과 관련하여, 동 정책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 것이므로, 로봇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기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설립 등은 통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임

5.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실질평가 대상

-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동 법령에 포함된 정책 중 로봇산업실태조사, 품질보증사업, 로봇펀드제도, 로봇랜드 조성정책 등은 통계를 기반으로 관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지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필요한 지표의 구비여부 또는 미구비 지표의 개발/개선 계획에 대한 실질평가 요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람
- 다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봇산업통계 및 실태조사는 기 작성되고 있는 '로봇산업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실질평가 절차는 불필요

(요청기간 :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49호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중소기업 분류				
소관기관	기관명	중소기업청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중소기업영향평가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책총괄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협의기간	2008.9.19.부터 2008.9.29.까지(11일간)		
	입법예고	2008.10.9.부터 2008.10.29.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중소기업 범위기준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계로 통합·단순화하고 서비스업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범위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귀 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편·가공되는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선이 필요함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1 :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운영 합리화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세분류와 대분류를 혼용하고 있어 범위기준이 복잡할 뿐아니라 업종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해소 ○ 서비스업은 WTO시장개방 이후 대형화·업종간 융합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상당수의 서비스업이(세세분류기준 51.3%) 가장 낮은 기준(50인·50억)이 적용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적정하고 합리적인 업종별 규모기준 운용 ○ 도입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관련 별표1 ○ 추진방향 : 업종분류기준을 개정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되, 분류체계를 대분류단위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종의 범위기준을 전반적으로 확대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기준 통합·단순화(32개 업종 → 대분류 18개 업종) - 서비스업종 세세분류 491개중에서 367개 업종의 범위 확대. 단, 대분류 통합으로 과다 상향을 막기 위해 14개 업종은 축소 조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기준이 단순화됨에 따라 개정수요를 줄이면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세를 원활히 뒷받침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중소기업관련통계 기업규모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 ○ 구비 여부 : 구비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 : 중소기업의 산업별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 ○ 정보 출처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작성방식 : 년도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재편·가공 * 기존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은 현행 범위기준대로 세세분류까지 분류·작성되지 않고 이미 대분류로 작성되고 있었으므로, 큰 변동없이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이후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면 됨(붙임 참조)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 : 해당사항 없음</p>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 개선 계획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보고목적 :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보고체계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중소기업 범위에 맞게 재편·가공하여 '중소기업 관련통계' 책자에 수록 <input type="checkbox"/> 보고사항 : 중소기업관련통계 기업규모별 현황 <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매년 1회 <input type="checkbox"/> 개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이 이미 대분류단위로 작성되고 있었던 바, 일부 상향 조정된 서비스업종에 대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작성 <input type="checkbox"/> 공표시기 : 매년 4월 경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8 - 962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정책(제도)명	중소기업 분류	
소관기관/부서	중소기업청/정책총괄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p><input type="checkbox"/>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의 단순화와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를 위한 구분기준을 대분류체제로 일원화하는 정책임</p> <p>○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통계지표의 필요성과 기구비 여부를 제시했으며, 또한 개정된 분류에 따른 개선/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시</p>		
【필요 통계지표 정리】		
통계지표	조사항목	자료출처
중소기업 산업별 현황 관리	·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산업별, 기업체수)	-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중앙회 자체DB) ※ 매출액 및 자본금 통계 지표는 미구비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관리	·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산업별,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등)	
* 개정된 업종별 분류체계에 따른 개선이 필요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지표 개선 상세 계획】

□ 조사대상(보고체계)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중소기업 관련 통계' 책자에 수록

□ 조사(보고)사항

- 중소기업관련통계 기업규모별 현황

□ 작성(보고)주기 : 년 1회

□ 추진일정

- '09. 1월 : 통계청 원시자료 요청 및 내용 검토
- '09. 2월 : 통계자료 가공 및 프로그램 개편 등
- '09. 3월 : 통계표 작성
- '09. 4-5월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DB화, 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관련 지표개선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 다만, 매출액, 자본금 등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되는 자료는, 통계청 검토 결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제공이 불가함 상태임
- 현재 행정자료 활용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자료의 사용이 진전되면 향후 지표로 구비 하시기를 권고함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사항 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매출액과 자본금은 미구비되었으나 향후 국세자료의 활용을 권고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구비가 확실함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선/개발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 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되지 않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사항 없음
Ⅴ.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p>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8. . . .</p> <p style="text-align: center;">통 계 청 장</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10. 9 ~ 2008. 10. 29	
2008 - 962			
법령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정책(제도)명	중소기업 분류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중소기업 범위기준 업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체계로 통합·단순화하고 서비스업 발전 추이를 반영하여 범위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귀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재편·가공되는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선이 필요함		
소관기관	기관명	중소기업청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책총괄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 시책 규정 → 창의적·자주적인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산업 구조 고도화

법령 주요 내용

- 중소기업자 범위, 정부 및 중소기업자 책무
- 창업촉진, 경영합리화와 기술 향상, 판로 확보, 중소기업사이의 협력

- 기업구조의 전환, 계열화 촉진, 사업영역의 보호,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국제화의 촉진
- 소기업 대책,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법제, 금융 및 세제 조치, 중소기업자 실태조사

□ 금번 개정내용 및 이유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단순화하고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분 기준을 대분류체제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준을 확대하며,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를 받은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여 정부지원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3.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중소기업 업종별 분류체제 일원화(안 제3조제1호 별표1)

-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현재 대·중·소가 혼용된 32개 업종구분에서 18개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
 - 서비스업 발전추세에 맞게 367개 업종의 범위 확대, 14개 업종은 범위 축소
- 서비스업의 전문화·대형화 추세가 적절히 반영

□ 매출액·자기자본 상한선 도입(안 제3조제1호 다목 및 라목)

- 현행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상한기준 추가 적용

* 상시 근로자수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 지원수단의 효율적 분배 가능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간접소유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안 제3조제2호 별표2)

- (현행 문제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발행주식의 30%를 직접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편법사례 발생
-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은 '08.1.1일부터 시행)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

□ 규모가 큰 기업의 출자회사 범위기준 강화(안 제3조의2)

- 중소기업 규모산정 시 모기업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기업은 그 출자 지분에 상응하는 근로자수, 매출액, 자본금 등을 모기업과 합산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관계회사제도를 도입
- 합산결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관계회사를 모두 중소기업에서 제외

→ 공정하고 경쟁 촉진적인 중소기업 경영환경 조성

□ 유예제외 사유 추가(안 제9조)

- 3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던 상한기준 초과업체와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중소기업을 졸업
- 정부의 지원역량을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하는 효율적인 지원 가능

□ 기타 개정사항

-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 변경
- 기존 2008년 12월 27일까지 → 2008년 12월 31일까지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 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중소기업 업종별 분류체계 일원화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산업별 현황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산업별 사업체수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강화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파악이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별(산업별, 종업원수, 매출액 등) 현황 통계지표가 필요
- 그 외 사항은 통계기반 불필요

□ 통계지표 구비 여부

- 제정 사항 중 동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의 구비 여부 현황은 아래와 같음

【필요 통계지표】

필요판단	필요지표	출 처
중소기업 산업별 현황 관리	·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산업별, 기업체수)	- 중소기업통계 (중소기업중앙회 자체DB) ※ 매출액 및 자본금 통계 지표는 미구비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관리	·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 (산업별, 종업원수, 매출액, 자본금 등)	

* 개정된 업종별 분류체계에 따른 개선이 필요

5. 소관부처 요청서 내용 검토

□ 소관부처 의견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통계지표의 필요성과 기구비 여부를 제시했으며, 또한 개정된 분류에 따른 개선/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시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지표 개선 상세 계획】

□ 조사대상(보고체계)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자료를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 맞게 가공하여 '중소기업 관련 통계' 책자에 수록

□ 조사(보고)사항

- 중소기업관련통계 기업규모별 현황

□ 작성(보고)주기 : 년 1회

□ 추진일정

- '09. 1월 : 통계청 원시자료 요청 및 내용 검토
- '09. 2월 : 통계자료 가공 및 프로그램 개편 등
- '09. 3월 : 통계표 작성
- '09. 4-5월 :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DB화, 보고서 발간

- 중소기업 규모 관련 매출액과 자본금 등의 통계지표는 구비가 필요하나 통계청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 검토 의견

-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지표는 동 개선계획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 개선계획의 신뢰성, 조사항목의 타당성, 주기 등도 이견 없음
- 매출액, 자본금 등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 조사되는 자료는, 통계청 검토 결과 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제공이 불가함 상태임
- 현재 행정자료 활용 방안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세자료의 사용이 진전되면 향후 지표로 구비 하시기를 권고함

6. 평가의견 : “원안동의”

다. 전기통신산업법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72호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전기통신기본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보편적 의무 확대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동 법령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자 현황, 관련 시장 현황 및 설비 현황 등 전기통신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계에 기반하여 관리할 필요성 있음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선불통화권 시장현황 및 새로 도입되는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종 관련 현황 등을 통계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소관기관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협 의	협 의 기간	2008. 11. 14.부터 2008. 11. 18.까지(4일간)		
	입법예고	2008. 11. 19.부터 2008. 12. 9.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조표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style="text-align: center;">〈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재판매를 의무화하고 - 재판매사업자가 지배적사업자와 공정하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매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통한 전기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 유도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재판매(도매제공)제도 도입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도 기존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판매(도매제공)제도 도입 -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을 고시하되, 도매제공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의 신규사업자 진입으로 요금 및 신규부가 서비스 등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요금인하 등 이용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 <p style="text-align: center;">〈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통신요금은 신고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인가제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완화와 자율적 요금인하를 위해 인가제 개선
---	---

□ 정책내용

- 의의 : 요금인하에 대한 인가를 신고로 완화함에 따라 통신서비스 요금의 자율적 인하유도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요금인하에 대하여 인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 세부내용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하고,
 - 새로운 요금제나 요금인상의 경우에만 인가제 유지

□ 기대효과

-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신속한 요금인하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

<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종래의 세분화된 전기통신역무 체계는 서비스별 개별 허가를 필요로 하여 통신·방송 서비스 융합추세에 부적합

□ 정책내용

- 의의 : 기간통신역무 통합과 허가심사 기준 완화로 새로운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 촉진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기간통신역무 통합, 허가심사기준 완화
- 세부내용
 - 3가지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다만, 무선통신 사업시 별도 주파수 할당은 필요)하여, 하나의 허가장(License)으로 다양한 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허가제도는 유지하되 심사기준 완화

□ 기대효과

- 허가제도 완화를 통해 신규사업자와 서비스의 원활한 통신시장 진입과 경쟁을 촉진
- 한 번의 허가로 다수의 모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사회적·행정적 비용의 대폭적 감소 효과

< 임원결격사유 관련 규제 개선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통신 관련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 선고 이후 모두 3년이 경과되어야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

□ 정책내용

- 의의 :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자율성 향상 및 형평성 제고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벌금형의 제한기간 축소
- 세부내용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징역형 비례의 원칙상 경과기간을 더 짧게 규정하여 경과기간을 1년으로 수정

□ 기대효과

- 통신사업자의 경영 자율성이 향상

< 선불통화권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기간사업자는 선불카드 발행시 보증보험 가입의무가 없어 별정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및 상품원가 차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상황 발생
 - 또한, 기간사업자의 선불카드 발행총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선불카드 발급 후 서비스 중단시 이용자 피해 우려

□ 정책내용

- 의의 : 선불카드 이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보증보험 가입의무 확대, 벌칙신설
- 세부내용
 -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별정통신사업자 ⇒기간/별정통신사업자)
 - 의무확대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시 벌칙조항을 신설

□ 기대효과

- 보증보험 가입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용자 피해 보상 가능
-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별정통신사업자에서 기간 및 별정통신사업자로 확대하여 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 주식취득인가제 개선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형식적으로는 최대주주의 변경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가 인가대상에서 누락되어 편법적 주식취득의 소지가 있고, 주식취득 인가조건을 불이행하는데 따른 제재조항 부적절
- 주식취득인가심사와 공익성심사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통합 필요성 대두

□ 정책내용

- 의의 :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M&A 인가심사와, 중복 심사제도 개선으로 행정효율 증대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M&A 인가대상 확대, 제재수단 신설, 심사 제도 통합

○ 세부내용

-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인가대상에 추가
- 인가조건을 위반한 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정지, 주식처분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적절한 제재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주식취득이나 최대주주 변경 시 인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조성 등에 기여
 -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한 인가대상 추가와 인가조건 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 확보로 국가의 기간 인프라인 주요 통신산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공익성심사제와 주식취득인가제를 통합 운영하여 대상 사업자의 편의 도모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통합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 중 출연금 관련 부문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통신기본법이 조항별로 서로 다른 부처가 관할하는 문제점 발생

□ 정책내용

- 의의 : 관련 업무에 대한 일관된 법체계 적용함으로써 행정 효율 증대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전기통신관련 부분 추가

○ 세부내용

-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전기통신설비(사업용, 자가망), 분쟁의 재정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통합

□ 기대효과

-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업무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지고, 방통위 내에서도 여러 실·국으로 나뉘던 것이 업무관련성에 따라 통합되어 효율적 정책추진 가능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및 행정처분의 절차 명시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과도하고 중복적인 제재 부과로 서민과 기업 활동에 장애 초래
-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조사에 대한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대상자 및 업무담당자 등의 혼란·분쟁발생

□ 정책내용

- 의의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과 행정조사 근거 마련으로 행정규제의 투명성 및 행정능률 향상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행정조사 근거 마련
- 세부내용
 - 단순한 사실행위,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부과 대신 과태료 부과로 전환
 - 행정처분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용토록 함

□ 기대효과

- 단순한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비 범죄화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의 선택으로 준법의식 고양
- 통신사업자 등 행정처분의 대상자들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행정집행의 효율성 증대

<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승인 필요하나
 -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으로 겸업하는 등의 우회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하여 실효성이 낮음

□ 정책내용

- 의의 : 실효성 없는 규제의 철폐로 사업자 자율성 확대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겸업승인 대상 축소
- 세부내용
 -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해서만 시장지배력 전이 및 불공정 내부거래 등의 문제점 방지를 위하여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겸업승인제도를 유지

□ 기대효과

- 기간통신사업자의 부품 및 장비의 개발이 용이해져 다양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이 촉진 및 승인절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

< 국제전화 요금 정산계약 승인제도 개선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국제전화사업자가 외국사업자와 요금정산 계약 시 국내 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이미 국제전화 요금계약 시장에서 다양하고 저렴한 협정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승인제도가 불필요

□ 정책내용

- 의의 : 시장상황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사업자 자율성 확대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 세부내용
 - 승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승인제를 신고 제도로 전환

□ 기대효과

- 국제전화 요금정산의 신고제 전환으로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행위 감소 기대

< 금지행위제도 보완 >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현행 금지행위 제도는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규제의 공백, 결합서비스의 등장 등 통신시장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에 미흡
- 금지행위에 대해 열거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어 사업자 간의 다양한 경쟁제한 행위 및 이용자이익저해 행위 규제에 한계

□ 정책내용

- 의의 : 시장변화에 따른 금지행위제도 보완으로 적절한 사후규제 체제의 확립 및 이용자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 추진방향 :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유형 추가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인가제 완화,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이윤압착 및 약탈적 요금에 대한 사후적 요금규제 수단 마련 -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관련 이종(異種)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거래 거부, 불리한 조건 강요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 - 방송·통신사업자간 M&A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부당한 결합판매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규제 완화 및 방송통신융합 등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공정경쟁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작성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 기획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2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1056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소관기관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보편적 의무 확대		
정책(제도) 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단위 단일화·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p><input type="checkbox"/> 개정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으로 구분된 통신시장의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 ○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기기제조업의 경우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겸업승인제도 유지,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은 겸업승인제 폐지 ○ 주식취득인가제와 공익성심사제의 통합 ○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 ○ 선불통화권 발행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 ○ 통신서비스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매사업자가 지배적사업자와 공정하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매 관련 제도를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 실효성을 위한 사업정지 명령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환경에 부응하는 금지행위 보완 - 사업정지 명령 보완 : 반복적 위반·긴급 사안의 경우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조치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통합 ○ 기타 개정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제 개선 - 국제전화요금 정산 계약 승인제도 개선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규정 개선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선불통화권 시장현황 및 새로 도입되는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종 관련 현황 등을 통계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통 계 청 평가의견	<p>□ “시행령 입안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개정과 관련된 통신서비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에 기반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와 관련하여 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와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금번 개정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는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는 <u>시행령 입안시 금번 개정안과 병행하여 진행</u>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선불통화권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하여, 선불통화권에 대한 필요지표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므로 <u>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u> <p>→ 향후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와 관련한 동법 시행령 입안시 <u>실질 평가를 요청</u>하시기 바람</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평가 검토결과] 참조</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1056	입법예고기간	2008. 11. 19 ~ 2008. 12. 9	
법령명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전기통신기본법		
정책(제도)명	보편적 의무 내용 확대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선불통화권 시장현황 및 새로 도입되는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종 관련 현황 등을 통계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소관기관	기관명	방송통신위원회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 도모

법령 주요 내용

- 전기통신사업
- 기간통신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별정통신사업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업무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 설비의 공동이용,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등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 금번 개정이유

◆ 허가단위 단일화·허가절차 간소화를 통해 통신시장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재판매(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 하고,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등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통신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안 제2조, 제4조, 제5조)

○ 시내전화·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으로 구분된 통신시장의 역무를 기간통신역무로 단일화

- 하나의 허가로 다양한 통신사업 가능, 허가 심사기준 완화

현 행	개 정
<p>◇ 심사기준 : 7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 설비규모의 적정성 - <u>재정 및 기술적 능력</u> - 관련 기술개발 실적 - 관련 기술개발 계획 -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p>◇ 심사기준 : 4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무제공계획 이행을 위한 <u>재정적 능력</u> - 역무제공계획 이행을 위한 <u>기술적 능력</u> - <u>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u> - <u>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u>

□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완화(안 제11조)

* 기간통신사업자가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으로 겸업하는 등의 우회행위에 대해서는 규제가 불가, 실효성이 낮음

○ 통신기기제조업의 경우 지배적사업자에 한해 겸업승인제도 유지, 정보통신공사업·용역업은 겸업승인제 폐지

□ 주식취득인가제*와 공익성심사제**의 통합(안 제6조의3 삭제, 안 제13조 개정)

*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 필요

** 기간통신사업의 경영권 변화가 있을 때마다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지를 심사(공익성심사위원회), 경영권을 제한

→ 양 제도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통합 필요

○ **주식취득인가 심사시 공익성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여 양 제도를 통합**

○ **경영권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인가대상에 추가**

- 인가조건을 위반한 주주에 대해서는 의결권행사 정지, 주식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과 같은 적절한 제재수단을 부과

□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 제29조)**

* 현재 통신요금은 신고제가 원칙, 예외적으로 인가제 운영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등 고려, 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SKT의 이동전화는 인가대상

○ **인가대상 통신요금의 경우라도 기존에 인가받았던 요금을 인하하는 경우는 신고로 완화**

□ **선불통화권* 발행 시 보증보험 가입의무 신설**

* 국제전화카드, 무료통화권, 요금충전 등

○ **현행 별정사업자에게만 부과된 선불통화권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기간통신사업자까지 확대(안 제33조 제3항 내지 제5항)**

- 다만, 재무구조, 이용요금 등을 감안하여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범위 설정 근거 마련

○ **의무확대 담보를 위해 보증보험 미가입시 벌칙조항 신설(안 제71조제9호)**

□ 통신서비스 재판매(도매제공)* 제도 도입(안 제33조의8 신설)

* 통신망·주파수가 없는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설비·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

○ 재판매사업자가 지배적사업자와 공정하게 요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재판매 관련 제도를 정비

-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을 고시, 90일 이내 협정체결을 의무화, 도매제공 시 차별·거부·협정 불이행 등의 사후적 규제

** 초기투자비용이 많은 통신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재판매를 의무화

- 도매제공 대가는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

□ 금지행위 및 금지행위 실효성을 위한 사업정지 명령 보완

○ 시장환경에 부응하는 금지행위 보완(안 제36조의3)

- 통신시장의 불공정한 도매요금,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IPTV 방송사업자 등과의 부당거래(부당조건부과, 부당차별 취급 등),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
- 예측 불가능한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근거 마련

○ 사업정지 명령 보완(안 제37조 제1항제10호 신설)

- 반복적 위반·긴급 사안의 경우 이용자 신규모집 금지 조치(3개월 이내)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통신기본법 일부 통합

○ 전기통신기본법 중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동법으로 통합

- 전기통신관련 용어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전기통신설비 등

※ 형식승인과 관련된 부분은 전파법으로 나머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전기통신기본법은 폐지 예정

□ 기타 개정사항

○ 기간통신사업자 임원 결격사유 관련 규제 개선(안 제6조의2)

- 벌금형 선고의 경우 경과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수정

○ 국제전화요금 정산 계약 승인제도 개선(안 제59조)

-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 다만, 국제로밍서비스요금의 경우는 승인제

○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및 양벌규정 개선(안 제73조, 제77조, 제78조)

- 단순한 사실행위,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 등 과태료로 전환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 관련

○ 통신서비스시장의 경쟁활성화 등을 위한 동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하여 재판매시장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선불통화권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관련

○ 선불통화권 시장의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동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하여는 선불통화권시장 현황,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 현황 등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선불통화권 시장 및 피해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통화권시장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사업자별 업체수, 발행액 • 선불통화권 이용자 피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이용자수, 피해금액 	방송통신위원회

- 기타 개정 내용은 행정절차,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에 기반한 관리 불필요

5. 평가 의견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금번 개정과 관련된 통신서비스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 있음

○ 다만,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와 관련하여,

- 통신서비스 도매제공의무 사업자와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 금번 개정에 대한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는 해당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행령 입안시 금번 개정안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선불통화권의 보증보험 가입의무와 관련하여, 선불통화권에 대한 필요지표를 이미 구비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

→ 향후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와 관련한 동법 시행령 입안시 실질평가를 요청하시기 바람

7

노동/환경 분야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 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159호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등			
소관기관	기관명	노동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노동시장분석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전 부처	
		협의기간	2008. 8월 예정(10일간)	
	입법예고	2008. 9월 예정(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등은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 등 통계를 기반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으로 판단됨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1.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도입></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내에서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복수로 선택하여 도입이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은 복수 선택이 불가능하여 기업이나 근로자 실정에 맞는 퇴직 급여제도 운영이 어려움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DB형, DC형 등의 혼합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개별 기업이나 근로자의 실정 반영 가능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18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동시 가입을 허용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제도별 가입비율 합은 1이상이 되도록 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 제도형태 및 가입비율을 적용하되, 혼합형태와 가입비율의 집단적 변경만 허용하고 가입자 개인별 변경은 불허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퇴직연금 활성화에 기여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수 및 적립금액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 이후 활용 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및 적립금액 증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통계개선/ 개발계획	해당 사항 없음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정책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를 합리화하여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제5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구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추가하여 도입할 때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의 도입절차를 합리화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확대
-----------------	--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p><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적립금, 도입사업장 증가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2.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방지, 노후재원 확보 등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격한 근로자대표 동의절차를 합리화하여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4조제3항, 제5조 ○ 추진방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불이익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 동의를 요구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신규로 도입하거나 기존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추가하여 도입할 때는 ·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의 도입절차를 합리화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 급여제도 선택권 확대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 적립금, 도입사업장 증가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제도 가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3.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도입></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은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적립금 운용 등에 있어 개별기업의 운영 부담이 큼 - 이에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 줄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개별기업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감소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23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기업이 연합하여 동일한 규약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표준규약, 표준 계약서, 표준 상품라인업, 디폴트 옵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형 DC제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와 유사한 제도에서 가입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어서 관리비용, 수수료 등의 절감이 가능 ○ 퇴직연금 운영부담이 적어 중소기업장의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기여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연합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 사업장수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도입 이후 활용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중 연합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가입 근로자 및 적립금액 비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도입 이후 연합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비율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4.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DB형의 재정건전성 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이를 충족하는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가 부재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더욱 강화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15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B형의 재정건전성 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확인하는 절차 및 적립금 과·부족시 처리 근거 마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말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근로자대표(최소적립금에 미달할 경우)에게 통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을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운영 중인 DB형 재정검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적립금 과·부족에 따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 사용자 부담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DB형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 이후 DB형 도입현황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DB형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증가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DB형 도입에 기여하는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개발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5.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은 기득권이 없는 신규사업장에도 자동설정되어 있는 반면 퇴직연금은 노사합의를 통한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퇴직연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저조 -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자동설정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자동화하여 해당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5조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자동가입을 의무화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자동 설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이동이 많고 주로 영세규모인 신설사업장에 퇴직 연금을 강제화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의 유연한 인사노무관리 가능
	<p>□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도입 이후 활용실적 파악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가입사업장, 근로자 및 적립금 증가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 가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정책6. 개인퇴직연금 특례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인 미만 사업의 영세성, 잦은 직장 이동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개인퇴직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전원 동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제도 도입이 도리어 곤란 ○ 10인 이상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원하는 경우 통산성이 좋은 개인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간편하게 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확보 ○ 도입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제38조제1항 ○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요구 또는 동의를 있는 경우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퇴직연금 특례에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근로자 개별 동의를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약 작성 및 신고절차의 생략 등 제도도입 프로세스 간소화 및 전 근로자의 의무가입 규제를 해소하여 사용자 부담 완화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 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 이후 활용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근로자 및 적립금 증가율 ○ 구비 여부 : 구비 ○ 유용성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 도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 파악 ○ 정보 출처 : 퇴직연금제도 도입현황(매월) ○ 작성방식/개발·개선 여부 : 행정통계
<p>통계개선/ 개발계획</p>	<p>해당 사항 없음</p>

< 기타 개정 사항 >

1. 담보대출 활성화(안 제7조)

- 담보대출의 활성화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실시하도록 함

⇒ 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 정비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안 제16조제4항)

- 퇴직시 급여를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노후재원을 보존

⇒ 퇴직급여의 계좌이전 사항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3.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16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42조)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명확화

⇒ 체불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안 제24조제7항)

- DC형에서 운용 중인 자산을 현금화 없이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IRA계정으로 이전 허용

⇒ 자산 이전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5. DB형 급여지급 방식 변경(안 제16조제3항)

- 적립비율(적립금/퇴직부채)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

⇒ 급여지급 방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6. 개인퇴직연금(IRA)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추가납부 허용(안 제24조제6항)

-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제도의 급여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인퇴직계좌에 추가 부담 가능 여부를 명시하는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가 불필요

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안 제7조제2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여 본연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 요건 구비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8.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근거신설(안 제30조)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신설

⇒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9.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안 제31조)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 및 사업 중단 시 가입자 보호 조치 의무 및 재진입 제한 규정 신설

⇒ 시장 참여자에 대한 의무 신설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0. 계약이전, 제도변경, 제도통합·분할, 제도폐지·중단 관련규정 보완 (안 제38조)

- 계약이전, 제도변경, 제도통합·분할, 제도폐지·중단 시 조치에 관한 조항을 보완

⇒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1.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관련(안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 관련 법상 충돌 방지에 관한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2.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안 제4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명문화

⇒ 관련규정 정비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3.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삭제)

-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관계조항 정비

⇒ 위원회 정비에 따른 관계조항 삭제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4.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46조)

- 과태료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개정
- ⇒ 법령체계 정비에 관한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15. 양벌규정 조항 개정(안 제45조)

- 사용자 등이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도록 개정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관련 법률의 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통계기반 평가 불필요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복지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9 - 564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정책(제도)명	·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소관기관/부서	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p><input type="checkbox"/> 동 정책의 집행과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통계지표로 복수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가입성과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액 현황,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활용성과를 위한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 등 아래 표와 같이 모두 제시된 것으로 판단됨</p>		
【필요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자료출처
복수퇴직연금도입에 따른 가입 성과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액 현황	- 한국산업인력 공단 - HRD 넷 - 워크넷
근로자대표동의절차 완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 성과	• 퇴직연금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활동 성과	• 연합형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	
DB형 도입 성과	• DB형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 설정에 따른 가입성과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현황	
개인퇴직연금 특례 확대에 따른 가입 성과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현황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작성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Ⅳ.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

통 계 청 장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9. 9 ~ 2008. 9. 29	
2008 - 564			
법령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책(제도)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실질평가 대상		
소관기관	기관명	노동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 목적

-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

□ 법령 주요 내용

- 퇴직급여제도 설정
 - 사용자는 퇴직 근로자를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반드시 설정(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외)

○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 설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퇴직금의 지급 : 지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퇴직금의 시효 : 3년
- 퇴직금의 우선변제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예외)

○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에 관한사항

○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에 관한사항

○ 책무 및 감독에 관한사항

- 사용자의 책무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정부의 책무
- 사용자에 대한 감독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 금번 개정내용 및 이유

- 근로자 안정적 노후재원 마련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 도입절차 간소화로 은퇴 시점에 충분한 퇴직급여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도입(안 제4조)

(현행) 사업장내에서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복수로 선택도입 가능하나 근로자 개인은 복수 선택 할 수 없음

(변경)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복수의 퇴직연금제도 동시가입 허용

※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과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비교

구 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념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근로자가 55세에 달한 때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
	근로자가 55세에 달한 때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	
기여금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운용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부	운영실적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등 회사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의무적립금제도(퇴직금부채 60%)
	안정적 운영지도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불가	축소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 근로자대표 동의절차 완화(안 제4조)

(현행)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과반수 노조,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 요함

(변경) 퇴직연금 신규도입하거나 추가와 같이 근로조건외 불이익 변경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

□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도입(안 제24조)

- 규모가 작은 개별사업장 단독의 퇴직연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DC형에 한하여** 대표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여기에 다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 제16조)

- 퇴직연금 사업자는 매 사업년도 종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근로자대표(최소적립금이 미달할 경우)에게 통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족분 해소, 단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

→ 사용자 부담을 합리화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 설정(안 제5조)

- 신설사업장은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자동설정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 퇴직금 제도 선택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확보

□ 개인퇴직연금 특례 확대(안 제38조)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가입하도록 함

(변경)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당근로자가 가입하도록 함

□ 담보대출 활성화(안 제7조)

- 담보대출의 활성화 및 안정적 업무를 위하여 퇴직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담보대출을 실시하도록 함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안 제16조제4항)

- 퇴직 시 급여를 개인퇴직계좌로 이전하도록 하여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노후재원으로 보존

□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16조2항, 제20조4항, 제42조)

- 현행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 체불과 동일하게 벌칙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명확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현물이전 허용(안 제24조제7항)

- DC형에서 운용중인 자산을 현금화 없이 그대로 동일 사업자의 IRA계정으로 이전 허용

□ DB형 급여지급 방식 변경(안 제16조제3항)

- 적립비율(적립금/퇴직부채)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사업자는 총 적립금 이내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전액을 지급

□ 개인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부담금 추가납부 허용(안 제24조제6항)

- 개인퇴직계좌에 퇴직급여제도의 급여 이외에 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도록 허용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안 제7조제2항)

-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제한하여 본연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

□ 퇴직연금 모집업무 위탁 근거 신설(안 제30조)

- 퇴직연금 모집업무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근거 마련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신설

- 퇴직연금사업 중단에 따른 등록말소 근거 마련(안 제31조)
 - 자발적인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말소 신청근거 및 사업 중단 시 가입자 보호조치의무 및 재진입 제한 규정 신설
- 계약이전, 제도변경, 제도통합·분할, 제도폐지·중단 관련규정 보완(안 제38조)
- 조사·통계 인프라 구축 관련(안 제36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반의사불벌 조항 신설(안 제42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명문화
- 퇴직연금심의위원회 폐지(삭제)
- 과태료 규정 개정(안 제46조)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 여부 검토

(1) 필요통계지표

-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도 도입
 - 복수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및 적립금액(증가율)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완화

-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합리화로 인한 퇴직연금 가입실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도입

- 제도 도입 이후 활용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합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및 도입사업장수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DB형의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 제도 개선 이후 사용자 부담 합리화 및 근로자 수급권 강화를 위한 DB형 도입실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DB형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 가입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개인퇴직연금 특례 확대

- 제도 개선이 퇴직연금 도입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 기타 사항은 통계기반 불필요

(2) 통계지표 구비여부

- 금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필요통계지표는 아래와 같이 구비되었음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필요 판단	통계지표	자료출처
복수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가입 성과	-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및 적립금액 현황	- 한국산업 인력공단 - HRD 넷 - 워크넷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완화에 따른 퇴직연금가입 성과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현황	
복수사용자 퇴직 연금 활용 성과	- 연합형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 수 현황	
DB형 도입 성과	- DB형 가입 근로자수, 적립금, 도입사업장수 현황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에 따른 가입 성과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현황	
개인퇴직연금 특례 확대에 따른 가입 성과	-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수, 가입근로자수, 적립금 현황	

5. 소관부처 요청서 내용 검토

부처 의견

- 노동부는 복수퇴직연금, 복수사용자 퇴직연금,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자동설정 등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재원 확보로서 퇴직연금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한 통계지표의 필요성 및 구비현황을 제시

검토 의견

- 노동부 제시 통계지표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하며,
 - 각 통계지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HRD넷, 워크넷을 통해서 작성 가능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원안동의”

나.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181호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동 법령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현황, 샘물 개발 현황 등의 통계에 기반 두어 관리될 필요성 있음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취수량 기준으로의 정책방향을 변경하였으나, 부과된 수질 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되고 있어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에서 제외 필요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물산업육성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물산업육성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32개 관계중앙부처 및 16개 지자체 및 소속기관 등 61개기관		
		협 의 기간	2008. 5.16.부터 2008. 5.25.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6.17.부터 2008. 7.7.까지(21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p>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공공의 지하수 자원보호를 위한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p> <p>□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 의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 ○ 도입근거 「먹는물관리법」 제31조 ○ 추진방향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취수한 샘물 중 제품에 이용된 샘물에만 부과하였으나, 향후 취수한 모든 샘물에 부과하고, 부과금액을 평균판매가액의 6.75%에서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 제품에 이용된 샘물 → 취수한 모든샘물 - 부과금액 : 먹는샘물 : 평균판매가액의 6.75%, 기타샘물 : 전국 수돗물평균요금 + 물이용부담금 평균금액 → 먹는샘물 : 4,150원/1세제곱미터 → 기타샘물 : 1,300원/1세제곱미터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지하수자원인 양질의 샘물을 보호 -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과세형평성 제고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444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먹는물관리법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물산업육성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관련법령 개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 관리를 통하여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의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물 수질 관리 시책 마련,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 환경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조사 실시의무,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환경영향 심사 - 영업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 등의 금지, 영업의 허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 기준과 표시에 관한 사항 - 검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품질 검사 의무,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개정된 주요정책 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 개발허가 변경허가 사항 신설(안 제3조 제3항) ○ 수질개선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안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먹는샘물 <u>평균판매가액의 일정비율</u> → (개정) <u>취수한 샘물 1세제곱미터당 일정금액</u>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변경(안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취수한 샘물 중 <u>제품에 이용된 샘물</u> → (개정) <u>취수한 모든 샘물</u> ○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 제출(안 제9조의2) ○ 그 밖에 부담금 납부시기, 징수절차, 징수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변경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취수량 기준으로 정책방향을 변경하였으나, 부과된 수질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세입되고 있어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실질평가 대상에서 제외 필요</p>
<p>통계청 평가의견</p>	<p>“ 통계지표 관리권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현황, 샘물 취수량, 샘물 수입 실적 등 통계지표에 기반 둔 정책관리의 필요성 있음 - 다만, 샘물 취수량의 경우,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자가 매 분기마다 샘물 취수량 및 샘물 수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동 법령 시행(2008. 9. 22.) 이후 구비토록 조치 ○ <u>실질평가 대상이나 통계지표가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가능 하므로 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하며, 제시한 통계지표를 관리할 것을 권고</u>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예비평가 검토결과] 참조 바람</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6. 17. ~ 2008. 7. 7.	
2008 - 444			
법령명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정책(제도)명	수질개선부담금 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개정내용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취수한 샘물중 제품에 사용된 샘물에서 취수한 모든샘물로 대상 확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요율이 평균판매가액의 6.75%에서 1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을 정하는 내용으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물산업육성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 관리를 통하여 먹는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危害) 방지 및 생활환경 개선

법령의 주요내용

- 먹는물의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 먹는물 수질 기준 마련 및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 환경 영향 조사에 관한 사항

- 샘플 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환경영향조사 실시 의무, 환경영향심사

○ 영업에 관한 사항

-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容器)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금지
- 먹는샘물 제조업에 대한 허가(시·도지사)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시·도지사),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품을 판매한 자와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 기준과 표시에 관한 사항

- 먹는샘물의 종류, 성능,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 및 먹는샘물의 표시, 제품명(製品名)의 사용 등에 필요한 기준 고시

○ 검사에 관한 사항

- 자가 품질 검사 의무 :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자는 자신이 제조한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를 자가 검사(檢査)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
- 먹는물 관련 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영업장소 등에 출입·검사
-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지정

○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지도와 개선명령, 폐쇄조치 등

□ 금번 시행령 개정이유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8952호, '08.3.21. 공포, '08.9.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샘물과의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정비

3. 개정된 주요 정책 내용

□ 수질개선부담금 산정방식 변경(안 제7조)

(현행) 먹는샘물 평균판매가액의 일정비율

(개정) 취수한 샘물(수입한 먹는샘물) 1세제곱미터당 일정금액

■ 먹는물관리법 개정 내용('08.3.21. 공포)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변경(법 제31조 제2항)

	현행	→	개정
제조업자	·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일정비율	→	· 샘물 취수량
수입판매업자	·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일정비율	→	· 샘물 수입량
기타 샘물개발자*	·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샘물 사용량, 수돗물 평균요금, 물이용부담금	→	· 샘물 취수량

* 원수(原水)의 일부를 음료류·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샘물을 개발하려는 자

● 기존 취수한 샘물 중 제품에 사용된 양을 기준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취수한 후 제품에 사용되지 않은 샘물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개선 및 공공의 지하수 자원 보호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변경(안 제8조)

(현행) 취수한 샘물 중 제품에 이용된 샘물,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개정) 취수한 모든 샘물, 수입한 먹는샘물

샘물 취수량 등의 자료 제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샘물개발자의 샘물 취수량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의 수입실적을 분기마다 시·도지사에게 제출

그 밖에 부담금 납부시기, 징수절차, 징수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변경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변경 관련

-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집행·평가를 위하여 아래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지하수자원 보호 및 먹는물 수질개선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행정자료 (환경부)
	•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현황	
	• 샘물 취수량	
	• 샘물 수입실적	

그 밖의 사항은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집행과 평가에 통계지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5.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통계지표 관리권고

- 금번 개정과 관련하여 수질개선부담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에 기반 둔 정책관리의 필요성 있음

- **샘물 취수량의 경우,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자가 매 분기마다 샘물 취수량 및 샘물 수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동 법령 시행(2008. 9. 22.) 이후 구비토록 조치**

□ 다만, 필요지표가 구비되어 있거나 구비가능 하므로 추가적인 실질 평가 절차진행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우리 청이 제시한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에 활용할 것을 권고

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실질)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요청서			
제2008-275호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법령	환경보건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환경보건정책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협의기간	2008. 9. 1부터 2008. 9. 10까지(10일간)		
	입법예고	2008. 9. 22부터 2008. 10. 13.까지(22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보건정책은 통계에 기반 둔 정책관리가 필요하므로 실질평가 대상임			

<정책1>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악영향을 최소화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개발사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피해 사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확대 ○ 도입근거 : 환경보건법 제13조 ○ 추진방향 : 개발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건강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추진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되, 협의기관 검토 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 저감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건수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문서 ○ 작성방식 : 개발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율(%) ○ 구비 여부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에 따른 저감대책 수립 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결과 문서 ○ 작성방식 : 개발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실시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 실적 파악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평가협의 담당부서)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한 사업(건) -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하여 협의요청한 사업(건) - 건강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한 사업(건) <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1년 <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 '10년 이후
<p><정책2>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을 통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저감함으로써 어린이 건강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함 <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강화 ○ 도입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 ○ 추진방향 : 각종 환경유해인자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관리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 관리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을 정함

	<p>-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정함</p>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p><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수(개소), 시설점검 횟수(건)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형별 규모 및 점검 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보고서 ○ 작성방식 : 개발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율(%)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어린이 활동공간의 적정관리 여부 파악 ○ 정보 출처 :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결과 보고서 ○ 작성방식 : 개발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계획></p>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실태 파악 <p><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 환경부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 -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p><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1년</p> <p><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 '09년 이후</p>

<정책3>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 판매중지·회수 권고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건강피해 예방 □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어린이용도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강화 ○ 도입근거 : 환경보건법 제24조 ○ 추진방향 :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해서는 리콜권고 등을 통해 어린이 건강 보호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위해 우려 환경유해인자의 목록 및 유해성 고시 - 어린이용도 환경유해인자의 판매중지·회수 권고 - 권고만으로 불충분한 경우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로부터 어린이 건강 보호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대상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종) -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건) - 권고사실 공표 횟수(건)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어린이용도 유해물질 위해성관리 실적 파악 ○ 정보 출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 고시(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종류 및 유해성 목록) - 판매중지·회수 권고문서 ○ 작성방식 : 개발

	<p><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권고 수락율(수락(건)/ 권고(건), %)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권고 제도의 실효성 파악 ○ 정보 출처 : 권고 수락여부 통지문서(대상 사업자가 작성하여 환경부로 제출) ○ 작성방식 : 개발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계획></p>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 판매중지·회수 권고 실적 및 권고 제도의 실효성 파악 <p><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p><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 대상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종) -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건) - 권고사실 공표 횟수(건) - 권고 수락 횟수(건) <p><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1년</p> <p><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 '09년 이후</p>
<p><정책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p>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감시·예방·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추진 <p><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환경보건 연구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 도입근거 : 환경보건법 제26조 ○ 추진방향 :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보건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병원 등 대상 분야별 환경보건센터 지정 - 사업비용 일부 또는 전부 국고 지원 - 사업실적 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실시 □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 기술개발 및 연구 기반 강화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지정·운영중인 환경보건센터(개소)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파악 ○ 정보 출처 : 환경보건센터 지정 문서 ○ 작성방식 : 개발 □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저널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건) - 심포지움, 세미나 등 개최(건) - 센터별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수(명)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환경보건센터를 통한 연구 및 교육·홍보 사업별 성과 파악 ○ 정보 출처 : 센터별 최종 성과 보고서 ○ 작성방식 : 개발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목적 :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 파악 □ 조사대상(보고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센터 ⇒ 환경부 □ 조사(보고)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센터의 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증빙자료

	<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3년 <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 '09년 이후
<정책5>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p>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input type="checkbox"/>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 환경성질환의 발생실태 등을 파악하여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에 활용 <input type="checkbox"/> 정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의 : 국민의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 ○ 도입근거 : 환경보건법 제14조 ○ 추진방향 : 전담기구를 통한 국민 환경보건기초조사 실시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마다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등 기초조사 실시 -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등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평가 및 환경보건정책 수립·평가의 기초 자료 제공
<p>정책(제도)의 집행/평가단계별 통계지표</p>	<input type="checkbox"/> 정책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 지역별·연령별 기초조사 대상자(명) ○ 구비 여부 : 없음 ○ 유용성 : 연차별 환경보건기초조사 실시규모 파악 ○ 정보 출처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 작성방식 : 개발 <input type="checkbox"/> 정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수준 - 환경성질환 유병률 ○ 구비 여부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용성 : 환경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정보 출처 :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보고서 ○ 작성방식 : 개발
<p>통계개발/ 개선계획</p>	<p><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목적 : 전국적인 환경보건실태 파악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input type="checkbox"/> 조사(보고)사항 : 설문,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 <input type="checkbox"/> 작성(보고)주기 : 3년 <input type="checkbox"/> 추진일정 : '09년 이후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실질)

관리번호	2009 - 980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결과통보서		
I. 대상법령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정책(제도)명	환경보건정책	
소관기관/부서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II. 종합 평가의견 : “원안동의”		
<input type="checkbox"/> 환경부가 제시한 통계지표에 동의 <input checked="" type="radio"/> 다만,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환경성질환 유병률을 추가 관리할 필요 <input type="checkbox"/> 동 정책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통계개발계획으로 구비 가능한 것으로 판단		
【필요 통계지표】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에 따른 실적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건수 • 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율(%) 	개발계획 제출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 환경성질환 유병률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현황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율(%)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현황 •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 • 권고사실 공표 횟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Ⅲ.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평가가 충분한가?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작성가능함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시기는 적절한가?	"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는 않는가?	"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IV. 기타 참고사항

위와 같이 통계법시행령 제33조(정책통계기반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하오니, 종합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관 정책의 집행 및 평가에 통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08 . . .

통 계 청 장

③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실질)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980	입법예고기간	2008. 9. 22. ~ 2008. 10. 13.	
법령명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환경보건법		
정책(제도)명	환경보건정책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실질평가 대상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환경보건정책과
		담당자(직급·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제정이유

법령 목적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 조사·규명 및 감시 →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 예방 및 대책 마련

법령의 주요내용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 *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 위해성 높은 새로운 기술 및 물질의 적용 또는 사용 제한
 -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실시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실시
-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청원
- 환경성질환에 대한 배상책임
- 환경보건 지표의 개발

○ 어린이 건강보호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어린이 용도 유해물질 관리
- 어린이 위해성 정보 제공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 금번 제정이유

- 「환경보건법」이 제정('08. 3. 21.공포, '09. 3. 22.시행)됨에 따라,
⇒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관리대상 어린이 활동 공간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3. 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평가

※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직업적 노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

□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안 제11조~제15조)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일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협의

(대상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절차) 건강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요청 시 함께 요청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7조 및 제18조)

-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 제한, 어린이 활동공간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

(관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 초등학교·특수학교의 교실

(환경안전관리기준)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안 제19조~제21조)

-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 또는 권고사실 공표

(위해성평가 대상)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권고 절차) 서면으로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 사업자는 7일 이내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 통보

(공표 대상)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거나 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이 어린이 건강 피해 예방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권고사실 공표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안 제22조 및 제23조)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규명·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공립 및 민간병원 등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운영

□ 그 밖의 개정사항

-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보고,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필요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어린이 건강보호,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 환경보건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에 따른 실적 파악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 환경성질환 유병률 	지역별, 연령별 지역별, 연령별	개발계획 제출 개발계획 제출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현황 •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율(%)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현황 •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 • 권고사실 공표 횟수 	제품,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제품 제품	개발계획 제출 개발계획 제출 개발계획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규명·감시·예방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 	지역, 국내외 발표 논문(건), 심포지움·세미나 등 개최(건), 센터별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수(명)	개발계획 제출

□ 통계지표 구비여부

- 상술한 통계지표를 구비하고 있지 못함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통계지표 관련

환경부 제시	검토의견
①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건수	동의함
②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율(%)	동의함
③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수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현황’으로 통합
④시설점검 횟수	
⑤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율(%)	동의함
⑥고시 대상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종)	‘어린이용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현황’으로 변경

환경부 제시	검토의견
⑦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건)	동의함
⑧권고사실 공표 횟수(건)	동의함
⑨권고 수락율(%)	판매중지·회수 권고 및 권고사실 공표 횟수와 중복되므로 제외함
⑩지정·운영중인 환경보건센터(개소)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으로 변경
⑪국내외 저널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건)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현황의 세부항목으로 통합
⑫심포지움·세미나 등 개최(건)	
⑬센터별 홈페이지 일평균 방문자수(명)	

- 한편,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해서 아래 통계지표를 추가 관리할 필요성에 대하여 환경부와 협의, 환경부는 이에 동의하며 추가로 개발계획 제출

추가 관리할 통계지표	구비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 환경성질환 유병률 	개발계획 제출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통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작성 관리할 계획임

【통계개발 계획1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 ◆ 통계 지표 :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건수, 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율(%)
- ◆ 조사(보고) 목적 : 환경영향평가 시 건강영향 항목 추가·평가 실시 실적 및 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영향 저감대책 수립 실적 파악
- ◆ 조사대상(보고체계)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평가협의 담당부서)
- ◆ 조사(보고)사항
 - 조사대상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한 사업(건)
 -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하여 협의요청한 사업(건)
 - 건강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한 사업(건)
- ◆ 작성주기 : 1년
- ◆ 추진일정 : '10년 이후

【통계개발 계획2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행성관리】

- ◆ 통계 지표 : 어린이 활동공간 점검 결과 현황,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율(%)
- ◆ 조사(보고) 목적 :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관리 실태 파악
- ◆ 조사대상(보고체계) : 시·도지사 및 시·도교육감 → 환경부
- ◆ 조사(보고)사항
 - 지역별 관리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현황
 - 시설점검 실적 및 조치결과
- ◆ 작성주기 : 1년
- ◆ 추진일정 : '09년 이후

【통계개발 계획3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 판매중지·회수 권고】

- ◆ 통계 지표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 권고사실 공표 횟수, 권고 수락율(수락(건)/권고(건), %)
- ◆ 조사(보고) 목적 :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용도 판매중지·회수 권고 실적 및 권고 제도의 실효성 파악
- ◆ 조사대상(보고체계) : 환경부
- ◆ 조사(보고)사항
 -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종)
 - 판매중지·회수 권고 횟수(건)
 - 권고사실 공표 횟수(건)
 - 권고 수락율(건)
- ◆ 작성주기 : 1년
- ◆ 추진일정 : '09년 이후

【통계개발 계획4 :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 ◆ 통계 지표 : 지정·운영 중인 환경보건센터
- ◆ 조사(보고) 목적 :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 파악
- ◆ 조사대상(보고체계) : 환경보건센터 → 환경부
- ◆ 조사(보고)사항
 - 각 센터의 계획 대비 사업성과 및 증빙자료
- ◆ 작성주기 : 3년
- ◆ 추진일정 : '09년 이후

【통계개발 계획5 :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 ◆ 통계 지표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환경성질환 유병률
- ◆ 조사(보고) 목적 : 국민의 유해오염물질 노출수준, 환경성질환의 발생실태 등을 파악하여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 및 관리에 활용
-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립환경과학원 → 환경부
- ◆ 조사(보고)사항
 - 혈액 및 요중 유해오염물질 농도
 - 환경성질환 유병률 등
- ◆ 작성주기 : 3년
- ◆ 추진일정 : '09~11년 3개년 조사(2012년 이후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발표)

○ 【검토의견】 동 개발계획의 보고체계, 조사사항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6. 평가결과 : “원안동의”

8

국토해양 분야

- 가. 항공법 일부개정안
- 나.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 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항공법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585호					
법령명	항공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항공법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항공정책(항공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제도 등)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은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관리 대상 법령임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p>본 법률 개정안은 경량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대상,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따라 개편하는 사항으로 통계기반 정책관리의 실질평가 대상이 아니라 판단 됨.</p> <p>다만, 동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량항공기 보유대수 및 안전 보고 현황자료, 항공운송사업 등록현황 등은 항공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예정임</p>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항공정책과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 의	협의기간	2008. 8. 26.부터 2008. 9. 9.까지(15일간)		
	입법예고	2008. 9.17.부터 2008. 9.9까지(20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 1 : 경량항공기 안전관리 ></p> <p>□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 발생 및 신고 불이행 등 불법 비행의 만연으로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우려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항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분류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종(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으로 분류 - (변경) 3종(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으로 분류 ○ 경량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등록, 비행계획승인 및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하고, 보험 가입 및 무선설비의 설치 등을 의무화 ○ 비행안전 제고를 위해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조종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량항공기 제도의 도입으로 항공레저스포츠인의 비행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안전관리를 강화로 사고예방에 기여 <p>< 정책 2 : 항공안전보고제도 ></p> <p>□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분석·활용하여 항공기 사고·준사고를 사전에 예방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지적사항 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실시('08.5)한 항공안전평가에서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지적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의무보고에 관한 안전규정 (안 제49조의3 신설)
-------------------------------------	---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안전보고제도의 기본 취지에 적합한 보고제도 운영에 따른 안전정보 수집·분석기능의 혁신적인 강화 ○ 국제적 안전데이터 공유체계 및 안전 관련 표준통계 기록 관리 기반 마련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지적사항의 시정에 따른 국제 신인도 향상 <p>< 정책 3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p> <p><input type="checkbox"/>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 필요 및 항공법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저해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여 신규항공사의 시장참여를 제고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도입,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 <p><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정기·부정기 - (변경) 국내·국제 및 소형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인 추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개편으로 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이용자 편의 도모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국토해양부	항공정책과	○○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675			
법령명	항공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항공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항공정책(항공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제도 등)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항공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정의(안 제2조 제24호의2 신설) - 경량항공기에 관한 안전규정 (안 제24조, 제40조의2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에 관한 요건 강화(안 제23조 개정) ○ 항공안전의무보고에 관한 안전규정 (안 제49조의3 신설) ○ 항공안전장애보고를 항공안전자율보고로 변경(안 제49조의4 개정) <p><input type="checkbox"/>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안 제2조제27호부터 제28호까지, 제112조, 제13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p><input type="checkbox"/>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안 제118조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권배분 방법과 원칙 규정, 운수권 배분을 위한 세부 배분 기준 및 배분절차, 신청자에 대한 평가방법(국토해양부령에 위임) <p><input type="checkbox"/>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31조의3 신설)</p>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본 법률 개정안은 경량항공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등록대상,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의 면허체계를 국제적 표준에 따라 개편하는 사항으로 통계기반 정책관리의 실질평가 대상이 아니라 판단 됨.</p> <p>다만, 동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경량항공기 보유대수 및 안전보고 현황 자료, 항공운송사업 등록현황 등은 항공법령에 의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예정임</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 통계지표 관리권고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동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한 통계 지표가 필요한 통계기반정책관리 대상이며 정책별 필요 통계 지표는 대부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p>예시) 경량비행기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항공사고현황, 항공기 등 고장신고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제도’와 ‘항공 운송사업자 면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량비행기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현황(국내·국제·소형 항공운송사업)’은 동 제도 시행 이후에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 통계지표는 제도 시행 후 행정자료를 통하여 구비 가능한 것으로 판단 <p>⇒ 동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기 구비 되어 있거나, 구비가 가능하므로 실질평가 대상이나 추가절차 불필요</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평가검토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람</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09.17~2008. 10.07	
2008 - 675			
법령명	항공법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책(제도)명	항공정책(항공안전관리, 항공운송사업제도 등)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은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관리 대상 법령임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항공정책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정책(제도)의 필요성

-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를 효율화하여 항공운송사업 질서 확립
→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정책(제도)내용

- 항공기의 등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및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사항
 -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 항공기의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등

- 항공시설에 관한 사항
 - 비행장·항행안전시설, 공항개발 및 관리,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사항
-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취급업 등에 관한 사항
- 외국항공기의 운항 등에 관한 사항

【 용어정의 】

- **항공기** :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 자체중량·연료용량등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
 -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경량항공기** :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회전익기, 자이로플레인 및 파워드패러슈트 등
-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
 - 동력비행장치 : 동력을 이용하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비행장치
 - 인력활공기 : 체중이동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로서 탑승자 및 비상용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당해 장치의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장치
 - 기구류 : 기체의 성질·온도차등을 이용하는 비행장치
 - 회전익 비행장치 : 초경량 자이로플레인, 초경량 헬리콥터
 - 패러플레인 : 낙하산류에 추진력을 얻는 장치를 부착한 비행장치
 -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국내항공운송사업**
 - 국내 정기편운항 :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내 부정기편운항 :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국제항공운송사업**
 - 국제 정기편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하계절, 동계절 항공기 운항계획에 운항편이 포함되는 것을 말함)인 항공기의 운항
 - 국제 부정기편운항 : 국내공항과 외국공항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정기적 운항 외의 항공기의 운항
- **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

□ 금번 시행령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안전 의무 보고 및 항공안전자율보고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공기 외에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스포츠 항공기 활성화 및 이용자 안전 도모
- 항공운송사업의 시장진입 완화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국내·국제운송사업으로 개편하고,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도입하여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
-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된 국제항공 운수권을 투명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한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3. 개정 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항공 안전관리

○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 용어정의(안 제2조 제24호의2 신설)

- 초경량비행장치의 잦은 사고 발생 및 신고 불이행 등 불법비행의 만연으로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안전 우려 증가,
- 이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항공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

※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구분 비교

현 행		변 경(안)	
항공기	비행기 자체중량이 225kg를 초과하고 항공법상 항공기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기	⇒ 항공기	비행기 자체중량이 600kg를 초과하고 항공법상 항공기 기준에 적합한 항공기기
		경량항공기	장치 자체중량이 600kg이하, 225kg을 초과하는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장치 자체중량이 225kg 이하인 비행장치	초경량 비행장치	장치 자체중량이 225kg이하 인 비행장치

- 경량항공기에 관한 안전규정 (안 제24조, 제40조의2 신설)
 - 경량항공기제도 신설에 따라 경량항공기 소유자 또는 이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위해 지켜야할 규정 및 비행장치에 설치해야 할 무선설비 등의 규정 마련

○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등에 관한 요건 강화(안 제23조 개정)

- 비행장치 사고 시 사고위치 파악 지연으로 신속한 구조곤란 및 체계적인 신고관리제도 부재, 불법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요건 미비로 심각한 안전문제 대두 가능
- 비행장치에 위치식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소유자에게 신고번호 표시 및 신고사항의 변경·말소 의무를 부여하여 체계적인 비행장치 관리 및 안전성이 입증된 비행장치의 유통으로 비행안전 제고

○ 항공안전의무보고에 관한 안전규정 (안 제49조의3 신설)

-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인지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보고방법 및 보고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 항공안전장애보고를 항공안전자율보고로 변경(안 제49조의4 개정)

-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 도입에 따른 항공안전자율보고제도 도입
-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할 수 있음

* 항공기사고·준사고외에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에 규정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안 제2조제27호부터 제28호까지, 제112조, 제132조)

○ 개편이유

- 항공기 운항형태(정기편, 부정기편)와 사업면허(정기, 부정기)가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 필요 및 항공법이 대형운송사업 위주로 규정되어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저해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를 개편하여 신규항공사의 시장참여를 제고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도입, 지방공항 활성화 도모

○ 개편 내용

- 정기·부정기항공운송사업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도록 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안 제118조 신설)

- 국가간 항공협정에 의해 확보한 국제항공 운수권*을 내부지침인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으나, 배분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법에 근거규정 마련 필요

* 외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확보된 항공기 운항횟수 이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 운수권배분 방법과 원칙 규정, 운수권 배분을 위한 세부 배분 기준 및 배분절차, 신청자에 대한 평가방법(국토해양부령에 위임)

□ 항공기정비 자격증명 통합(안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 제28조제2항)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등 2종으로 운용하던 항공정비자격 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항공정비사로 통합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안 제31조의3 신설)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이 미약하여 부당한 신체검사업무를 수행한 항공전문의사에 대한 제재 수단 미흡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사유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항공전문의사가 이수하여야 할 전문교육 받지 않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의한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 항공전문의사란

-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로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의사

○ 항공전문의사 지정절차

- 항공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항공전문의사지정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제출
-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항공전문의사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 항공전문의사 지정 공고(항공안전본부장)

○ 항공전문의사 지정기준

-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과정(항공의학이론, 항공의학실기, 항공관련법령) 이수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서 교육 실시)
- 전문의거나 의사로서 항공의학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 항공신체검사 의료기관시설 및 장비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것

※ 항공전문의사 지정현황(2008.05.30기준)

단위 : 기관, 명

지역	서울	경기도	청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병원	9	5	1	1	1	1	1
의사	15	7	2	1	1	1	1

4.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당초 예비평가로 요청되었으나, 통계기반 필요성과 함께 필요 통계 지표 및 구비여부도 함께 검토

□ 항공안전관리

-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항공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경량비행기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항공사고 현황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 개편

-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현황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노선별·항공사별 운수권 배분 현황,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현황’ 등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예시)	비고
항공 안전관리	- 경량비행기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 제도 시행 후 구비 가능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조종자격 현황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 (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팀)
	- 항공사고현황 · 항공기고장신고현황, 항공기 사고·준사고 및 항공장애현황 등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항공운송사업 관리	-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현황 · 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	- 제도 시행 후 구비 가능

국제 항공운수권 배분	- 국제 노선별 · 항공사별 운수권 배분 현황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 항공사별 항공기 보유현황	- 국토해양부내부자료

□ 기타 아래사항은 통계지표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

○ 항공기정비 자격증명 통합

- 동 정책은 항공정비사와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을 국제표준에 맞춰 항공정비사로 통합하는 것으로 통계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 동 정책과 관련하여 ‘항공전문의사 지정 현황’을 통계로 작성할 수 있으나 집행·평가를 위한 판단지표로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통계지표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통계지표 관리권고

□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동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통계기반정책관리 대상이며 정책별 필요 통계지표는 대부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경량항공기제도’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량비행기 신고 및 조종자격현황, 항공운송사업 면허(등록) 현황(국내·국제·소형항공운송사업)’은 동 제도 시행 이후에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동 통계지표는 제도 시행 후 행정자료를 통하여 구비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동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기 구비 되어있거나, 구비가 가능하므로 실질평가 대상이나 추가절차 불필요

나.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제2008-549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명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조정을 위한 교통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교통조사 등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중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본 제도와 관련하여 교통조사 관련 통계를 기 구비하고 있어 통계 개발/개선계획은 필요하지 않으나 국가교통경쟁력 지표의 설정·정기조사 업무의 추진 추이에 따라 통계 구축 필요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0개기관		
		협의기간	2008. 7. 30.부터 2008. 8. 13.까지(15일간)		
	입법예고	2008. 9. 4.부터 2008. 9. 25.까지(21일간)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정책1: 국가경쟁력 지표 설정·조사 및 교통조사 첨단기술 활용 ></p> <p>□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교통물류 경쟁에 대비한 국가교통체계의 지표설정 및 조사가 필요하며, 발전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강점을 교통조사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데이터 구축 필요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여객·화물의 신속한 처리, 이동성·접근성 및 편리성,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등 지표 개발 ○ 교통카드, 휴대폰단말기 등을 활용한 교통조사 추진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우리나라 교통경쟁력 실태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조사 자료 구축 <p>< 정책2 :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 ></p> <p>□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평가를 위해 전면 개편, 보완 필요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자격과 등록기준 마련 ○ 타당성 평가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건변화 등에는 전문기관의 재검증 제도 도입 ○ 평가관련 제재방안 도입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강화 및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 정책3: 연계교통체계 강화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운영 >

□ 정책 목적 및 필요성

- 교통물류거점에 대한 연계교통체계의 중장기 계획과 투자
재원 확보방안 미흡
- 교통결절점의 환승센터 설치가 추진 중이나 법·제도적
정비 미비

□ 주요내용

- 교통물류거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른 지정
권자 지정하여 연계교통체계 구축토록 규정
- 연계교통체계 구축 시 영향권을 설정하고 범위 내 대책을
수립토록 명시
- 환승센터의 연계수송거리, 환승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지정권자를 규정
- 환승센터의 지정에 다른 인허가 의제, 각종 특례조항 등
절차 규정

□ 기대효과

-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및 복합환승센터의 법·제도의 정비로 교통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대중교통의 이용 활성화 도모

<정책4: ITS 구축·운영지원 및 교통기술 개발 지원강화>

□ 정책(제도) 목적 및 필요성

- 통합에 따른 자동차 중심의 ITS를 각 교통부문간 통합
구축 필요
- 교통기술의 외국진출, 신교통기술 지정 등 제도정비 필요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형교통체계 인증제 도입, ITS 관련 장비 등 성능 평가 도입 ○ 교통정보의 제공 및 상호 연계 규정 도입 ○ 부정행위, 협약위반 등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자 참여제한 및 신교통기술의 지정취소 근거 <p>□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통합에 따른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통합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기술 개발의 활성화와 신교통 기술의 내실화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778			
법령명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관련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국가교통 경쟁력지표 설정 및 정기조사·평가(안 제10조~제1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교통 경쟁력지표를 설정하여 고시 <p><input type="checkbox"/>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안 제36조~제4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지정권자의 책임하에 연계교통체계 구축(5년 단위 계획수립)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input type="checkbox"/>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안 제42조~제6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 ○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건폐율·용적을 완화, 각종 부담권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 <p><input type="checkbox"/>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운영지원(안 제69조~제8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S 종합기본계획 대상범위를 육상, 해상, 항공분야로 명시 ○ 지능형교통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구축·운영 - 전국차원에서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유통을 위해 교통정보센터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기타 개정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첨단기술 활용(안 제13조~제14조) ○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포함된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7조제4항) ○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안 제18조~제31조) ○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긴급사태 대응조치(안 제35조) ○ 교통기술 개발지원 강화(안 제93조·제95조 및 제97조) ○ 국가교통위원회 등 교통관련 위원회 정비(안 제100조~제104조)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본 제도와 관련하여 교통조사 관련 통계를 기 구비하고 있어 통계 개발/개선계획은 필요하지 않으나 국가교통경쟁력지표의 설정·정기조사 업무의 추진 추이에 따라 통계 구축 필요</p>
<p>통계청 평가의견</p>	<p>□ “시행령 입안 시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수단별 현황, 교통시설의 운영실태, 통행량 등’은 『국가교통조사』(승인번호 11627)를 통해 기 구비 - 이번 개정은 법률 전부개정으로 ‘국가교통경쟁력지표의 설정’,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 ‘복합환승센터 개발·운영’, ‘지능형교통체계구축·운영’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정책과 관련된 필요통계 지표에 대한 추가 검토는 시행령개정(안)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p>⇒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예비평가단계를 생략하고 <u>실질평가를</u> 요청하시기 바람</p>

3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09.04 ~ 2008. 09.25	
2008 - 778			
법령명	교통체계효율화법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정책(제도)명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수단간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조정을 위한 교통조사 등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교통조사 등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중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정책(제도)의 필요성

- 교통정책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을 강화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및 각종 교통수단간의 효율적인 국가통합교통체계 구축

정책(제도)내용

-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20년 단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수립(5년 단위), 국가교통경쟁력지표 설정, 국가교통조사, 특별교통대책 수립 등

- 교통물류거점 등 연계교통체계 고도화에 관한 사항
 - 연계교통체계 구축,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지원, 환승센터의 지정 등
- 교통체계의 지능화에 관한 사항
 -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10년 단위수립, 5년 단위 조정), 지능형 교통체계의 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등
- 교육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의 수립(5년 단위), 교통기술의 표준화, 신교통 기술 등
-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부 개정 이유

- '08년 부처통합을 계기로 육상, 해상, 항공 통합교통행정체계가 구축되었으므로 Intermodalism(통합연계교통)* 본격 추진
 - 산업단지, 항만 등 거점간 연계교통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 권역간, 권역내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등 정비
 - * 도로, 철도 등 개별수단차원의 교통문제 해결 방식에서 시설·운영·연계수송·환승 등이 효율적, 비용 절감적으로 통합·연계된 교통체계
 - 사회복지 등 재정소요증가로 교통SOC 재정투자가 담보·축소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 필요
 - 현재 도로교통 위주의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육상, 해상, 항공 교통분야 확대 등 양적, 질적 구조개혁 추진
 - 현재 국가 교통서비스의 질적 개선, 교통정책의 과학화 등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법제도적 틀 마련
-

3. 개정된 주요 정책 내용

◇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검토

□ 국가교통 경쟁력지표 설정 및 정기조사·평가(안 제10조~제11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교통 경쟁력지표를 설정하여 고시

- ① 교통시설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 ② 여객·화물의 신속한 처리
- ③ 이동성·접근성 및 편리성
- ④ 교통물류산업의 경쟁력 등 지표

○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평가

<기대효과>

-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교통경쟁력 실태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반조성

□ 교통조사의 실효성 확보 및 첨단기술 활용(안 제13조~제14조)

○ 탑승인원, 적재화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통조사 실시를 위하여 운행 중인 교통수단(자동차 등)의 정지 등 근거마련

○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교통조사 도입

* 교통카드, 휴대용단말기, 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RFID) 등

<기대효과>

-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교통조사 자료 구축

□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포함된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안 제7조제4항)

-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 시 실시하는 타당성평가는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음

□ 교통시설 투자타당성 평가체계 정비(안 제18조~제31조)

- 투자 타당성평가의 공정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정자격 요건을 갖춘 타당성평가 대행자의 등록제도 도입
- 타당성 평가 Process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타당성 평가서 제출 등 모니터링 제도 도입
- 타당성 평가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 변화 등 여건변화 발생 시 재평가 제도도입

☞ 타당성평가 절차

투자평가 지침고시 → 평가대행자등록 → 타당성평가 및 보고서작성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결과 공개 → (교통수요 변화 등 여건변화시) → 필요시 재평가

<기대효과>

- 투자 타당성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강화 및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한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긴급사태 대응조치(안 제35조)

- 교통수요의 폭증, 중대한 안전사고, 재해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조치 시행 근거 마련

□ 교통물류거점 등에 대한 연계교통체계 강화(안 제36조~제40조)

-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고 지정권자의 책임하에 연계교통체계 구축(5년 단위 계획수립)
 -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계교통시설 소요재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방 연계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및 지방의 비용분담원칙 규정

-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향권”을 설정하여 대책수립

* 영향권(예) : 공항·항만·물류·산단(40km), 도시개발사업(30km)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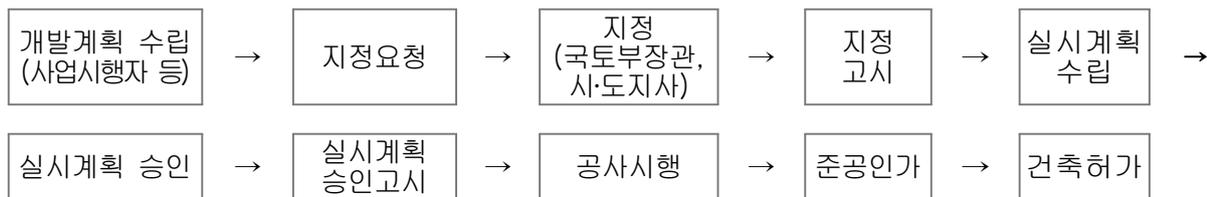
<기대효과>

- 항만, 산업단지 등 교통물류거점의 연계교통체계 강화

□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운영(안 제42조~제67조)

- 지정대상 : 각 교통수단이 연계되는 주요 교통거점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복합환승센터 개발절차>



* 사업시행자 : 공공기관, 민간 법인 등

- 『환승센터의 설계 및 배치기준』에 따라 개발을 의무화
- 복합환승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건폐율·용적율 완화, 각종 부담권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

<기대효과>

- 복합환승센터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이용자의 접근성 제고, 대중교통의 이용활성화 도모

□ 효율적인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운영지원(안 제69조~제86조)

- ITS 종합기본계획 대상범위를 육상, 해상, 항공분야로 명시
- ITS 장비·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표준인증, 품질인증, 표준적용 검증 및 성능평가 제도 도입

- 지능형교통의 체계적인 개발·관리·보급 및 촉진을 위하여 “국가 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 구축·운영
- 전국차원에서 효율적인 교통정보 제공·유통을 위해 교통정보 센터간 교통정보를 상호 연계하도록 함

<기대효과>

- 육상, 해상, 항공분야의 통합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 교통기술 개발지원 강화(안 제93조·제95조 및 제97조)

- 교통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
- 부정행위, 협약위반 등에 의한 연구개발사업자 참여제한 및 신교통 기술의 지정취소 근거 마련

□ 국가교통위원회 등 교통관련 위원회 정비(안 제100조~제104조)

-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앙도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정비

4. 정책별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조정과 효율적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 등을 위해서는 ‘교통수단별 현황’, ‘교통시설의 운영실태’, ‘통행량’ 등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국가교통조사(승인번호 11627호)를 정기(매5년) 또는 수시로 실시

- 다만, 이번 전부개정으로 도입하는 ‘국가교통경쟁력지표 설정’, ‘연계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물류거점 지정’ 등에 대한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는 추가 검토 필요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향후,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교통수단별 현황, 교통시설의 운영실태, 통행량 등’은 『국가교통조사』(승인번호 11627)를 통해 기 구비

- 이번 개정은 법률 전부개정으로 ‘국가교통경쟁력지표의 설정’,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수립’, ‘복합환승센터 개발·운영’, ‘지능형교통체계구축·운영’ 관련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정책과 관련된 필요통계지표에 대한 추가 검토는 시행령개정(안) 단계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예비평가단계를 생략하고 실질평가를 요청토록 조치

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① 평가요청서 접수(예비)

※ 공고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			
제2008-688호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구분	제정		개정		
	법률	대통령령	법률	대통령령	
				○	
정책(제도)명	택지공급제도				
법령의 통계기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필요				
정책(제도)의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의견	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사항은 택지전매제한 완화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통계 개발/개선계획은 필요하지 않음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택지개발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택지개발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협 의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협의기간	2008.11.03부터 2008.11.05까지(02일간)		
	입법예고	2008.11.05부터 2008.11.07.까지(02일간)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법제처와 기협의			
첨부자료	법령자료	법령안 전문 및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제·개정 설명자료			
	정책자료	정책보고서, 정책(제도)에 대한 기타 자료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p> <p><input type="checkbox"/> 정책 목적 및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 허용 <p><input type="checkbox"/>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 금지 ○ (변경) 공공주택을 건축하도록 계획된 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 허용 <p><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건설업자의 유동성 보완
-------------------------------------	---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	○○○	-

* 「※」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기재하지 말 것

② 결과통보서 작성(예비)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989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관련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택지개발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택지공급제도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관련법령 개관 ></p> <p><input type="checkbox"/> 법령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 <p><input type="checkbox"/> 법령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택지의 공급·택지공급가격 기준·택지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p>< 개정내용 ></p> <p><input type="checkbox"/> 금번 개정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 확대 →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전매 허용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금번 개정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안 제13조의3제9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 금지 - (변경)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택지 전매를 허용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사항은 택지전매제한 완화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통계 개발/개선계획은 필요하지 않음</p>
<p>통계청 평가의견</p>	<p>□ “통계지표 관리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개정과 관련된 ‘전매제한 완화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건설경기 현황에 대한 판단과 건설사의 유동성확보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설경기동향, 미분양주택현황, 건축물 건설 현황, 건설업 재무구조 변동현황, 부도 건설업체 현황’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표는 구비하고 있음 ○ 다만, ‘전매제한 완화 정책’의 평가에 필요한 ‘공공 택지 수급자 및 전매현황’은 제도 시행 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u>택지 개발촉진법</u> 제7조(시행자)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3(택지 개발전매제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향후 내부 자료로 구비 가능한 것으로 판단 <p>⇒ 향후 관련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에 활용할 것을 권고함</p> <p>※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평가 검토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람</p>

③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예비)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11.05 ~ 2008. 11.07	
2008 - 989			
법령명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정책(제도)명	택지공급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본 제도와 관련하여 개정추진중인 사항은 택지전매제한 완화에 관련한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통계 개발/개선계획은 필요하지 않음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택지개발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법령의 목적

-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지역의 주택난을 해소

법령 주요내용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

○ 택지의 공급·택지공급가격 기준·택지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9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

□ 금번 개정이유

-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과 미분양 적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경색도 더해져 부실가능성이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우량 건설사의 상당수도 최근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금난 완화와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

3. 개정된 주요 정책 내용

□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안 제13조의3제9호 신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택지 전매를 허용

※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시행령 제13조의3 제1호부터 8호까지)

- 공공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나 아래의 경우 전매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특정시설용지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용지의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해당 택지를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 받은 경우
- 제13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와 해당 택지의 개발 또는 분양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이번 개정은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를 통한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동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전매 현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또한, 동 정책은 전반적인 건설경기 현황에 대한 판단과 건설사의 유동성확보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건설경기동향, 미분양주택현황, 건축물 건설 현황, 건설업 재무구조 변동 현황, 부도 건설업체 현황’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전반적인 건설경기 현황에 대한 판단	- 건설경기동향 · 월별 건설업체의 일반건설 수주액 및 기성액	국내건설수주동향조사(대한건설협회)
	- 미분양주택현황 · 지역별·유형별 미분양 등	국가승인통계11625(국토해양부)
	- 건축물 건설 현황 · 월별 건축허가·착공현황 등	건축물허가통계, 건축물착공통계(국토해양부)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에 대한 성과 평가	- 건설업 재무구조 변동현황 · 건설업주요경영비율	대한건설협회
	- 부도 건설업체 현황 · 지역별 · 월별 현황 등	건설공제조합
공공택지 제한 완화 정책의 평가	- 공공 택지 수급자 및 전매현황 · 공공 택지 수급물량 및 전매물량, 금액 등	제도 시행 후 구비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통계지표 관리권고

-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통계지표는 대부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매제한 완화 정책'의 평가에 필요한 '공공 택지 수급자 및 전매현황'은 제도 시행 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택지개발 촉진법 제7조(시행자)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 3(택지개발전매제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향후 내부 자료로 구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실질평가 대상이나 필요지표는 구비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절차 진행은 불필요

제 2 절

평가유형별 주요 평가

동 절의 평가 사례는 평가결과의 내용-통계개발·개선 필요, 불필요 등-보다는 각 평가결과의 행정적 처리 측면에서의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예비/실질 평가별로 각각 아래 유형별로 사례를 제시 하며, 사례는 각 유형별로 2개씩이다.

☞ 예비평가

1. 평가대상 제외법령
2. 실질평가 면제
3. 시행령 입안 시 평가
4. 통계지표 관리권고
5. 실질평가 대상

☞ 실질평가

6. 원안동의(개발/개선)
7. 사용권고





예비평가

- 가. 평가대상 제외법령
- 나. 실질평가 면제
- 다.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라. 통계지표 관리권고
- 마. 실질평가 대상

가. 평가대상 제외법령(1)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518			
법령명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관련법령	형법		
소관기관	기관명	법무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사회보호정책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노역장유치 대안으로서의 사회봉사제도 도입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input type="checkbox"/> 법령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 <p><input type="checkbox"/> 법령 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형법」 제69조제2항에 대한 특례를 마련 <p><input type="checkbox"/> 제정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법」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에 대한 특례로 사회봉사 도입(안 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에게 노역장유치에 앞서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봉사 신청자격 제한(안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납입의 회피수단으로 사회봉사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그 신청자격을 일정하게 제한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의 사회봉사 허가 여부 결정(안 제5조) ○ 사회봉사 집행 중의 벌금 납입(안 제12조) ○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안 제14조)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본 법령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집행 등 형 집행에 관한 법령으로 통계기반정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령임</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평가대상 “ 제외법령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법령은 형의 일종인 벌금의 집행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刑事)에 관한 것으로, 통계법 시행령 제33조 단서에 따른 평가 제외대상법령에 해당함

가. 평가대상 제외법령(2)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 - 921			
법령명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소관기관	기관명	행정안전부	
	총괄부서 (검토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input type="checkbox"/> 법령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 <input type="checkbox"/> 개정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형벌 합리화 방안에 따라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input type="checkbox"/> 개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형벌의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자유총연맹의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벌금형(100만원) 대신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전과자 양산 방지 등을 위해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한 정부(국경위) 방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할 필요가 없음		
통계청 평가의견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 제외법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법령은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없음 		

나. 실질평가 면제(1)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510			
법령명	원자력법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동법 및 시행규칙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원자력통계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원자력시설에 대한 계량관리검사 규제 완화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 관련법령 개관 ></p> <p>○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 <p>○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원자로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핵연료주기시설 및 핵물질사용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등·방사성폐기물 및 방사성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p>< 개정이유 ></p> <p>○ '08.7.1부터 IAEA 통합안전조치가 국내에 적용됨에 따라 IAEA 통합안전조치 방안에 맞춰 계량관리검사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p>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p><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핵물질을 보유한 시설에 대한 계량관리 검사계획 통보 기(시)간 조정 - 검사개시 10일 전까지 → 검사개시 최소 2시간 전까지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해당사항 없음</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평가결과 : 실질평가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집행 및 평가를 위해서 원자로의 관리·운영 현황, 핵연료주기시설 현황, 원자력관계 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 현황 등의 통계지표가 필요하나, - 금번 개정내용은 검사계획 통보시간 변경 등의 단순 행정 사항으로 통계에 기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나. 실질평가 면제(2)

관리번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결과통보서		
2008-1087			
법령명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관련법령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소관기관	기관명	노동부	
	사업부서 (집행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고용서비스기획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정책(제도)명	근로자 직업안정 도모		
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	<p><정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개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충족 지원으로 근로자의 직업안정 도모 ○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에 관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정보제공 - 직업안정기관이외의 직업소개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직업소개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교육관계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소개) · 유료직업소개사업 - 근로자의 모집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기타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p>< 주요 개정내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안정법」의 목적 문구 변경(안 제 1조) (기존) 노동력의 충족지원→(변경)고용서비스기관의 육성을 통해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원활하게 충족토록 함 		

<p>도입·변경되는 정책(제도)의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소개 정의 확대(안 제4조) (기존)구인 또는 구직 신청→(변경)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 및 모집하는 기능까지 확대 ○ 유료직업소개요금상한제 완화(안 제19조제6항) - 구인자로부터 받는 요금은 당사자 합의하에 결정 할 수 있음 ○ 금품등의 수령의 금지조항 정비(안 제32조) - 유료직업소개를 하는 경우는 금품수령금지조항 적용배제 ○ 형벌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정비 ○ 기타 법 문장용어 정비
<p>실질평가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p>	<p>가격규제 등으로 대형화, 전문화에 한계가 있는 민간고용서비스 기관에 대해 시장가격을 반영한 자율적 직업소개요금 결정을 보장,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므로 실질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p>
<p>통 계 청 평가의견</p>	<p>□ 실질평가 면제</p> <p>금번 개정내용은 행정기관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절차, 과태료 및 양벌규정, 용어순화 및 단순 행정사항으로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됨</p>

다. 시행령 입안 시 평가(1)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9.9 ~ 2008.9.28	
2008 - 578			
법령명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		
관계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정책(제도)명	한국개발펀드 개발·운영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동 법령은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와 관련사항이 없으므로 제외 필요		
소관기관	기관명	금융위원회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산업금융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 법령 목적

- 한국개발펀드를 통해 금융기관 자금중개기능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의 안정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

□ 법령의 주요내용

- 한국개발펀드 설립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펀드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 회계에 관한 사항

□ 금번 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추진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하고,

→ 펀드가 종래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온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는 한편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함

3. 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정자본금 15조원(정부 100% 출자)의 특수법인
- 펀드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펀드의 조직·지배구조
 - 펀드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배구조를 강화

* 펀드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펀드사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9인으로 구성

- 설립 초에는 자산·업무관리를 산은에 위탁하여 조직을 최소화
- 산은 고유업무와 펀드 위탁업무 구분하여 계리

□ 펀드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

- 새로운 방식의 중소기업 정책금융업무
 - 지원업무 : 대출 및 투자*, 채무보증**, 신용위험 유동화
 - 조달업무 : 자금차입, 개발금융채권*** 등의 발행

*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지원 또는 공동지원

** KDF대출과 관련한 보증(50%이내 예정, 업무방법서)

*** 납입자본금+적립금의 30배내에서 개발금융채권 발생

- 산은 정책금융 승계분야 업무 수행
 -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 산업과 정책금융제도 조사·연구, 정부위탁업무 등

□ 펀드의 재무·회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 펀드의 사업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며, 예산(결산)은 운영위의결을 거쳐 금융위 승인(제출)을 얻어 확정
- 손실금의 보전 및 여유금의 운용
 - 결산순이익금은 전액 적립하며, 손실금액이 적립금 초과 시 정부가 이를 보전
- 금융위원회가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명령권 행사

□ 공기업의 주식보유 관련 특례마련

-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분할·이전되는 공기업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펀드의 특수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 마련
 - 공기업법에서 출자주체에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펀드로 변경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한국개발펀드 운영 관련

- 순수정책금융기관으로서 펀드의 운영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아래의 통계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예시)	비고
정책금융 지원 성과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별 중소기업 지원 현황 및 연체율 (금융권별, 중소기업 유형별 대출 현황) •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및 유동화 지원 현황 • 정부의 지급 보증 및 손실보전 현황 •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지원 현황 • 개발금융채권 발행 현황 • 외국자본 차입 현황 	정책금융업무 평가
펀드 운영 실적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펀드 자본 규모 및 수익성, 유동성, 자산 및 부채 현황 등 	주요경영공시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평가의견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동 법률은 펀드운영의 정책 기반 조성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해서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 펀드 설립 및 운영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는 동 시행령 입안 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치계획

- 동 시행령 제정 시에 상기 통계지표(예시)를 구비하기 위한 통계 작성 개선/개발계획을 포함 하여 실질평가를 요청하시기 바람

다. 시행령 입안 시 평가(2)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1099	입법예고기간	2008. 10. 31 ~ 2008. 11. 20	
법령명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안)		
관계법령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책(제도)명	콘텐츠산업 진흥(콘텐츠 제작 활성화, 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콘텐츠 식별체계 업무 수행 기관의 지정 및 위탁,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영세 콘텐츠제작자 지원을 위해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배려 규정 신설 및 콘텐츠유통에서의 제작자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도 통계를 기반 할 필요가 없음		
소관기관	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디지털콘텐츠산업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 목적

-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법령의 주요내용

- 콘텐츠제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콘텐츠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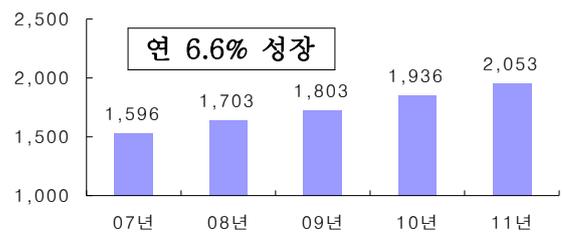
- 2012년 콘텐츠 5대 강국 진입과 국가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 콘텐츠산업 진흥추진 체계 마련
- 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콘텐츠 유통합리화를 촉진하고,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현황 >

	'00년	'07년(P)	연 성장률
매 출	21조원	62조원	16.7%
수 출	5억불	16억불	18.1%
고 용	36만명	52만명	5.4%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통계2008)

< 세계 콘텐츠산업 전망(조원) >



* 출처 : PWC(2008)

3. 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콘텐츠 정의 신설(제2조 제1호)

- 디지털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통합하여 콘텐츠 정의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콘텐츠*로 변경

* 콘텐츠 :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의 자료 또는 정보

□ 콘텐츠 제작 활성화(제8조)

- 콘텐츠 제작자의 창의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마련

-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책 마련
- 분야별형태별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
- 콘텐츠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콘텐츠진흥기금을 지원

□ 콘텐츠산업의 기반조성(제12~16조)

- 콘텐츠산업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투자 등 필요한 지원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그에 필요한 예산지원
-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의 촉진
- 콘텐츠에 관한 표준화 추진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17조)

- 콘텐츠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 콘텐츠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2007년도)>

순위	국가	시장규모	순위	국가	시장규모
1위	미국	6,122억불 (40.1%)	6위	프랑스	643억불 (4.2%)
2위	일본	1,161억불 (7.6%)	7위	이탈리아	430억불 (3.0%)
3위	영국	1,013억불 (6.6%)	8위	캐나다	378억불 (2.5%)
4위	중국	955억불 (6.3%)	9위	한국	368억불 (2.4%)
5위	독일	882억불 (5.8%)	10위	스페인	323억불 (2.1%)

※ 출처 : PWC(2008)

□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제18조)

-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세법이 정하는 방에 따라 조세감면 등
-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융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지원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사업(제21조)

-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우수 콘텐츠의 유통 촉진을 위한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 사업 실시

- 기술능력, 재정능력, 설비 및 장비 기타 필요한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제22조)

- 온라인 콘텐츠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을 인정해주는 사업을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및 사업운영기준 마련

□ 이용자의 권익보호(제26~28조)

-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이용자 보호지침의 준수 실태조사, 이용자의 피해예방 및 구제 등을 실시
- 이용자 보호지침의 제정 등
- 콘텐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

□ 콘텐츠에 관한 분쟁 조정(제30~35조)

□ 콘텐츠진흥기금 설치(제36~38조)

- 기금의 조성
 - 정부의 출연금 및 용자금, 정부 이외의 자의 출연금 및 용자금
 -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전파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할당대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방송법 제37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징수액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

- 기금운용 등에 따른 수익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
-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 기금의 운용

- 콘텐츠의 기술개발 및 제작·표준화 지원
- 콘텐츠 진흥정책관련 연구·조사·기획 지원
- 콘텐츠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 콘텐츠제작 활성화 및 콘텐츠제작자에 대한 지원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 콘텐츠 유통합리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국가 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콘텐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콘텐츠 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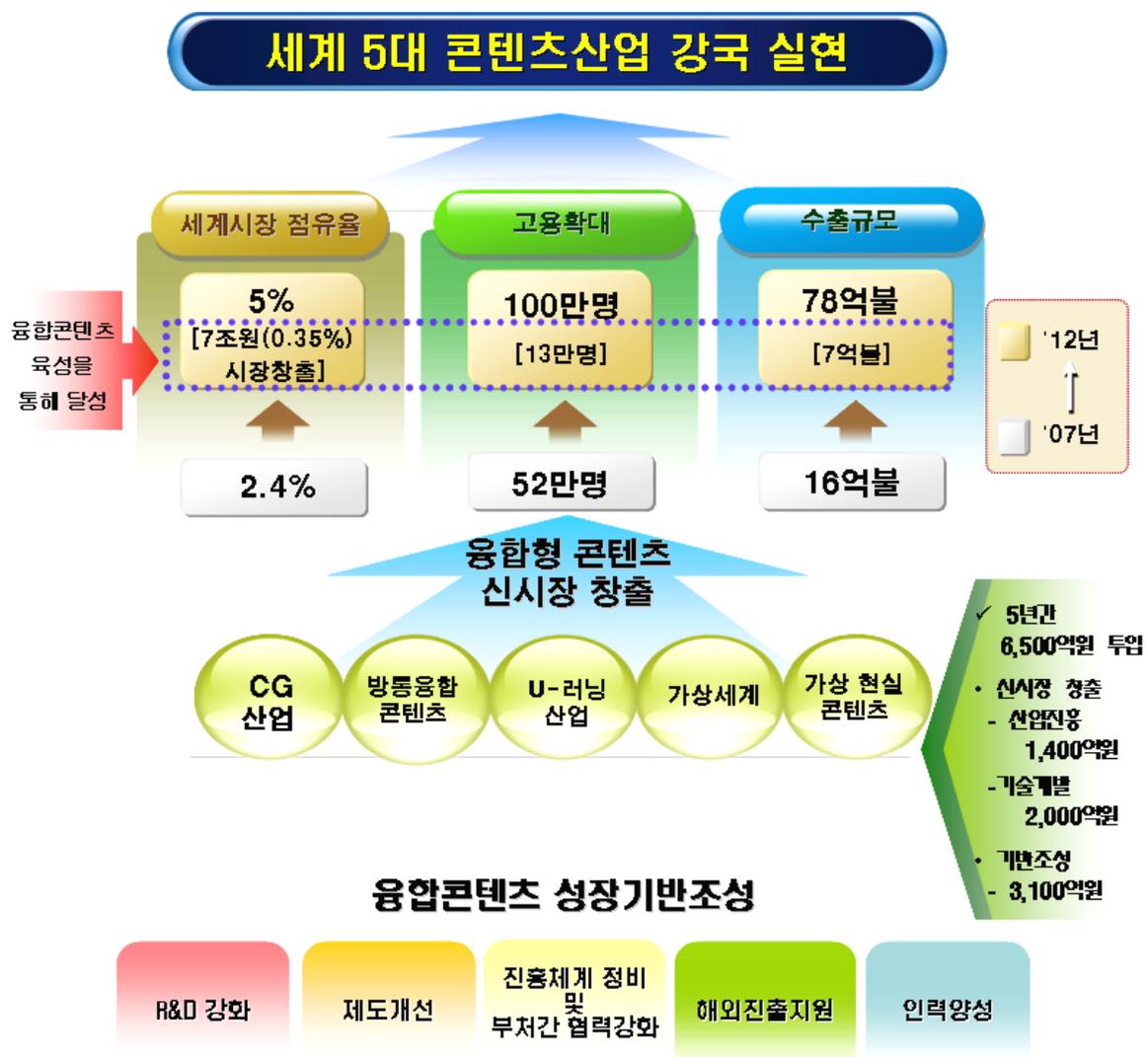
□ 기타사항

- 법률 명칭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콘텐츠 산업진흥법」으로 변경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제6조)
 - 국무총리 소속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로 변경
- 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제15조)
 - 콘텐츠관련 기술개발 및 개발기술의 이전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텐츠기술연구원 설립
- 표준계약서 마련 등(제25조)
 -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콘텐츠사업자에게 대한 사용 권고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제29조)

-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

◆ 5대 차세대 융합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실현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 국가전략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콘텐츠산업의 활성화	• 국내 콘텐츠산업 일반현황(매출액, 영업비용, 부가가치, 수출입액, 종사자수 등)	문화산업통계 개선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국내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현황(창업, 전문인력 양성 등)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세계 콘텐츠산업 전망	PWC

□ 콘텐츠산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 지표를 관리할 필요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효율적 지원	• 콘텐츠사업의 수출입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실적	
	•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	PWC

□ 콘텐츠 거래사실 품질인증

-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우수 콘텐츠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우수 콘텐츠의 유통 촉진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현황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예시)	출처
콘텐츠서비스의 품질관리	•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현황 •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진흥기금 설치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아래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예시)	출처
콘텐츠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	• 콘텐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실적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사항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콘텐츠기술연구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이 없음
- 표준계약서, 이용자 보호지침 제정, 표준계약서 및 약관 마련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 또는 단순 행정사무에 관한 내용으로 통계에 기반 할 필요성이 없음

5.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시행령 입안 시 평가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상기 제시한 통계지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동 법률안은 아래의 사항을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 하도록 위임하였기 때문에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행령 입안 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분야별·형태별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시책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콘텐츠진흥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라. 통계지표 관리권고(1)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1103	입법예고기간	2008. 11. 20 ~ 2008. 12. 11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건축법,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등		
정책(제도)명	건축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특이의견 없음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건축기획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법령의 필요성

-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

법령 내용

-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건축계획·설계·허가·착공·시공 등)
-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에 관한 사항
-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 창의적 디자인으로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물과 단지형 다세대주택 및 초고층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 전통사찰 등의 건축 시에 대지의 접도의무 제외 대상을 확대
- 농가의 재정부담 경감과 편의를 위해 축사(畜舍) 등은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등 상주감리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
- 그 밖에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3. 개정된 주요 정책 내용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안 제15조제5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공장의 간이포장용 및 간이수선용 등을 위한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에 포함

□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제91조의3 제1항 및 제2항)

- (현행) 1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변경) 16층 이상, 기둥과 기둥사이가 30m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 안전의 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기능등급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협력해야 할 관계전문기술자 조정

현 행	변 경
-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등에 급수·배수·난방 및 환기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u>건축기계설비기술사</u> 또는 <u>공조냉동기계기술사</u> 의 협력을 받아야 함	-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물 등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승강기 등의 시설: <u>건축전기설비기술사·발송배전기술사</u> •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 등의 설비: <u>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u>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안 제106조제2항)

(현행)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중 특례적용 대상을 일부용도 및 규모(별표3)에 국한 → 다양한 특별건축구역 개발에 한계

(변경) 특별건축구역에 특례적용대상 건축물을 용도와 관계없이 연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

□ 건축기준 완화(안 제6조제1항)

○ 첨단제조시설, 전통사찰, 창의적 디자인 건축물 및 초고층 건축물, 도시지역이 아닌 동·읍지역의 건축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피난 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공개공지확보 기준 등 일부 건축기준 완화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에 적합한 건축기준 합리화(제6조의3)

(현행)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창호 등의 구성재는 교체할 수 있을 것

(변경)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또는 개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통보 및 존치기간 연장 허가신청 기한 규정(안 제15조제10항)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신청 시기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규정

-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8조항)
 - (현행) 농가의 소규모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의 일부가 건축사에 의한 설계대상에 포함
 - (변경)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작물재배사 및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은 설계대상에서 제외

- 대지안의 조경기준 제외대상 확대(안 제27조제1항)
 - (현행)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지역의 건축물은 조경시설 설치
 - (변경) 관광단지, 종합·전문휴양지역, 골프장 등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지역 건축물은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조경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공개공지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27조의2 제3항)
 - (현행) 공개공지등에는 긴의자 또는 파고라등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
 - (변경) 공개공지등은 공개공지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대상 변경 (안 제32조제1항)

(현행) 표준모듈에 따라 지어지는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함

(변경) 1천제곱미터 이상인 축사·작물재배사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에서 제외, 지진구역안의 건축물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대상에 포함

□ 기타 변경 사항

- 자동화생산시설 공장의 직통계단 설치 기준 완화(안 제34조제1항)
-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안 제34조제3항)
-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안 제40조제3항)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안 제86조제2항 및 제5항)
- 근린생활시설 간의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14조제4항)
-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의 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제117조제2항)
- 건축면적·바닥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범위 확대 (안 제119조제1항)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재분류(안 별표 1)

4.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당초 예비평가로 요청되었으나, 통계기반 필요성과 함께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도 함께 검토

- 이번 개정은 건축정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건축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는 '용도별·층수별 건축물현황(국가승인통계116611), 건축허가현황(국가승인통계11605), 건축물착공현황(국가승인통계11601) 등'에 관한 통계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이외에도 세부 정책별로 살펴보면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용도 확대'와 관련하여 가설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용도별·구조별 가설건축물현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조정'과 관련하여 '기계·전기·건축분야 기술사 현황'과 협의대상이 되는 '건축물현황(층수별, 면적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확대'와 관련하여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현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지표	현황 및 출처
건축정책의 집행·평가	- 건축물 현황, 건축허가현황, 건축물착공현황 등	건축물현황(국가승인통계116611) 건축허가현황(국가승인통계11605) 건축물착공현황(국가승인통계11601)
가설건축물의 관리	- 가설건축물 현황 · 구조별, 용도별 등	- 건축행정시스템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신고)
건축관련 관계기술 전문가 인력 관리	- 기계·전기·건축분야 기술사 현황	- 자격검정정보망(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축물 현황 · 층수별·면적별 등	- 건축물통계 (국토해양부, 국가승인통계11611)
특별건축구역 관리	- 특별건축구역 현황 · 특별건축구역 지정·변경 등	- 특별건축구역제도 2009.1.1 시행

5.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통계지표 관리권고

-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정책의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는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다만, '특별건축구역 현황'은 동 제도의 시행 이후에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정책이 시행되면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지정) 및 제71조(지정절차)에 따라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우리청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할 것을 권고

라. 통계지표 관리권고(2)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8.25. ~ 2008. 9.16.	
2008 - 542			
법령명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시행령		
정책(제도)명	백두대간 보호 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백두대간 보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산림현황 등 통계가 필요하나, 금번 개정안은 위원회 폐지 및 운 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으로 통계를 기반 할 필요가 없음		
소관기관	기관명	산림청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산림환경보호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법령의 목적

-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

법령주요내용

-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매수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 이유

- '07.10.1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 보완
 -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매수 청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08. 5.27. 국무회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 에 따라 백두대간 보호위원회 폐지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관련규정 정비
- '07.11.29.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
 - 양벌규정 개정

백두대간 일반현황

- ◇ 길이 및 체계
 - 총길이 : 1,400km (백두산 장군봉~지리산 천왕봉)
 - 남한에서의 길이 : 684km(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지리산 천왕봉)
 - 대간체계 : 1대간(大幹) 1정간(正幹) 13정맥(正脈)
- ◇ 행정구역
 - 6개도(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32개 시·군의 108개 읍·면·동 통과
- ◇ 산림현황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지역으로 천연림을 잘 간직하고 있음
 - 임목축적 106m³/ha('05년말 전국 평균 : 79m³)
 - 천연활엽수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혼효림도 1/3를 차지

3. 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 (현행)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사유 토지 매수 시 토지위의 정착물이 있는 경우 정착물에 대한 보상 방법 없음
- (변경) 사유 토지 매수 시 토지위의 건축물 또는 과수 등의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백두대간보호지역 토지의 매수가 활성화되어 사유재산권 보호 강화
- 백두대간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생태축 보전 기능 강화 도모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로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3항, 제11조, 제14조 제1항)

○ (현행)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침

○ (변경)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있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

○ (기대효과)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되어 백두대간보호 정책의 심의·조정 업무 처리절차 간소화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정비(안 제10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로 조문정비

○ (기대효과)

- 법률 조문 정리로 업무 혼선 방지

□ 양벌규정의 개선(안 제16조)

○ 위반행위자의 고용주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단서에 면책조항 추가

○ (기대효과)

- 법인 등 고용주 처벌의 실효성 확보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 매수대상 확대 관련

-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은 달성하고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사유지 현황, 사유지매수 현황 등을 관리 할 필요

필요판단	필요 통계지표	조사항목	비고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목적 달성	

□ 다음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조문정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통계를 기반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 백두대간보호위원회 폐지로 행정절차 간소화
-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정비
- 양벌규정의 개선

5. 평가의견 : ‘통계지표 관리권고’

□ 동 법령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백두대간보호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 등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다만, 실질평가 대상이나 통계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인 실질평가 절차 진행은 불필요

⇒ 향후, 우리 청이 제시한 통계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 정책에 활용 할 것을 권고함

마. 실질평가 대상(1)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8. 08. ~ 2008. 8. 28.	
2008 - 660, 661			
법령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폐기물관리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정책(제도)명	고품질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의 변경 없이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용어 정의 신설,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 순환골재 재활용용도 및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사용실적 통계조사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체계 구축,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기준 완화 및 영업정지 처분사항 구체화 등 법령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소관기관	기관명	환경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산업폐기물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 목적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국민경제발전, 공공복리증진 기여

□ 법령의 주요내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강구
 -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발 등의 지원
 -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 재활용 통계조사 실시(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환경부장관)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 건설폐기물의 분류·처리기준 마련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한 사항
 -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위한 전산처리기구 설치·운영
- 건설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마련
 -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 발주 시 순환골재 사용의무
 - 순환골재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 방치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공제조합 등에 관한 사항

□ 금번 개정이유

○ 법률

- ◆ 공공기관에서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의무화,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무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시행령

- ◆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확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개정된 주요 정책 내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38조, 제39조)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으로서, 성토용·복토용, 도로보조기층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도로기층용 등으로 활용

-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에 기존 순환골재에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추가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및 재활용 정의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 순환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재생 아스콘, 콘크리트 제품 등)
- 재활용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등을 건설공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서의 사용의무

- 재활용 기본계획, 연구개발 지원,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 및 재활용통계조사 대상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의무사용기관 및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대상기관 확대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 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업체) 포함

○ **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 확대 및 개선(시행령 안 제4조)**

- 순환골재 재활용용도를 기존 도로공사용 순환골재 외에도 주차장, 농로 등의 표토용 순환골재 등으로 확대하되, 폐아스콘은 고부가 가치 및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도로공사 위주의 용도로 한정

○ **고품질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순환골재의 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의한 도로중 4km 이상 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개발촉진법」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지조성사업, 그 밖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설공사 등으로 확대

□ **건설폐기물 관련 일반적인 사항 개정**

○ **건설폐기물의 종류 추가(시행령 안 제2조 별표 1)**

- 현행 폐콘크리트 등 17종 이외에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 밖에 폐기물(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제외) 포함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추가(시행령 안 제6조)**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파쇄·분쇄시설, 탈수·건조시설 해당

○ **건설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안 제6조)**

- 건설오니를 제외하고는 전부 고형인 건설폐기물 특성에 따라 분리 배출방법을 기존 성상별·종류별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로 변경

□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위한 관련 규정 개정**

- 건설폐기물의 불법 투기·매립 금지, 법령 위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 명령 근거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안 제13조, 제13조의2)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개선(시행령 안 제9조)**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분리·선별, 파쇄·분쇄)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과 성상이 같으므로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운반 허용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개선(시행령 안 제10조, 별표 3)**
 -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가 과다하여 감점요소에 맞추어 조정. 가령, 대통령표창 이상인 경우 현행 +3점에서 +1점으로 변경

■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으로 함

- $\text{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 = \text{용역이행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pm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신인도평가액} = (\text{실적평가액} + \text{자본금평가액} + \text{기술능력평가액} + \text{경력평가액}) \times \text{신인도반영비율}$

- **전자인계서 작성·입력 의무화(안 제18조, 제19조 및 제32조)**
 -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및 처리현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의무화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종이)인계서 작성 • 3년간 보관 •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 장부의 비치, 기록, 보관의무 등 면제 •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의무화

□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개정 사항**

- **건설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추가(시행령 안 제13조)**
 - 방치폐기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건설폐기물 처리기간 및 보관량,

보관기간 준수 의무 추가

○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신설(안 제22조)

- 현행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은 변경신고 하도록 완화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대상 구체화(안 제25조, 제26조)

- 법제처 법령정비 요청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대상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와 재활용실적보고 통합(안 제34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개정 사항

○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안 제58조)

- 국가사무를 위탁받은 공공투자·출연기관, 관련 협회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사후관리조사 업무 일원화(시행령 안 제29조)

-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상태 조사업무를 국토해양부가 지정 고시한 기관(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 그 밖의 개정 사항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의무 신설(안 제57조)

○ 수수료 징수대상에 변경허가 추가(안 제60조)

○ 벌칙규정 정비(안 제62조 내지 제66조)

○ 과태료규정 정비 및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시행령 안 제30조 별표 5)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촉진 관련

- 금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순환골재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고품질 재활용 촉진 정책의 집행·평가를 위해서 순환골재재활용 제품 생산업체 현황·생산량·사용량 등을 관리할 필요

□ 기타 건설폐기물 종류 추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개선, 건설폐기물처리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통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임

5.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실질평가 대상

□ 동 법령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고품질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평가를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 등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위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정책의 지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필요한 지표의 구비여부 또는 미구비 지표의 개발/개선 계획에 대하여 동 문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실질평가 요청하시기 바람

마. 실질평가 대상(2)

예비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2. 18 ~ 2008. 3. 9	
2008 - 47			
법령명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관계법령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정책(제도)명	사이버대학 설립·운영정책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통계기반 정책관리 실질평가 대상		
소관기관	기관명	교육과학기술부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지식정보기반과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정책의 필요성

- 온라인(원격)강의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난립으로 사이버대학의 설립에 대한 정비가 필요
-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학사관리 등 운영의 충실성 확보 및 고등교육 기관으로써의 사이버대학의 위상 제고

정책의 추진경과

- 가상대학의 운영 및 필요성 제시(교육개혁위원회 보고, 96.8.20)
- 2001년 9개 사이버대학 개설
- 실태조사 결과 학사관리 부실 및 회계부적정 확인(2005.7월)

- 원격대학 제도개선 논의(규제개혁기획단 장관회의, 2006.3.31)
-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법 개정(2007.10.17, 2008.4.18 시행)

3. 제정 이유

사이버대학의 설립과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이버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방지하고 원격교육에 대한 이원화된 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4. 정책 및 제정의 주요내용

□ 정책의 주요내용

○ 사이버대학 운영의 이원화

-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사이버대학 : 평생교육법의 적용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운영(학위 부여 불가)
- 고등교육시설로서의 사이버대학 : 고등교육법의 적용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학위 부여 가능)

· 기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인 경우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사이버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으로 전환 신청 필요

※ 평생교육시설로서의 사이버대학이 일반대학과 설립주체 차이점

-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도 평생교육시설 설립 가능

※ 고등교육법 적용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의 혜택 및 규제

구분	내 용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위수여 및 대학원 설립 가능 -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의 운영 가능 - 행정·재정적인 지원 다양화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의 학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예산·결산·회계 정기보고 의무화

-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 기준 마련
 - 사이버대학 및 특수대학원의 설립기준 마련
 - 교사·교원·수익성 기본 재산의 확보 기준 제시

□ 제정의 주요내용

-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안 2조, 3조)
 - 기준 : 설립주체는 사이버대학설립계획서, 校舎, 교원, 수익성기본 재산 등의 기준을 갖추어 신청
- 사이버대학원의 설치 기준 및 절차(안 4조)
 - 기준 : 교육용, 연구용 및 실습용 시설설비 확보사항, 교원확보 사항 등을 기재한 대학원설립신청서 제출
-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5조)
 - 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구성
- 교사·교원·수익성 기본 재산의 확보 기준(안 6조 ~ 8조)
 - 교사기준 : 입학정원 기준으로 [별표]에 의한 기준면적 이상 확보
 - 교원기준 : 전공별 학생수 200명당 전임교원 및 조교 각각 1인 확보
 - 재산기준 : 연간 운영수익총액*의 50% 이상의 수익성기본재산 (최소 35억원** 이상) 확보

* 학생수*학생 1인당 평균 연간수업료*1.5(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평균확보율)

** 학생수 1,000명 기준

[별표]

구분	교육 기본 시설	지원 시설
교사범위	대학본부 및 행정실, 교수실, 강의실, PC실습실, 세미나실, 콘텐츠개발실	서버 및 통신장비관리실, 시스템운영실
기준면적	입학정원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 - 1,000명 미만 : 990㎡ - 1,000명 ~ 2,000명미만 : 1,485㎡ - 2,000명 ~ 3,000명미만 : 1,980㎡ - 3,000명 이상 : 2,475㎡	

- 평생교육시설 법인의 사이버대학으로의 전환 절차(안 13조)
 - 교사·교원·수익성 기본 재산의 확보 기준을 갖추어 신청

5. 평가의견 : 실질평가 대상

- 「사이버대학설립·운영규정」 제정안은 사이버대학(원)의 설립 운영 및 절차에 관한 법령이며, 사이버대학(원)의 설립운영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통계지표가 필요한 면에서 통계기반 정책 관리 실질평가 “대상”

정책 내용	관련 지표	비고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 사이버대학 현황 - 학력별 신입생 추이 - 사이버대학 입학정원 및 등록추이	안 2조
- 사이버대학원 설립운영	- 사이버대학 졸업자 현황 - 사이버대학원 입학생 현황	안 4조



실질평가

가. 원안동의(개발/개선)

나. 사용권고

가. 원안동의(개발/개선-1)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7. 31 ~ 2008. 8. 22	
2008 - 553			
법령명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건강검진기본법		
정책(제도)명	국가건강검진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인 시행 및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통계기반 정책관리가 필요함		
소관기관	기관명	보건복지가족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건강증진과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 「건강검진기본법」의 제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통합 관리
 -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제, 평가제 도입 등으로 부실검진 방지

□ 법령 목적

-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 법령의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 검진기관의 지정, 검진기관의 평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국가건강검진 비용의 청구 및 심사·지급 등

3. 제정된 정책의 주요내용

< 시행령 >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시행령안 제2, 3, 4, 6조)

- 위원회의 역할
 - 소관부처별 다양한 건강검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심의·의결 기구
 - 한정된 재원의 최적 배분 사용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대상자, 항목 등의 선정) 마련과 각계의 이해관계 조정

※ 검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은 질병 예방에 따른 의료비 절감액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안(총 15인)

- 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 위원 :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이 균형적으로 참여하도록 구성

소관부처(4)	학계(2)	수요자(3)	공급자(2)	기타(3)
- 보건복지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 - 노동부 - 기획재정부	- 건강검진 연구 경력이 충분한 자	- 소비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 - 근로자 대표	- 검진기관 대표 - 의사회 추천자	- 사업주 대표 - 학교장 대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자 대표)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업무의 지원(시행령안 제5, 9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5조)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 등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구성·참여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각계 추천을 거쳐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

○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의 운영(안 제9조)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
- 소속기관에서 담당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이 가능

※ 전문위원회는 의뢰받은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은 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여 보고서를 작성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시행령안 제7, 8조)

- ① 위원회에서 종합계획 작성지침 확정 →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건강검진 계획안 작성·제출
- ②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종합계획안 작성 → 위원회 의결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③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부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별도의 지역계획 수립 없이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검진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해당사유 규정(시행령안 제10조)

○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의 필요성

- 현행 신청제에서는 부실 검진기관 관리 및 퇴출이 곤란
 - '07년 부당검진 건수 : 약 52,000여건
 - '04~'07년 부당검진 1회 이상 지적 받은 검진기관 : 전체의 56.8%
- 지정취소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검진기관의 질관리 유도 필요

○ **검진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기준의 방향**

- 검진비 환수, 민원 발생 사례 등 부실검진 유형을 분석한 후 명백한 부정이거나 수검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선별
- 불필요한 규제나 처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배제

법률 제16조제1항	시행령(안) 제10조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검진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
2.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국가건강검진임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검진 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실시한 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한 때	4. 지정현황에 변경이 발생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진기관 평가를 거부하거나 현지 확인을 거부한 때
	6. 건강검진 업무에 관여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가 「의료법」 등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때

□ **검진자료의 수집·관리·개인정보 보호 등(시행령안 제11, 12조)**

- 검진자료의 수집과 통계 작성은 「통계법」에 따라 실시하고, 검진자료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
-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에 대해 피검자의 동의를 필하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 전 동의 철회 여부 확인

□ **수검자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등(시행령안 제13조)**

- 건강검진 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수검자에게 자비 부담 내역인 확진 검사·상담료 등을 지원
- 확진 비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의사자유족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
-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시행규칙 >

□ 검진기관의 지정기준(시행규칙안 제4·5조)

- 법 제정 취지 상 부실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되, 검진기관 진입기준은 현행 요양급여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을 인정

- 1차 의료기관이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접근성을 제고

⇒ '08. 6. 30일 현재 검진기관수 : 2,800개 기관(전체 요양기관 중 9.8%)

- 의원에 한하여 검체검사의 위탁과 장비 공동이용을 허용

※ 위탁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도 관리 성적을 참고하여 권역별로 지정

- 구강검진기관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희망하는 구강검진 기관만을 대상으로 지정기준 신설

- 검진의 편의, 접근성 제고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출장검진만을 인정하고, 출장검진의 편익이 있는 특정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시 허용

⇒ 전체 부실검진의 40.5%('07)를 차지하는 출장검진 문제점 개선

□ **검진기관의 지정절차 등(시행규칙안 제6, 7조)**

- 대상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은 7일 이내에 현지 방문 확인 후 지정 결과를 통지
 - 검진기관 지정 자진철회 및 지정내역 변경시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필요시 현지 확인
- 시·군·구 보건소에서 관내 검진기관 현황 모니터링
 - 공단은 검진기관 지정·변경 현황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제출
 - 검진기관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처분 업무 수행 시 참고

□ **검진기관의 평가(시행규칙안 제10조 내지 제14조)**

- (도입 취지) 국민들에게는 검진기관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진기관에 검진 질관리의 필요성 및 방법에 대해 관심을 유도
- (평가지기·방법 등)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이 구비할 사항을 2년 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구분	일반평가	전문평가
대상	일정 기준에 의해 선별된 검진기관 ※ 세부적 선별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	일반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평가 주체	공단에서 평가단 구성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서 전문평가단 구성(전문가 포함)
평가 방법	서면조사(필요시 방문조사)	방문조사
평가 주요내용	검진기관 구조적 현황, 수검 환경, 청구 자료 분석을 통한 정확도, 신뢰도, 성실성, 수검자 만족도 등	검체 검사의 정도관리, 영상검사의 질관리, 검진 의사의 업무수행 평가 등
세부 평가지표, 지침 개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개발	

- 평가 결과의 공개
 -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대중매체에 공개하고, 검진기관의 선택 편의를 위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 정보를 공개

4. 정책별 통계지표 필요성 검토

□ 검진기관의 지정기준,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관련

- 국민건강검진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래의 통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국민건강검진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변경현황 • 검진기관 지정취소 현황 • 부당 검진기관 현황 및 부당 검진건수 	행정자료로 기구비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검진기관 지정현황 • 출장검진현황(출장 검진 사전승인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보건복지가족부)

□ 검진자료의 수집·관리 관련

- 검진자료의 수집·관리를 통한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건강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검질결과 분석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검진 결과 질환별 유질 환율 • 암검진 수검률 	건강검진결과분석 (보건복지가족부)

□ 수검자 의료비 지급의 대상·기준 관련

- 저소득층 등에게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검자 의료비 지급 지원실적, 정밀검사비 지원현황, 의료급여 수급 현황을 관리할 필요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검자 의료비 적정 지급을 위하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지급 지원실적 • 의료급여 수급자 정밀검사비 지원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보건복지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급여 수급 현황 	의료급여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 검진기관의 평가 관련

- 국가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관리 및 공개를 통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래의 통계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필요 판단	필요 지표	출 처
검진기관 평가결과 관리 및 공개를 통한 질 향상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검진기관 현황 • 부실 검진기관 현황 • 검진기관 평가결과 현황 	행정자료로 작성 필요 (보건복지가족부)

□ 기타사항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관련사항은 행정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통계를 구비할 필요성이 없음
- 건강검진종합계획과 검진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통계를 구비할 필요성이 없음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소관기관과의 협의내역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8. 4 (실질평가 면제로 요청)
- 예비평가결과 통보 : 2008. 8. 12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8. 25
- 필요 통계지표에 대한 협의내역

필요지표 (통계청 제시)	보건복지가족부 검토의견	통계청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변경현황 • 검진기관 지정취소 현황 • 부당 검진기관 현황 및 검진건수 	원안동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강검진기관 지정현황 	구강검진기관은 전체검진기관의 5%정도로 그 비중이 낮아 지표로서의 중요도가 떨어짐	구강검진기관은 전체검진기관의 5%정도로 그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국민건강검진기관현황에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검진현황(출장검진 사전승인현황) 	출장검진 관리체계도 필요하며 출장검진현황 작성은 동의하나 사전승인현황 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출장검진 사전승인현황은 동 정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수검률 • 건강검진 결과 질환별 유질환율 • 암검진 수검률 	원안동의	-

• 검진결과 활용(생활습관형태)*	원안동의(건강검진 문진정보를 통한 생활습관행태조사 제안)	원안동의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지급 지원실적 • 의료급여 수급자 정밀검사비 지원현황	임의규정이고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지표로 확정 곤란	동 관련사항이 임의규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여부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필요지표에서 제외함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급 실적*	원안동의(건강검진 수검자 등의 의료비지급실적 작성 제안)	원안동의
• 의료급여 수급 현황	원안동의	-
• 우수 및 부실검진기관 현황 • 검진기관 평가결과 현황	원안동의	-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지표임

□ 통계지표 관련 검토의견

- (소관부처 의견)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비평가에서 통계청이 제시한 통계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 (검토 의견) 동 정책의 집행에 필요한 통계지표를 제시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검토의견에 동의함

□ 통계개발/개선 계획 관련

- (소관부처 의견) 행정보고를 통하여 ①건강검진 지정·취소, ②부당 검진기관, ③출장 건강검진, ④검진결과 분석(건강검진 수검현황), ⑤검진결과 활용(유질환 현황, 생활습관형태), ⑥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급실적, ⑦검진기관 평가 관련 통계를 개발할 계획임

통계개발 세부 계획

□ 건강검진 지정·취소현황

- ◆ 조사대상(보고체계) :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사사항
 - 검진기관 지정·취소 조사
 - 요양기관 수

- 검진기관 지정·취소건수
- 검진기관 업무정지건수

◆ 작성주기 : 1년(공표시기: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보건소 업무정지·지정취소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10)
- 보건소-공단 DW 연계 전산망 구축('10)

※ 법 시행 후 1년 간 경과조치 기간이 있어 실질적인 검진기관 처분은 '10년부터 가능

□ 부당 검진기관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사항

- 검진기관 취소 사유 유형별 현황
- 월별 부당 검진기관 현황

◆ 작성주기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보건소 업무정지·지정취소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10)
- 보건소-공단 DW 연계 전산망 구축('10)

□ 출장 건강검진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사항

- 출장 건강검진현황

◆ 작성주기 : 1년(공표시기: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보건소 업무정지·지정취소 업무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10)
- 보건소-공단 DW 연계 전산망 구축('10)

□ 검진결과 분석(건강검진 수검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사항

- 건강검진 대상자
- 건강검진 수검자
- 종류·지역·성·연령별, 월별 및 연도별 수검현황

◆ 작성주기 : 1년 (공표시기: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국가건강검진 결과 분석 지표 개발('08)
- 질병관리본부,공단, 암센터 간 통합 지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09년 상반기)
- 분석 결과 발표('09년 하반기)

□ 검진결과 활용(유질환 현황, 생활습관형태)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사항

- 건강검진결과 유질환현황 조사
 - 건강검진 수검자
 - 건강검진종합판정 시 유질환자
 - 지역·성·연령별로 구분한 월별 및 연도별 유질환현황
- 건강검진의 문진정보를 통한 생활습관행태 조사
 - 건강검진 수검자
 - 음주, 흡연, 비만 고위험군자
 - 지역별, 성·연령별로 구분한 연도별 음주율, 흡연율, 금연율 및 비만율

◆ 작성주기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국가건강검진 결과 분석 지표 개발('08)
- 질병관리본부,공단, 암센터 간 통합 지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09년 상반기)
- 분석 결과 발표('09년 하반기)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급실적

◆ 조사대상(보고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가족부

◆ 조사사항

- 의료급여수급자 현황
- 건강검진 수검자 현황
- 의료비 지급현황
- 지역·성·연령별로 구분한 월별 및 연도별 의료비 지급현황

◆ 작성주기 : 1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5월)

◆ 추진일정

- 국가건강검진 결과 분석지표 개발('08년)
- 질병관리본부,공단, 암센터 간 통합지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성('09년 상반기)
- 분석 결과 발표('09년 하반기)

□ 검진기관 평가현황

◆ 조사대상(보고체계) : 질병관리본부·공단·국립암센터 → 보건복지가족부

- ◆ 조사사항
 - 검진기관 평가 참여기관수
 - 우수검진기관수
 - 부당검진기관수
 - 검진기관 평가 결과
 - 요양기관종별로 검진기관 평가
- ◆ 작성주기 : 2년(공표시기 : 사업연도 익년 5월)
- ◆ 추진일정
 -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관 평가안 확정('09년 하반기)
 - 평가 실시 및 평가안에 따른 평가 결과지표 개발('10)

○ (검토 의견) 동 개발계획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주기, 추진일정,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이견 없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시한 통계지표는 행정보고를 통해서 필요 통계지표의 작성 및 신뢰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6. 평가 의견 및 조치 계획 : 원안동의(개발/개선 합의)

- 국가건강검진의 효율적인 시행 및 검진기관의 질 관리를 위하여 상기 통계지표가 필요하며,
- 소관부처에서 제시한 통계개발계획을 통하여 동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절한 통계가 구비될 것으로 판단됨

가. 원안동의(개발/개선-2)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342	입법예고기간	2008. 6. 5. ~ 2008. 6.24.	
법령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계법령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등		
정책(제도)명	국토의 이용·개발·보전(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실질평가에 대한 법령 소관기관 의견	동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현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등 실질평가 대상임		
소관기관	기관명	국토해양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도시규제정비팀
		담당자 작성명/ 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이유

□ 정책(제도)의 필요성

- 인구밀집, 난개발 우려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정책(제도)내용

-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 수립·사업에 관한 비용부담원칙
-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금번 시행령 개정이유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06.8.17. 삭제 후) 재도입된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의 시행('08.9.29)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기준의 탄력적 적용,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등 법령의 일부 미비점 보완 및 토지이용제도 개선

3. 정책의 주요 내용

법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현황'등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하므로 예비평가결과를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통계심사과-1178호)
 ⇒ 국토해양부에서 추가로 실질평가를 요청한 건인 바, 통계구비가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에 대해서만 검토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시행령안 제64조 내지 제70조)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규정하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08.3.28)와 동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함

【기반시설부담금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비교】

구 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舊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담금명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기타 시장·군수 인정 시설
부과·징수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부과 대상	○ 전국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 부담구역내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부담금 귀속	○ 국가(균특회계) 30% 지자체(특별회계) 70%	○ 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 전액 지자체에 귀속

구 분	기반시설부담금제 (舊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구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권자 : 시장·군수 ○ 의무지정 대상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제한 완화·해제지역 -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지역 -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역 임의지정 가능 ○ 구역지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면적 10만㎡ 이상 - 연접개발 예상 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 - 구역경계는 도로·하천 등으로 명확히 구분 ○ 구역지정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구역지정(안) 마련→주민의견청취→지방도시계획위심의→결정·고시
비용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 납부: 부과 후 2월 이내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 건축허가 후 2월 이내 ○ 납부: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부담금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자체내 사용 -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구역 내 사용 -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 등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현황’의 통계지표가 필요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사용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수행하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대상기준·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가 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필요 통계지표】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비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의 운영 및 관리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현황	제도시행 후 구비필요

-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시행(’08.9.29)과 함께 동 지표를 관리할 필요
 - 제도 시행 이전이므로 통계지표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나 제도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지정현황’을 관리할 필요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실질평가요청 시 국토해양부에서는 ‘연도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현황’을 필요지표로 제시하고 개선계획을 제출
 - 동 통계지표는 도시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지구지정현황, 도시계획 시설현황 등과 함께 도시계획 및 관리측면의 기본적인 통계로 유용하다는 의견제시

<연도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현황> 개선계획>

- 보고목적 : 도시계획 및 관리를 위한 기본통계
- 보고체계 : 시·군·구 →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입력 → 한국토지공사 → 국토해양부 『도시계획현황』(승인통계: 승인번호 11638호)에 포함하여 작성
- 보고사항 : 도시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건수 및 지정면적
- 보고주기 : 수시입력
- 추진일정 : ’08.9.29. 제도시행과 함께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에 ‘연도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현황’ 입력양식을 추가

□ 개선계획에 대한 검토

평가항목	평가착안사항	평가결과
통계지표의 적합성 평가	■ 정책(제도)별로 통계지표가 제시되었는가?	제시됨
	■ 제시된 통계지표만으로 정책(제도)의 집행 / 평가가 충분한가?	구역지정제도 운영 관리에 충분함
	■ 통계지표가 부적절한 경우, 대체할만한 다른 통계지표는 있는가?	해당없음(제도시행으로 통계자료 생성)
	■ 제시된 통계지표가 기존 통계조사 또는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 가능한가?	가능함(UPSS를 통해 『도시계획현황』 작성 중)
	■ 통계지표가 행정보고를 통해 작성되는 경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작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음 (매년 'UPSS 사용자 지침서' 발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실시: '08.4.29~4.30)
통계개발 / 개선계획의 타당성 평가	■ 통계개발/개선계획을 통해 필요한 모든 통계지표의 작성이 가능한가?	가능함
	■ 통계개발/개선계획은 적절한가? - 조사목적, 조사대상, 주요 조사사항, 작성 주기 등	적절함
	■ 개발/개선된 통계지표의 공표 시기는 적절한가?	적절함(『도시계획현황』에 포함하여 작성)
	■ 필요한 통계지표를 생산하고 있는 기존의 통계조사와 중복되지 않는가?	중복되지 않음
	■ 개발/개선계획이 타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해당기관과 충분히 협의되었는가?	해당없음
	■ 중앙행정기관이 통계개발/개선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상기 평가기준을 토대로 개발·개선계획을 마련,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개발·개선 계획이 합의되었는가?	해당없음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최종 평가의견 : “원안동의”

- 국토해양부가 실질평가 요청 시 제시한 ‘연도별 기반시설부담 구역 지정현황’은 법령개정으로 도입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의 운영·관리에 적합한 통계지표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함께 제출한 <‘연도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현황’ 개선 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08.9.29. 제도시행과 함께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에 ‘연도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현황’ 입력양식을 추가하고 관련 입력지침을 보완하여 시·군·구에 통보하는 등 시스템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

나. 사용권고(1)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관리번호 2008 - 509	입법예고기간	2008. 7. 21. ~ 2008. 8. 11.	
법령명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관계법령	동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정책(제도)명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본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 정책은 제도적으로 통계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나,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을 위한 각 단계별 신고사항 및 장부기록관리 등에 의한 자료와 정보보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어 정책 시행과정에서 데이터 등을 자체 관리하므로 통계기반 실질평가 대상이 아님.		
소관기관	기관명	농림수산식품부	
	협의부서	부서명(과/팀명)	축산물위생팀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

2. 관련 법령 개관 및 제정 사유

□ 법령의 목적

-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

⇒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쇠고기 안전성을 확보하여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 법령주요내용

- 소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 귀표의 부착에 관한 사항
- 개체식별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
 - 개체식별번호,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암수구분 등
-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제정이유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07.12.21. 공포, '08.12.22 시행)
 -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와 표시사항을 규정
 - ※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는 동법 시행일 6개월후인 '09. 6.22 시행
- ⇒ 시행령 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제정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

□ 개념

- 소와 쇠고기의 생산·도축·가공·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
 -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번호가 표시된 귀표 등을 부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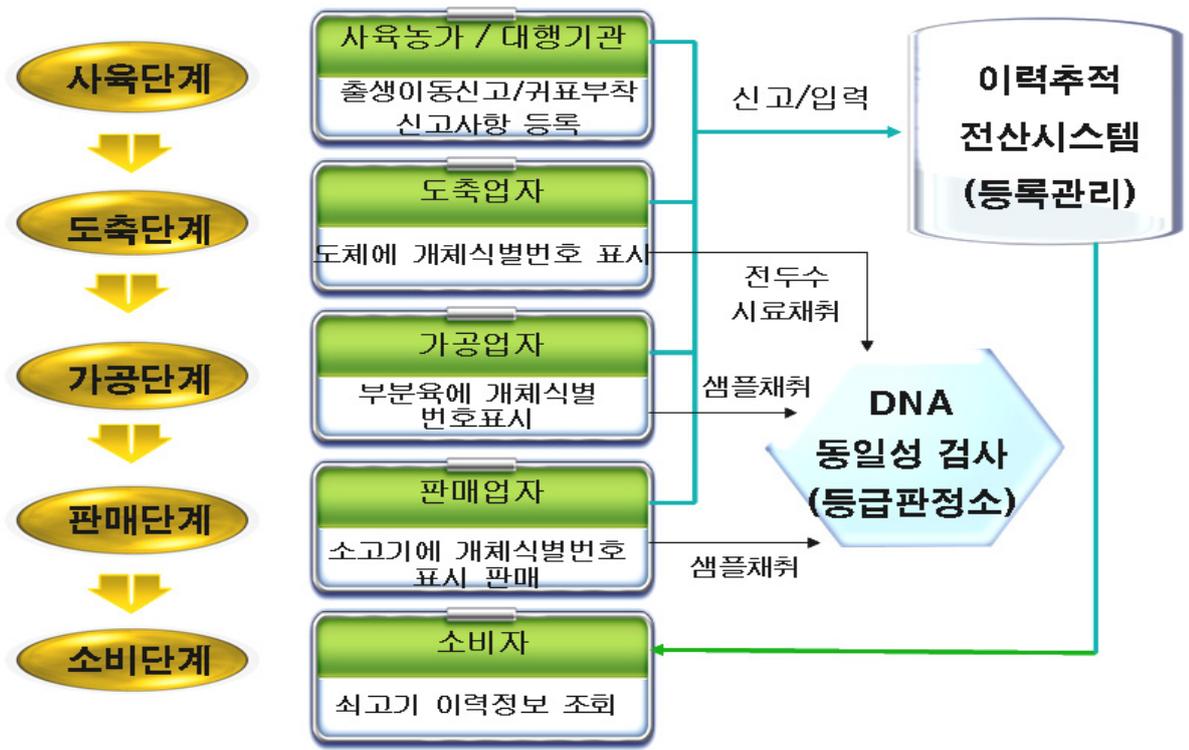
- 도축이후 유통단계부터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거래
- 도축장에서 DNA검사용 샘플을 채취·보관하여 유통되는 식육과 대조 확인 검사

※ '04.10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범사업 시행하고 있으며, '08.12.22일부터 모든 소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뒤 다른 축산물로 확대 시행할 예정

□ 도입배경

- 최근 유럽에 이은 일본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이력추적제 도입 필요성 제기
- 국제적으로도 광우병 파동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Traceability 우선 도입, 점차 농산물로 확대 추세

□ 추진체계



□ 정책의 주요 내용

① 사육단계

○ 신고 및 귀표부착

-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하거나 거래(양도·양수·폐사·수출입 등) 하였을 때 지역의 대행기관에 30일 이내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 대행기관은 소에 대해 고유의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 전산시스템에 입력
- 대행기관에서 신고한 농가를 방문하여 귀표를 부착(30일 이내)

② 도축단계

○ 도축장에서는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도축업자는 도축 의뢰된 소의 귀표 부착여부와 개체식별대장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도축, 위반 시 도축금지
- 귀표 미부착 및 개체식별이 곤란할 경우 검사관에게 신고
- 검사관은 도체의 위생검사 합격여부를 입력하고,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등급판정 결과를 입력
- 도축된 도체에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고, 도축 결과는 개체식별대장에 즉시 전산 입력

③ 가공단계

○ 식육포장처리장에서는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부분육 또는 그 포장지에 해당 쇠고기의 개체 식별번호가 기재된 라벨을 부착
- 다수의 개체식별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때 묶음번호 사용가능
- 식육포장 처리한 실적과 판매·반출한 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자체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5일 이내)

- 구매자 요청 시 부분육 등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교부

④ 판매단계

○ 판매장에서는 해당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 표시

- 식육판매업자는 쇠고기 또는 판매표시판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판매
- 부분육 등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된 거래 내역서를 기록하고 보관
- 구매자 요청 시 부분육 등 판매 시 개체식별번호를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교부

⑤ 정보공개

○ 소비자는 판매장내 터치스크린,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정책의 기대효과

- 위생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신뢰도 제고로 국내 소 산업 발전에 기여
-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여부 검토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 대상인 가축사육 및 관련업체 기초 현황자료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가축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도축·가공·판매업체 현황, 농가등록 현황, 축산물등급판정 현황,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
-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쇠고기 이력추적 제도의 근본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쇠고기 이력추적 단속실적, 가축 출생 및 이동 실적에 대한 통계를 관리할 필요

□ 통계지표 구비여부

- 상술한 통계지표 대부분은 구비하고 있거나, 동 제도 추진실적으로 구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필요 통계지표 정리】

필요 판단	필요 통계지표	주요 항목	비고(출처등)
정책 대상 기초 현황 파악	가축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지역, 축종, 규모, 가구수, 마리수 등	가축통계조사 (통계청)
	도축·가공·판매 업체 현황	지역, 구분(도축/가공/판매), 사업체수 등	행정자료
	농가등록 현황	농가등록번호, 사육현황, 소의 종류별 사육두수 등	행정자료 (농가등록제 자료)
	축산물등급판정현황	등급판정두수, 등급별 두수, 등급별 가격 등	축산물등급판정통계 이력추적시스템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 및 비율 등	행정자료 (원산지표시단속실적)
제도 준수현 황 파악	쇠고기 이력추적 단속실적	점검회수, 점검 및 위반 업체 수, 위반내용 등	행정자료
사업목표 달성률 파악	가축 출생 및 이동 신고 실적	규정기간이내 신고두수 및 신고율, 폐사두수, 도축두수, 이표부착실적 및 부착률 등	이력추적시스템

5. 소관부처 요청서 검토

◇ 소관부처와의 협의내역

- 예비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7. 22 (실질평가 면제로 요청)
- 예비평가결과 통보 : 2008. 7. 28 (실질평가 대상으로 통보)
- 실질평가 요청서 접수 : 2008. 8. 11(통계지표 미제시)
- 외부전문가 자문 : 2008. 8. 13 ~ 8. 27
 - 가축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등 11개 통계의 필요성 제시
-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협의의견 발송 : 2008. 8. 29
- 협의의견에 대한 회신 접수 : 2008. 9. 5
 - 추가 협의(e-mail, 담당사무관) : 2008. 9. 9 ~ 9. 10.

□ 통계지표 관련

- 농림수산식품부는 당초 실질평가 요청시 동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통계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우리청 협의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해 7개 통계지표*의 필요성에 동의

* ①가축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②도축·가공·판매업체 현황, ③농가등록 현황, ④축산물등급판정 현황, ⑤원산지표시 단속실적, ⑥쇠고기 이력추적 단속실적, ⑦가축 출생 및 이동 실적

- (검토 의견) 농림수산식품부가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은 4개 통계지표* 중 'DNA 일치율' 통계는 제도 정착후 필요성 등 재검토 필요

* ①종축거래실적, ②운송차량 지정현황, ③DNA 일치율, ④쇠고기이력정보 확인실적

- 동 지표는 쇠고기 도축이후 가공·판매단계의 DNA 동일성을 파악

하는 것으로 이력추적 실패 정도를 판단하는 등 동 제도의 효율적 집행 및 성과평가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다만, 제도 도입 준비 단계인 점을 고려, 제도 정착 후 검토가 효율적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평가 의견 : 사용권고

- 동 법령 제정으로 도입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물식품부가 필요성에 동의한 상술 통계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다만, 'DNA 일치율'은 제도 도입준비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제도 정착후 지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재검토 권고

나. 사용권고(2)

실질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1. 일반사항

※ 관리번호	입법예고기간	2008. 2.19 ~ 2008. 3. 10	
2008 - 46			
법령명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법령	동법 및 시행규칙,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법		
정책(제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제도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정책(제도)의 통계기반 여부에 대한 부처의견	동 제도는 통계기반정책관리제도의 관리 대상 제도임		
소관기관	기관명	중소기업청	
	협의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정책총괄팀
		담당자 직·성명/전화번호	○○○

2. 관련법령 개관 및 개정 사유

□ 법령 목적

-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와 중소기업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 법령 주요 내용

-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
- 중소기업 경영기반 확충
 - 협동화 사업

- 협업 사업
- 입지 지원사업과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 국제화 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중소기업진흥공단

□ 금번 개정내용 및 이유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도 위험성이 있는 어음 및 외상매출 채권 수취에 따른 거래 안정망 확보
- 중소기업 고유의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후계자에게 원활히 승계하여 가업계승 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개정내용에 따른 주요 정책 내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안 제8항 신설)

<기존 제도 내용>

- 종전의 어음보험을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하여 보험가입대상을 어음 외에 매출채권까지 확대('04년)
 - 가입한도 : 업체당 10억원까지(매출채권보험 및 어음보험 포함)
 - * 상품별 한도 : 매출채권보험 10억원, 어음 8억원

<변경 정책 내용>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
 - 기존 매출액 150억원 이하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매출액 150억 이상 중소기업*도 동 제도상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약 11,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가입대상에 포함(가입대상 확대/변경)

☞ 기대효과 :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

□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정책 도입(안 제54조의2 신설)

○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지원센터 운영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

- 정책 대상 : CEO 55세이상으로서 업력 15년 이상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가업승계 비용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컨설팅 지원, 후계자 양성 등

☞ 기대효과 :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속적 성장에 기여

4. 필요 통계지표 및 구비 여부 검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대상 확대>

□ 필요 통계지표 검토

◇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수행,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

* 중소기업연구소 ○○○ 부원장

○ 동 제도의 실행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규모, 보험료율 산출을 위한 관련 통계자료와 본 정책의 평가를 위한 매출채권 가입중소기업 현황 파악 필요

- 이를 위해 매출채권규모, 어음부도율,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및 사고율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 특히 매출채권규모 파악과 보험료율 산정을 위해 동 지표들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산업별, 규모별 등 세분화하여 작성할 필요

구분	중소기업 업체수	부도율	매출채권 (받을어음)	매출액	보험료	대손 상각비
산업별						
기업 규모별						
매출액 구간별						
지역별						

※ 산업별: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기업 규모별: 10인 미만, 10-19인, 20-49인, 50-99인, 100-199인, 200-299인, 300인 이상

매출액 구간별: 분석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8-10 구간으로 나눔.

□ 통계지표 구비 여부

○ 개정 사항 중 중소기업매출채권대상 확대 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지표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구비되어 있음

- 다만, 산업별, 규모별 등 세분화된 지표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입수 및 작성이 가능하나, 미구비 상태

【집행·평가에 필요한 통계지표】

필요 판단	통계지표	자료출처
보험인수대상 파악	매출채권규모	신용보증기금
보험료율 산출	어음부도율, 매출채권인수규모 및 사고율	신용보증 기금 및 한국은행
제도 성과측정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현황	신용보증기금
제도 개선	매출채권, 부도율, 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별, 규모별 등 상세 자료	미구비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기초자료 확보 가능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정책 도입>

필요 통계지표 검토

- 동 정책과 관련한 가업승계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정책지원 대상을 파악하기 위해 가업승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가업승계지원 대상 중소기업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가 필요

통계지표 구비 여부 : 없음

5. 소관부처 요청서 내용 검토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대상 확대>

(부처 의견) 중소기업청은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어음부도율 및 매출채권보험 사고율과 매출채권보험 가입 중소기업 현황 등 4개 통계지표의 필요성과 기구비하였음을 제시

(검토 의견) 중소기업청 제시 통계지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의

- 다만, 향후 제도 개선 시 동 지표들을 매출채권, 어음 및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한 자료를 작성, 활용할 것을 권고

※ 실무 협의 결과, 동 자료들을 작성, 활용키로 동의하였음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정책 도입>

(소관부처 의견) 증기청은 가업승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 지표의 필요성 및 동 개발 계획 제시

【행정조사 개발 상세 계획】

조사대상(보고체계)

- CEO 55세이상, 업력 15년 이상된 중소기업(가업승계 예정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및 유관기관 DB활용(약 100,000개)

조사(보고)사항

- CEO연령, 기업업력, 생산제품 등 기업일반 현황
- 가업승계에 대한 견해 및 애로요인
-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과제

작성(보고)주기 : 1회

추진일정 : 조사표 설계 및 조사 실시(2008.4월) → 자료처리 및 공표(2008.5월)

(검토 의견) 가업승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 지표는 동 조사를 통해서 작성 가능하며,

○ 개발계획의 신뢰성, 조사항목의 타당성, 주기 등도 이견 없음

6. 평가의견 및 조치계획 : “사용권고”

중소기업 매출채권정책에 대한 향후 제도개선(매출 관련 통계 및 보험료율 산정 등)을 위해 세분화된 통계지표를 추가로 작성, 사용할 것을 권고

다만 중소기업청이 제시한 가업승계 지원대상 중소기업 현황지표 개발/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원안동의



제 3 장

개발 · 개선 및 자문 사례

동 장은 지난 2008년 기간 중 동 제도 운영결과로 정리된 통계 개발 · 개선 계획 내용과 자문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통계 개발 · 개선 계획은 각 부처의 최종 확인을 거쳐 향후 중기 국가통계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게 된다.

▣ 제1절 개발 · 개선 사례

▣ 제2절 자문 사례

1. 총괄표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현황 및 결과, 추적조사조치현황, 위해식품회수현황 통계 개발
”	식품위생법 전부개정안	식품안전관리현황, 조리사자격소지자 현황, 부당이득환수현황 통계 개발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식품이력추적 관리 등록현황 및 등록업체 지원현황 통계 개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연도별 보건교육사 인원현황 통계 개발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건강검진지정·취소현황 등 7개 통계 개발
”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안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현황, 생물테러 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예방물품비축현황 통계 개발
”	약사법 일부개정안	임상시험신고현황 등 통계 개발
”	의료법 일부개정안	의료기관 및 병상현황 통계 개발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및 구비 현황 통계 개발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난자제공자 건강검진 현황, 기관생명 윤리심의위원회평가결과 현황 통계 개발
”	암관리법 전부개정안	완화의료기관 지정·취소·평가결과 현황 통계 개발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현황, 연계연금수급자현황 및 급여종류별지급 실적, 연계에 따른 연금제도별 재정수지 현황 통계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 통계 개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업종별 미용업소 실태현황 개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우선구매미달 사유별 시정요구 현황 등 통계 개발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현황, 가족친화기업 인증현황,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현황 통계 개발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다문화가족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현황 등 12개 통계 개발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결혼중개업체 현황 개발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긴급전화운영실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등 통계 개발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료연구개발 및 지원기관 현황, 입주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및 입주기관 지원현황 통계 개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실적 통계 개발
"	아동청소년복지법 전부개정안	아동청소년 빈곤율 등 2종 통계 개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취소현황,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현황 등 12종 통계 개발
국토해양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 펀드 및 Reits의 미분양 매입 임대 현황 통계 개발
"	건축법 시행령 제정안	에너지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현황 통계 개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보상유형별(현금·채권·토지)보상실적, 부채부동산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실적 통계 개발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지분형 임대주택현황 통계 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현황 통계 개발
"	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접도구역지정현황 통계 개선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실적 현황조사, 전문인력배출 현황조사 통계개발
"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현황 통계 개발
지식경제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산업환경통계 개발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방폐물발생량 및 보유현황, 방폐물관리 비용 및 부담금징수현황 등 7개 통계 지표 개발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미활용특허현황 기구비, 신탁관리 특허현황, 기술이전·사업화현황 개발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전시산업등록자현황 통계 개발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지식경제부	우편법 일부개정안	우편사업 운영현황, 우편시장 점유율 통계 개발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소비자피해현황, 로봇펀드의 운용현황,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현황 통계 개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해외한식당현황,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등 통계 개발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수산동물질병현황, 수산동물검역실적 통계 개발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음식점원산지표시 위반단속현황 통계 개발
"	농지법 일부개정안	한계농지현황 통계 개발
"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새만금 담수 수질현황 등의 통계 개발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시설운영 현황 통계 개발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 통계 개선
"	고등교육법 시행령/한국전문대학교육 협의회법 개정안	대학별 입시제도 운영관련 시정요구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통계개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 통계 개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통계 개발
환경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현황, 재이용사업자의 하·폐수처리수재이용공급실적 통계 등 개발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지정현황,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부여 현황 개발
"	수도법 일부개정안	병입수돗물 판매현황, 수도용 자재·제품 인증실적,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설치 현황 통계 개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생산업체 등 4종 통계 개발

소관 부처	법령 명	통계 개발·개선 내용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품의 환경성 정보 현황 통계 개발
"	환경보전법 시행령 제정안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현황 등 통계 개발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안	자동차 평균배출량 현황 등 7종 통계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내방객 현황, 여행업자 지원현황, 전문교육기관 지원현황, 안내센터 지원현황, 관광통역 안내사 고용 현황 통계 개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립박물관 자료보유현황 및 등록 통계 개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테마별 박물관 현황 통계 개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호텔숙박 외국인관광객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현황 통계 개발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성희롱 시정권고 현황,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현황 등 6개 통계 개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조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통계개발
행정안전부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안	국가정보화 분야별 정보화지수 통계 개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현황, 콘텐츠 사업자 현황, 가입자 현황 등 14개 통계 개발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방송통신산업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현황, IPTV 관련 통계 개발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 현황 통계 개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의 통계 개발
기획재정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안	차입·채권발행현황, 위탁자산 투자 현황 등 통계 개발

2. 통계 개발·개선 계획 상세내용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안전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검사명령제 대상식품* 규정 및 사후조치 규정 마련 * 위해성 평가결과, 국민건강 위해 발생가능 식품 및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 식품 - 추적조사 도입에 따른 기록·보관대상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업종 : 식품제조·가공·수입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등 · 기록·보관대상 : 제품명, 판매·구입일자, 유통기간 등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명령제 대상 식품 현황 및 결과, 추적조사조치현황, 위해식품회수현황 등 3종 통계지표 개발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전산망 구축 3~6개월 소요)

□ 식품위생법 전부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 마련 및 기타 제도의 미비점 보완 - 긴급조사체계 구축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도입 - 조리사면허제도 개선 : 현행 조리사면허제도 폐지 → 업소 개설 및 취업 시 조리분야 자격증 및 건강진단서 제출 - 부정·불량식품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안전관리현황, 조리사자격소지자현황, 부당이득 환수현황 통계지표 개발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 계획 제시, 전산망 구축 3~6개월 소요)

□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식육 원산지 표시 확대 및 식품이력 추적 관리 제도 도입 【식육원산지 표시 확대】 - (적용범위)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12.22일부터) - (적용대상) 100㎡ 이상 일반음식점* <li style="padding-left: 20px;">* 최근 모든 음식점으로 적용대상 확대 동향 【식품이력 추적 관리 제도 도입】 - (대상) 식품이력 추적관리를 희망하는 자 - (등록사항) 영업소 명칭, 제품명, 유통기한, 품질유지 기한, 보존 및 보관 방법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현황 및 등록업체 지원현황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통계개발 세부계획 제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보건교육사 관리 - 보건교육사* 1~3 등급별 자격기준 마련 <li style="padding-left: 20px;">* 보건정보 수집 및 분석, 보건교육사업의 기획과 프로그램 작성, 보건교육 등 수행을 위한 국가자격 ←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09년부터 신설 -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절차, 국가시험 시행방법 등 규정 마련 ○ (통계지표) 연도별 보건교육사 인원현황 통계 개발계획 제시 → '10.3. 국가자격시험 실시와 더불어 작성
----------------------------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국가건강검진 제도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부는 매년 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의무 - 건강 검진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요건 규정 - 질환 의심 수검자에 대한 확진 비용 지급 ○ (통계지표) 건강검진수검률, 건강검진결과 질환별 유질환율, 의료급여수급현황 등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지정·취소현황 등 7개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정책단계별 통계 개발계획 제시)

□ 전염병 예방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전염병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명 등 변경 : 전염병예방법과 기생충질환예방법을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신설 : 제5군감염병, WHO감시대상 감염병, 지정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의료관련감염증 - 생물테러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약품·장비 비축근거 마련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평가를 위해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고위험 병원체 안전관리 현황, 생물테러 감염병 및 감염병 대유행 예방 물품비축현황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정책단계별 통계 개발계획 제시)

□ 약사법 일부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임상시험활성화 및 의약품 품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임상/임상/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기관 지정 제도 도입 * 기존에는 식약청이 직접 시험, 그 결과를 인증 -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 일부 시험에 한하여 임상시험 신고서 제출 시 승인 등 절차 없이 시험 실시 가능 ○ (통계지표) 시험 실시기관 지정현황, 의약품허가현황 등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시험신고현황 등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 (개발계획 제시, 2010년부터 작성)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 기존 9개 구별을 의원급·병원급의료기관 및 조산원으로 대분류 · 특히 종합병원 개설기준 강화(100병상 이상→300병상 이상) - 의료인 면허 시험응시자격 확대 : 의학·치의학·한의학 각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의료업을 위한 출연 재산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업종제한 폐지 ○ (통계지표) 의료기관 부대사업현황, 연도별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학력별 현황 통계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및 병상현황 통계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 (개발계획 제시, '09년부터 추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의무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와 기준 규정 ○ (통계지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 및 구비 현황* 개발 <p>*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기관 현황,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면허 및 자격증별 관리책임자 현황 등 조사</p> <p>- 조사주기 3년, 매년 3월 공표, 행정조사 개발계획 제시</p>
------------------------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전 및 인체위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자제공자 건강보호 : 난자제공자의 건강검진 기준*, 난자채취 빈도제한(평생 3회), 난자제공자 실비보상 기준 *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등 13개 항목 의무화 - 유전자은행*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부과 등 * 유전자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전정보를 수집·보존하여 직접 이용 또는 제공하는 기관(현행 25개)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관련 의료기관별로 설치하는 연구·치료행위·과정의 윤리문제를 심사, 결정하는 위원회(현행 500여개) ○ (통계지표) 유전자은행현황,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결과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난자제공자 건강검진 현황, ②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평가결과 현황 통계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①은 '09년, ②는 '09년 이후 작성)</p>

□ 암 관리법 전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말기암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증 및 증상완화, 신체적·심리적 영역의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료행위 -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 -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의료 제공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 여부와 완화의료 질적 관리 실시 현황 등 평가 ○ (통계지표) 암발생률, 암사망률, 의료기관 및 병상현황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화의료기관 지정·취소·평가결과 현황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2010년부터 작성)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국민연금과 職域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를 통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근거 및 기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 및 재직 기간을 연계, 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의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희망시 · 대상기간 :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재직기간 합산 ○ (통계지표) 국민·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재정 현황, 장래추계인구, 합계출산율, 노인부양비 통계 등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연금 간 이동자 및 연계신청자현황, ②연계연금수급자 현황 및 급여종류별지급실적, ③연계에 따른 연금제도별 재정수지현황 통계 개발계획 제시 → ①,② 사업연도 익년 3월, ③ 사업연도 익년 7~8월 공표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도입(7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험요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및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등 규정 ○ (통계지표) 부담액, 급여실적, 재정수지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요양 급여대상자, 장기요양기관 지정현황 추가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통계 개발 계획 제출)</p>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08년부터 피부미용사 자격제도 도입과 함께 미용업을 종합, 일반, 피부미용업으로 세분화하여 관리 ○ (통계지표) 업종별 미용업소 실태현황 세분화
------------------------	---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중증장애인 고용 및 생산품 판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요건 및 지정취소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근로자의 70%,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의 60% -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시행 의무(총 구매액의 1/100 이상) ○ (통계지표) 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액, 장애인직업재활 및 장애인복지시설현황, 등록 장애인현황 통계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우선구매 미달 사유별 시정요구 현황 등 4개 통계 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p>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08.6월부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에게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탄력적 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는 직장 환경 ○ (통계지표) 정책 평가지표로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실태 (개발), 가족친화지수(개선)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집행 관련, 가족친화 인증기관 및 지원센터 지정현황, 가족친화기업 인증현황, 가족친화형 마을 조성현황 지표를 추가 작성할 필요 <p>→ 부처 협의를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2개 지표 외에 상기 3개 지표를 추가 작성하기로 협의 완료</p>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사회통합 제고 -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기본정보 제공, 한국어교육실시 등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립 근거 및 절차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근거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현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현황 등 12개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통계개발 세부계획 제출)</p>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08.6.15일부터 결혼중개업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부여 ○ (통계지표) 결혼중개업체 현황*(개발) * 중개업체 신고·등록업체 수 및 폐업 업체수·영업기간 등 조사 - 주기 1년, '09. 3월부터 공표, 행정조사 개발계획 제시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긴급전화 설치 확대 : (현행)복지부· 시도 → (변경)시군구 추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요건, 운영기준,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기준 규정 및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관련업무 명문화 ○ (통계지표) 아동학대현황, 要保護아동발생 및 보호조치현황, 아동상담현황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운영실적,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등 통계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의료산업의 촉진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1개소를 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구개발기관의 기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지역·지정·해제·규제특례 등 요건 규정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구개발 및 지원기관 현황, 입주기관 인력 및 시설현황 및 입주기관 지원현황 개발 계획 제시 → 부처협의 완료(통계개발 세부계획 제출). 다만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2012년 이후 완료되므로, 그 이후 작성 예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행 및 프로그램의 구성·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 교육 및 홍보의 대상·내용·방법 등 ○ (통계지표)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실적에 대한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2 작성완료 예정
----------------------------	--

□ 아동청소년복지법 전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아동청소년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 등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구축 * 취약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에게 보건, 보육, 복지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특별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 *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경제·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 (통계지표) 아동청소년학대현황, 아동청소년가출실태, 아동청소년인구현황, 要보호아동청소년현황 등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빈곤률 등 2종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10년 작성예정)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실험동물의 과학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지정 - 우수동물실험시설 및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 실험동물 공급자의 범위 지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우스, 토끼, 햄스터 등을 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 수입, 판매하는 자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취소현황,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현황 등 12종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10년 작성예정)</p>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지방 미분양 중형아파트 활용 촉진을 위해 리츠·펀드 등 민간자금이 지방 미분양 중형아파트를 취득·임대시 세제지원* * '08년 1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 및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0% 추가과세 배제 요건 완화(적용 면적 및 가격 상향 조정) ○ (통계지표) 주택건설현황, 미분양주택현황은 기구비, 민간 펀드 및 Reits의 미분양 매입임대 현황의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p>→ 2009. 1. 작성완료 예정</p>
----------------------------	--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등급을 평가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도입 ○ (통계지표) 에너지 성능등급 인증서 발급현황 개발 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기관이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성능등급을 평가하여 국토해양부에 분기별로 보고 → '08. 12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련 고시 마련, '09. 4. 인증실적 통계작성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채권보상의무대상자인 부채부동산소유자의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보상을 감축하여 부동산시장 안정 도모 - (기존) 사업인정고시일 → (변경)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 ○ (통계지표)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실적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유형별(현금·채권·토지)보상실적, 부채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보상실적 개발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완료('09.1월부터 집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 임대차계약 → 입주 → 1차 지분취득 → 2차 지분취득 → 분양전환 -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 (현행)단독주택 5호, 공동주택 5세대 → (변경)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 매입임대주택 사업 세제지원 요건 : 임대기간 7년 이상, 주택면적 149㎡ 이하, 취득 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통계지표) 임대주택사업자현황, 미분양주택현황 구비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형 임대주택현황 통계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09년부터 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 이상 신·증축 모든 건축물에 부과하던 기반시설 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도입 → 특정 지역내 건축물에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개발 등 활성화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반시설부담금제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담금명</td> <td>○ 기반시설부담금</td> <td>○ 기반시설설치비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반시설</td> <td>○ 도로,공원,녹지 등 7종</td> <td>○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기타 시장·군수 인정 시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과·징수권자</td> <td>○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위임)</td> <td>○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부과대상</td> <td>○ 전국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td> <td>○ 부담구역내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통계지표 작성을 위해 기존의 행정자료보고시스템 개선 계획(제도시행일인 '08.9.29까지 반영) 	구 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담금명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기타 시장·군수 인정 시설	부과·징수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부과대상	○ 전국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 부담구역내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구 분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부담금명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도로,공원,녹지 등 7종 ○ 기타 시장·군수 인정 시설														
부과·징수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시장·군수 등에 위임)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부과대상	○ 전국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 부담구역내 200㎡ 초과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 도로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도로체계 정비 및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속·일반국도 등 도로 종류 재정비 - 도로 점용료 납부 시 분할 납부 등 편의 제고 → 전부 개정안이므로, 법령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 ○ (통계지표) 도로현황, 도로교통현황, 도로보수현황, 도로 점용허가현황, 지가변동률, 접도구역지정현황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지정현황 통계 개선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완료(개선계획 제시, '09. 1.부터 추진)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통·공간·방재 등의 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주요기능별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 대상사업 및 규모 :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에 적용 -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지원 : 건설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의 기준 제정, 예산 보조 또는 융자 근거 마련 ○ (통계지표) 유비쿼터스도시건설실적, 전문인력양성현황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실적 현황조사, 전문인력배출 현황조사 통계개발 필요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08.9.이후 추진)

□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국제 추세에 맞추어 국가적 차원의 항공기 소음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7월부터 5년 주기로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및 이들 지역의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 김포 등 5개 공항은 지정 완료, 연차적으로 적용 예정 -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통계지표) 공항별 소음피해(예상) 지역지정 현황,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현황(미구비), 항공기 등록현황, 사업자별 위반현황 등 8개 지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현황을 제외한 7개 지표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7월부터 시행되므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저소음 운항절차 위반현황 지표를 추가 작성하도록 권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환경 통계 작성 및 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국내·외 환경규범대응 실태 파악 -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현황 파악 - 국내기업의 자원생산성 및 환경경제효율성 파악 등 ○ (통계지표) 생태산업단지 현황 기구비, 업종별 환경경제 효율성, 국내외 환경규범대응실태, 청정생산 및 기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환경통계 개발 계획 제시
----------------------------	--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폐물관리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의무 - 방폐물 관리 사업자, 시설 운영기준,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규정 ○ (통계지표) 방폐물발생량 및 보유현황, 방폐물관리비용 및 부담금징수현황 등 7개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방사성폐기물 실태조사 계획
----------------------------	--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미활용 특허 사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신탁 업무범위 신설 : 특허료관리, 특허권보호 관리, 권리의 이전, 기술료 징수·분배 - 특허신탁관리업의 허가기준 신설 : 허가증 발급, 업무 규정 또는 약관변경시 승인 의무화 ○ (통계지표) 미활용특허현황 기구비, 신탁관리특허 현황, 기술이전·사업화현황 개발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 3월까지 작성
----------------------------	---

□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정부차원에서 전시 산업의 발전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전시시설의 종류·규모 등 기본사항 규정 - 전시산업 지원 근거 마련 : 기반조성, 세제지원 등 ○ (통계지표) 전시시설 현황, 전시회개최 현황 등 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시사업자 정보DB를 개선, 전시산업등록자현황 작성
-----------------	---

□ 우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관부처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민간의 우편시장 참여를 위해 국가의 서신독점 범위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신*에 대한 국가독점 범위를 우편물 중량 350g 이하, 우편기본요금(250원)의 10배 이하로 완화 * 단 국가·지자체 발송 등기우편물은 국민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국가독점 지속 ○ (통계지표) 우편사업 운영현황, 우편시장 점유율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통계지표 작성을 위해 기존의 행정자료 보고시스템 개선 계획('09.9.반영)
-----------------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국내 지능형 로봇산업 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제품의 품질인증 및 품질보장사업 실시 - 지능형로봇 투자회사 설립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근거 마련 - 로봇랜드 조성지역지정·관리 등 규정 ○ (통계지표) 소비자피해현황, 로봇펀드의 운용현황, 로봇랜드 조성 및 운영현황 개발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피해현황 '10년 상반기, 기타 지표 '13년 이후 개발
-----------------	---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식품산업 육성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업자 단체 설립 근거 마련 - 우수식재료 사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 전통식품 세계화, 한식당 해외진출 지원 등 ○ (통계지표) 식품제조업 및 도소매업, 외식업체 현황, 농수산물 생산량 및 수출입량 등 ← 부처 자체개발개선계획을 통해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당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위해 해외한식당현황, 국내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등 추가 작성 필요성 제시 → 관련 통계를 개발기로 소관부처와 합의 완료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수산동물질병의 체계적 관리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전염병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 조치, 살처분 대상어가 보상지원 등 - 수출·입 수산동물 검역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에 대한 검역실시, 수입검역 불합격에 대한 반송·폐기·매몰·소각 등의 처분 등 근거 마련 ○ (통계지표) 양식수산물 생산현황, 수산물 수출·입 실적, 방류수산동물검사실적, 보상금지급실적 등 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동물질병현황, 수산동물검역실적 추가 개발 필요 <p>⇒ '09년까지 통계 개발 계획 제시</p>
----------------------------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및 단속 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 → (변경)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추가 * '08. 7. 8일부터 쇠고기식육 및 그 가공품 음식, 쌀(밥류) 12. 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음식, 배추김치 대상 ○ (통계지표)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업체 기구비,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단속현황 개발 계획 제시(즉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수입현황(기존통계) 및 단속인력현황(개발계획에서 작성가능) 사용 권고

□ 농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농지소유에 대한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대표자의 자가농업인 자격요건 폐지 ·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1/2 이상 농업인 요건 완화 → 1/4 이상 농업인 - 한계농지*의 소유 및 거래제한 완화 : 평균경사율이 15%인 농지에 대한 농업인 소유 규제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 비농업인의 상속농지에 대한 1만 m² 소유한도 폐지 ○ (통계지표) 농지현황, 농지은행 농지수탁관리현황 등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계농지현황을 추가 개발할 필요 <p>⇒ '09. 6월까지 한계농지 통계 개발 계획 제시</p>
----------------------------	--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친화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군산/김제/부안에 걸쳐 총 40,100ha의 담수호 및 토지조성, 총사업비 28,607억원, 방조제 '09년, 내부개발 '20년 완공 - 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연도별경지면적, 경지이용율, 곡물별 자급도, 조성 및 공급면적, 분양율 등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담수 수질현황 등의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 (개발계획 제시, '10년부터 관련시스템 구축)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도농교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구 지정 등 ○ (통계지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시설운영 현황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정책 평가에 필요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개발 필요성을 제시 → 부처 협의 완료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사이버대학을 평생교육시설(학위부여 불가)과 고등교육시설(학위부여 가능)로 이원화 운영 ○ (통계지표) 교원·교사(校舍)·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사이버대학 신입생 등록률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 제시 통계지표 외에 사이버대학(고등교육시설)의 성과 및 수급 전망 판단을 위해 사이버대학 졸업자 취업률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이 작성 중인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조사 개선(항목 추가) 시 작성 가능 <p>→ 교과부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협의완료</p>

□ 고등교육법 시행령/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대학·전문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학·전문 대학별 입학전형 시정요구 등의 권한이양 규정 -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변경) 한국대학·전문 대학교육협의회장 ○ (통계지표) 통계지표 불필요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별 입시제도 운영관련 시정요구 및 이행 현황에 대한 통계지표 제시 - 권한 이관에 불구하고, 동 통계지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학교폭력 예방 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위원회·전담부서 구성 및 운영 규정 - 학교폭력 예방교육 대상 확대(교직원 포함) ○ (통계지표) 학교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수, 자치위원회 심의 현황, 학교폭력피해 및 가해경험률,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적 등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학교폭력 발생건수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09.3월까지 동 통계 개발 계획)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전문계고생의 중견기술인력으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기술인재 유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도입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우수한 학교를 지정하고 운영성과를 재인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스터고등학교 현황,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의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2009년 부터 통계작성 예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빗물·하수처리수 등의 순환이용 촉진 및 물 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주기 물 재이용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 - 지붕 면적이 넓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에 빗물 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규정 등 ○ (통계지표) 빗물이용량, 중수도시설 설치현황, 중수도이용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등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현황 ②재이용사업자의 하·폐수처리수재이용공급실적 통계 등 개발계획 제시 → ①은 '11년 이후, ②는 '12년 이후 추진
------------------------	--

□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환경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규정 ○ (통계지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지정현황,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부여 현황 개발계획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 1월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후, '12년부터 개발
------------------------	---

□ 수도법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수도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의 병입(瓶入) 수도물 판매 허용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인증제 도입 -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 확대 : 기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의 공공청사 추가 ○ (통계지표) 병입수도물 판매현황, 수도용 자재·제품인증 실적,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설치현황의 통계지표 개발 계획 제시 <p>→ 2009. 12~2010. 12. 작성완료 예정</p>
-----------------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계청 제시)

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사용 촉진 근거 마련 * 건설폐기물을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품질기준에 적합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건자재 · 의무사용기관 확대 : (현행)국가·지자체, 공공투자·출연기관 → (변경)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민간) 추가 · 의무사용건설공사 범위 확대 : (현행)4km이상 도로 신설·확장 → (변경)1km이상 도로 신설·확장, 30만m²이상 용지 조성 등 추가 ○ (통계지표) 순환골재 사용량·생산업체 현황 등 구비
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골재재활용제품 생산업체 등 4종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2010년부터 추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규정 :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음료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 자원순환성 평가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사항 : 폐기물의 재활용과 적절한 처리여부·중량과 부피, 제품내 유해물질 정도, 제품의 내구성 등 ○ (통계지표) 제품의 환경성 정보(출고·수입, 폐기처분, 재활용 등) 현황의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 2010. 12 작성완료 예정
----------------------------	--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환경오염과 유해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피해조사·규명 및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영향 검토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 25만㎡ 이상인 경우 등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 검토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놀이시설, 보육시설의 보육실, 유치원 등의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 어린이용품 위해성평가제도 도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감, 문구용품 등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목록 작성,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판매중지·회수 권고 또는 권고사실 공표 ○ (통계지표)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현황 등 통계 개발계획 → '09~'11년 작성 예정
----------------------------	---

□ 대기환경보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및 악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배출가스 관리 : 자동차 평균배출량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주기별 배출가스 점검에서 운행중인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을 전자장치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변경 - 악취관리 :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동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 (통계지표) 배출가스종합검사현황, 악취민원현황,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악취민원발생건수 등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평균배출량 현황 등 7종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09년~'10년 작성예정)

□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료관광 여행업자, 안내센터 등 지원 - 우수 숙박업자 지정 및 지원 - 관광통역 안내원 의무종사제 도입 등 ○ (통계지표) 우수 숙박업체 지원 현황, 객실수별 숙박업 사업체 현황, 관광통역 안내사 등록현황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내방객 현황, 여행업자 지원현황, 전문교육기관 지원현황, 안내센터 지원현황, 관광통역 안내사 고용현황 통계 추가 작성 필요 → 부처 협의완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료 등 무형적증거물을 박물관자료에 추가 - 국립박물관 등록 및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 ○ (통계지표) 박물관·미술관 및 보유자료 현황, 유형별 박물관·미술관 현황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박물관 자료보유현황 및 등록 통계 개선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통계개선 세부계획 제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정학예사의 자격취득 요건 중 관련분야 삭제 - 준학예사 자격취득 후 경력인전 기관 재직경력 변경 : (현행) 7년 → (변경) 4년 - 준학예사 자격시험관리 업무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 ○ (통계지표) 학예사 전문경력 현황, 학예사 고용 현황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마별 박물관 현황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 (개발계획 제시, 2010부터 작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관광문화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대상 제공 관광알선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원화 → (변경) 외화포함 - 관광호텔의 외국인 음식·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기한 연장 <table border="1" data-bbox="509 539 1382 893">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현 행</th> <th style="text-align: center;">개 정</th> </tr> </thead> <tbody> <tr> <td>○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객실 요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기록표 작성 - 적용기한 : '07.7.1 ~ '08.12.3</td> <td>○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작성 - 적용기한 : 공표일 ~ '09.12.31</td> </tr> <tr> <td></td> <td>○ 외국인 상대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 '09.1.1 ~ '09.12.31</td> </tr> </tbody> </table>	현 행	개 정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객실 요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기록표 작성 - 적용기한 : '07.7.1 ~ '08.12.3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작성 - 적용기한 : 공표일 ~ '09.12.31		○ 외국인 상대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 '09.1.1 ~ '09.12.31
현 행	개 정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객실 요금)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기록표 작성 - 적용기한 : '07.7.1 ~ '08.12.3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기록표작성 - 적용기한 : 공표일 ~ '09.12.31						
	○ 외국인 상대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 '09.1.1 ~ '09.12.31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지표) 외국인입국매출액현황, 관광호텔업부가가치세 대상 사업자현황 등 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숙박 외국인관광객의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현황의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10.6부터 작성)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남녀평등 및 여성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의 점검내용과 방법 규정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규정 ○ (통계지표) 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 시정권고 현황,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 센터 지원현황 등 6개 통계지표 개발 관리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통계 개발 계획 제출)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발전 기여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무경력 여성 중 취업희망 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 경력단절여성의 특성, 교육훈련 및 취업실태, 취업시설을 위한 시설환경 및 이용현황 등 ○ (통계지표) 연령대별 여성취업률·취업률·경제활동참가율·비경제활동인구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②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통계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①은 '10년, ②는 '09년 작성)

□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지식정보사회 구현 및 유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화 등의 추진, 정보이용의 건전성·보장성 보장, 정보이용의 안정성·신뢰성 보장 규정 - 기술개발, 표준화 등을 통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을 통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등 * 통신, 방송, 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속·대용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 (통계지표) 국가정보화지수 등 13개 지표 가구비, 국가정보화 분야별 정보화지수의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 2009. 3. 이후 추진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실시에 따라 그 제공 및 콘텐츠 사업의 허가, 경쟁촉진 등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기준 및 절차, 겸영금지 원칙(자산 10조원 이상 기업 불가) - 콘텐츠 동등접근, 방송프로그램 구성 기준 등 ○ (통계지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시청점유율 제시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현황, 콘텐츠 사업자 현황, 가입자 현황 등 14개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통계 개발 계획 제출)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신개념 방송통신체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방송통신 콘텐츠를 송·수신하는 활동 - 방송통신 발전기금 설치, 방송통신기술의 표준화, 방송통신 재난관리 규정 등 ○ (통계지표) 방송통신산업 현황,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현황, IPTV 관련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 2009년 작성 예정
--------------------------------	--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지진·지진해일 재해로 인한 국가와 국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지진해일 관측장비 설치 장소, 규격 등 기준 마련 -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시설 지정 - 지진·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기준(시기, 방법 등) - 내진 보강대책 수립 기준(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통계지표) 지진·지진해일재해발생현황,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지진·지진해일 피해현황 등 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보강대책 대상시설 현황 통계 개발 필요성 제시 →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09. 3.이후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소관부처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범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분류체제 일원화 : (현행) 32개 대·중·소 혼용분류 → (변경) 18개 대분류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강화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 1천억 이상 및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기업 제외 ○ (통계지표) 중소기업 업종별 현황, 중소기업 규모별 현황의 통계지표 개발계획 제시 → 2009. 5. 작성완료 예정
----------------------------	---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 개정안 (통계청 제시)

<p>정책 내용 및 제시 통계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공사 투자재원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투자공사의 차입·채권발행근거 신설 · (기존) 정부·한은의 위탁자산 → (변경) 위탁 받은 자산, 자기자본의 30배 범위내 차입 및 채권발행 추가 -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운용 대상을 국내자산까지 확대 ○ (통계지표) 자산운용 규모 및 수익률 현황 기구비
<p>검토 의견 및 조치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채권발행현황, 위탁자산 투자현황 등 통계지표 개발 필요성 제시 <p>→ 부처협의 완료(개발계획 제시, '09년 작성예정)</p>

1. 총괄표

소관 부처	법령 명	정책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도입
”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농산물재해보험 대상작물 및 자연재해 범위 확대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설정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및 단속 기관 확대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도농교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대규모기업집단·지주회사·기업 결합제도 규제 완화 및 동의명령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제정안	금융관련 법령 통합으로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와 기능별 규제 전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확대
지식경제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악취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소방방재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지진·지진해일 재해로 인한 국가와 국민보호

2. 사안별 자문 상세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대상 :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08년은 넙치를 우선 적용하고 점차 대상품종 확대(대통령령) - 대상재해 :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이상 조류·적조현상 및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 ○ (부처의견) 양식수산물별 생산량과 생산액, 연도별·지역별·재해원인별 양식어류 피해현황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양식보험요율 산출과정의 신뢰성 확보 및 적정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재해위험률을 제시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필요 ○ (주요내용) 양식수산물/양식수산물피해현황, 양식 시설물/양식시설물피해현황, 양식수산물보험실적, 국고지원현황 통계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 제시된 기구비된 양식시설물현황 등의 통계지표를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보험개발원 ○○○ 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연구원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양식재해보험 위험률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 - 2006, 보험개발원

□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농산물재해보험 대상작물 및 자연재해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보험의 대상작물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을 추가하고 종합위험(All-risks)방식* 적용 * 보상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인한 평년수확량 대비 감수량 피해 보상 ○ (부처의견) 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지역별·재해 유형별 농작물피해현황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동 정책의 성과 판단을 위해 보다 세분화된 통계지표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추가 통계지표 필요 ○ (주요내용) 지역별 작물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지역/재해 유형별 피해규모, 작물별 농가판매금액, 작물별 보험 가입규모, 작물별 보험금 지급규모 통계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 제시된 기구비된 작물별 재배농가수 현황 등의 통계지표를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를 위한 통계축적방안 - 2007, 보험개발원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식품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식품산업 사업자 단체 설립 근거 마련 - 농어업인과 식품사업체간 교류협력증진/ 우수식재료 사업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추진/ 전통식품 세계화, 한식당 해외진출 지원 등 ○ (부처의견)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규모 관련 지표 및 농산물 생산량, 농식품 수출입현황 등 국내외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지표를 중심으로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정책 등 9개 세부정책별로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필요 통계지표 제시 ○ (주요내용) 식품관련산업사업체현황, 농산물생산량 및 농식품 수출입현황, 식품산업육성정책추진실적, 식품산업육성지원금액, 국산농산물이용실태, 산지농산물계약 거래실태, 우수식품소비실태, 한식당해외진출현황 통계 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 제시된 한식당 해외현황 및 인증 한식당에 대한 매출액 동향 등의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중앙대학교 ○○○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없음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및 단속 기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건복지가족부·지자체 → (변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가 * '08.7.8일부터 쇠고기식육 및 그 가공품 음식, 쌀(밥류) 12.22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식육 음식, 배추 김치 대상 ○ (부처의견) 대상 사업체 현황 및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현황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원산지 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파악 및 수입농산물의 수입·유통현황자료 등 추가 통계지표 필요 ○ (주요내용)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사업체 현황,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현황, 수입농산물의 수입 및 유통현황, 외식업체 식재료이용현황, 단속인원 현황 통계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향후 제도개선 시 자문결과 제시된 기구비의 음식점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수입현황과 단속인력 현황의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없음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도농교류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 도농교류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기구 지정 등 ○ (부처의견)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현황, 농어촌 체험마을·관광농원 방문학교 및 학생 현황, 도농교류확인서 발급 건수, 도농교류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현황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동 정책 성과평가에 필요한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통계 개발 필요성을 제시 ○ (주요내용) 도농교류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현황,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시설운영 현황, 도농교류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현황 등 통계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 제시된 기구비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공동시설 운영현황과 녹색농촌 체험마을 추진성과의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관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 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 2004, 농업기반공사

□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 단계별로 식별가능 조치 · ① 사육 : 신고 및 귀표부착 → ② 도축 : 소의 개체 식별번호를 도체에 표시 → ③ 가공 및 판매 : 쇠고기에 개체 식별번호 표시 → ④소비 : 쇠고기 이력정보 조회 ○ (부처의견) 필요한 통계지표 및 개발/개선계획 미제시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이력추적제 실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의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서 제거하는 데 있으므로, 처음 단계인 가축 및 축산물의 출생·이동에 관한 통계지표 구비가 우선 ○ (주요내용) 가축사육규모별 마리수 및 가구수, 농가등록 현황, 축산물등급판정현황, DNA 일치율 등 14개 통계 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를 필요 통계지표 발굴에 활용 ○ (자문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연구원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전면 실시를 위한 세부추진방안 연구 -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대규모기업집단·지주회사·기업결합제도 규제 완화 및 동의명령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조정 - 지주회사 부채비율상한 및 비계열사 주식소유한도 폐지 -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 폐지, M&A신고기준 상향조정 - 동의명령제도 도입 등 ○ (부처의견) 출총제 관련 통계지표 작성 불필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지주회사현황, 기업결합동향 통계지표는 기구비, 동의명령집행현황 등은 제도 시행 후 작성·구비할 예정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출총제 관련 지표를 계속 작성 관리, 순환출자 확인 및 측정을 공식화·객관화하고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의 개념을 조정, 대규모기업집단 공시시스템의 공시 자료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주요내용) 상위기업집단의 시장·일반 집중도, 기업지배 구조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 설비투자 및 출자총액추이, 순환출자현황, 기업결합건수 및 금액, 동의명령 집행현황 등의 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출총제 폐지의 성과평가를 위해 “투자지표”사용 권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인을 위해 “순환출자현황지표” 지속 관리→ 제시된 지표의 대부분을 활용하기로 하였으나, 설비투자 및 출자총액추이, 순환출자현황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입장 ○ (자문위원) 인하대학교 ○○○ 교수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연구용역 실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금융관련 법령 통합으로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와 기능별 규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주의 적용/ 기능별 규제(경제적 실질에 따라 6개 업무로 분류)/ 업무범위 확대(집합투자업 규정, 겸영 허용 등) -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투자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 (부처의견) 법령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각종 공시사항 등이 필요하며, 금융감독원의 통계·공시 시스템이 구축, 구비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새로운 규율체계에 맞게 금융공시시스템 개선하여 통계지표 작성 필요 ○ (주요내용) 금융회사와 일반회사의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현황,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관계 파악 지표, 금융인력 공급현황과 인력자원현황 등에 대한 지표 등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상가지표를 포함, 각종 금융통계는 금융투자업 감독시행세척 개정 및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 개선 방향에 따라 작성 가능 여부 및 내용이 변경되므로 향후 금융감독원과 협의 지속 ○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 교수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연구용역 실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매출액 150억원 이하 기업 → (변경) 150억원 이상기업도 포함(11,000여개 중소기업 추가 예상) ○ (부처의견) 중소기업의 어음부도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인수액,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사고율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보험인수 대상이 되는 매출규모 파악을 위해보다 세분화된 매출관련 통계지표와 보험료를 결정을 위한 추가 통계지표 필요 ○ (주요내용) 산업/규모/매출액구간/지역별 중소기업체수, 부도율, 매출채권, 미수금, 매입채무, 매출액, 보험료, 대손상각비 → 기존의 통계활용 가능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향후 제도개선 시 자문결과 제시된 세분 및 추가 통계지표(미수금, 매입채무 제외)를 작성하여 활용하기로 협의 ○ (자문위원) 중소기업연구원 ○○○ 부원장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없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신축·증축 및 개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 학교시설 추가 ○ (부처의견) 공공기관의 설비보급 현황 통계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대상별 적정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입과 이용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통계를 대상별, 원별로 보다 세분화 하고, 의무화 대상의 규모와 설치된 설비에 의한 대상별 원별 에너지 이용량의 통계는 추가적으로 포함 ○ (주요내용) 대상별/월별 이용량 현황, 설비이용율(에너지 생산량), 월별설치건수, 대상별 원별 보급 현황 →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DB를 통한 통계활용 가능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동 제도 운영/개선 시 자문결과 제시된 세분 및 추가 통계지표를 관리하고 활용하기로 협의 ○ (자문위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본부장/ 에너지 관리공단 ○○○ 팀장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악취 및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고 규정 마련/악취관리지역밖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화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폐차 시 보조금 지원/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성능검사 의무 등 ○ (부처 의견) 악취실태조사 결과, 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현황, 악취배출시설현황,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자동차 배출가스관리의 경우는 자동차소유자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정비점검, 저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선택하므로 통계기반 정책관리 불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악취 민원자료의 산출방법 및 기준의 통일, 악취유발 원인물질 파악, 생활악취원에 대한 악취실태조사/배출가스 저감장치의 효율성 유지 및 대기질 개선 정도 점검관리, 배출가스 노상점검, 비디오단속, 정밀검사 및 원격측정장비에 의한 수시점검 등 제도시행 시 개선효과 평가 위한 통계지표 필요 ○ (주요 내용) 생활악취발생원 악취배출현황, 악취유발시설 개선 자금 및 기술지원 현황, 생활악취배출원 현황, 국내 생산 단위제품 당 악취발생 현황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초과 자동차 현황,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실적 및 오염삭감량,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실적 및 조치 현황, 원격측정장비의 실증 시험 현황 등 → 기존의 통계활용 가능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자문결과 제시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실적 및 조기폐차 현황과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현황 등 통계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기로 합의 ○ (자문위원) 강원대학교 환경과학과 ○○○ 교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연구관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해당없음

□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정안

<p>정책 내용 및 소관부처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내용) 지진·지진해일 재해로 인한 국가와 국민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지진해일 관측 장비 설치 장소, 규격 등 기준 마련 - 지진가속도 계측 대상시설 지정 - 지진·지진해일 관측의 통보 기준(시기, 방법 등) - 내진 보강대책 수립 기준(대상 시설 및 방법 등) ○ (부처의견) 지진·지진해일재해발생현황,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지진·지진해일 피해현황 등 통계 지표 필요
<p>자문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약) 소관부처 제시 통계지표들은 주로 관측장비 현황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내진대책에 대한 통계지표 보완 필요 ○ (주요내용) 내진보강대책 대상 시설 현황 지표 필요
<p>비 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당초 통계청 검토 시 지진·지진해일재해발생 현황, 지진·지진해일 관측시설 현황, 지진·지진해일 피해현황, 지진가속도계설치현황, 해안 침수현황 등 통계 지표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내진 보강대책 대상 시설현황 통계지표 발굴 ○ (자문위원) 지질자원연구원 ○○○ 지진센터장 ○ (법령에 대한 연구용역여부) 해당 없음

통계기반 정책관리 평가사례집

발행일 | 2009년 3월

편집·발행 | 통계청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전화 | 042) 481 -2083~84(통계심사과)

팩스 | 042) 481 -2550

인쇄 | 학예인쇄사

전화 | 042) 625 -1821